

# 減價償却의 現況과 政策方向

韓國租稅研究院

## 序 言

世界經濟는 國際化 및 開放化란 측면에서 새로운 環境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世界經濟 環境에 맞추어 사회 전체의 自救策이 요구되는 때이다. 企業은 國際 競爭力 提高에 장애가 되는 비효율적인 요소를 철폐하여 적극적인 경쟁자세로 변신하여야 하며, 政府는 非現實的이고 慣習的으로 지속하여 온 制度를 과감히 改善하여야 한다.

減價償却制度는 企業의 投資行爲와 財務構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政策手段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減價償却制度는 變化하는 경제 環境에 彈力的으로 대처해 오지 못했으며 불합리한 要素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오랜 관습 속에서 無批判的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行政費用과 社會費用도 매우 컸다. 이제 우리나라의 減價償却制度는 制度의 現實化·合理化란 차원에서 대폭 改善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 耐用年數, 殘存價額, 減價償却方法 등 減價償却制度를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全般的으로 再考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減價償却에 대한 現況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새로운 政策方向을 모색하고 있는데 減價償却制度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우리나라에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減價償却政策을 수립하는 정책 입안자와 資産關聯 실증연구에 종사하는 研究者에게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많은 분들의 도움에 의해 이루어졌다. 먼저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財務部 法人稅制課의 韓廷基 課長, 財産稅制課의 李成浩 事務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企業 實態調査를 財政的으로 支援해준 大韓商工會議所에 감사를 드린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조언이 있었다. 필자는 먼저 연구의 초기 단계부터 학문적 관심과 정책방향에 대해 많은 助言

과 討論을 아끼지 않으신 서강대 郭泰元 教授, 會計에 관한 자문에  
언제든지 응해 주신 三逸會計法人의 林鎮澤 常務, 租稅行政 측면에  
서 많은 조언을 주신 本 研究院의 李濟弘 局長, 그리고 本 研究院에  
서 개최했던 政策討論會에서 열띤 討議를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초안에 유익한 論評을 해주신 本 研究院의 孫  
元翼 博士에게 감사를 드리며 本 研究의 모든 단계에서 큰 도움을  
준 李楨悅 研究員과, 原稿整理에 수고한 卞敬淑 研究助員에게도 사  
의를 표한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著者의 個人的인 의견이며 本 研究院  
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年 10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朴宗漢

# 目 次

I. 序論 .....	13
II. 減價償却의 現況 .....	17
1. 減價償却의 規模 및 重要性 .....	17
2. 業種別 資産 및 減價償却額의 分布實態 .....	22
III. 企業 減價償却 實態調查 結果 .....	31
1. 調查概要 .....	31
2. 業種別 現行 稅法上의 耐用年數에 對한 意見 .....	33
3. 稅法上 耐用年數의 資産別 區分에 對한 意見 .....	37
4. 中古資産의 處理方法 .....	42
5. 減價償却方法에 對한 調查 結果 .....	51
6. 改善事項에 對한 調查 結果 .....	54
7. 經濟的 耐用年數에 對한 調查結果 .....	55
IV. 減價償却制度의 國際比較 .....	57
1. 耐用年數의 國際比較 .....	58
2. 資産區分의 國際比較 .....	63
3. 殘存價額의 國際比較 .....	66
4. 減價償却方法의 國際比較 .....	67
5. 其他 事項 .....	69
6. 機械裝置에 對한 減價償却制度의 國際比較 .....	70
V. 減價償却의 特性과 政策方向 .....	74
1. 減價償却의 內生的 特性 .....	74

2. 經濟的 減價償却과 稅法上 減價償却과의 關係 .....	78
3. 減價償却 政策方向의 考察 .....	81
VI. 現行 減價償却制度의 問題點 .....	89
1. 非科學的 政策 設定 .....	89
2. 複雜한 制度 .....	91
3. 非合理的인 制度.....	93
VII. 減價償却制度의 經濟的 效果 .....	101
1. 最適 減價償却制度 .....	101
2. 分析模型 .....	104
3. 耐用年數의 經濟的 效果 .....	109
4. 殘存價額의 經濟的 效果 .....	112
5. 政策代案의 評價 .....	117
VIII. 減價償却制度의 改善方向 .....	128
1. 政策手段으로서 減價償却制度의 必要性 .....	128
2. 減價償却制度의 單純化 .....	129
3. 合理的 制度 .....	132
4. 科學的인 制度樹立을 위한 資料確保.....	136
IX. 結論 .....	138
參 考 文 獻.....	141
附 錄.....	145

## 表目次

〈表 II - 1〉減價償却 對象 固定資産의 構成	17
〈表 II - 2〉減價償却額의 規模	18
〈表 II - 3〉減價償却規模의 對比	19
〈表 II - 4〉一般償却額의 項目別 規模	20
〈表 II - 5〉一般償却額의 資産別 規模	21
〈表 II - 6〉有形資産 對比 減價償却率	22
〈表 II - 7〉源泉資金 對比 減價償却額	22
〈表 II - 8〉業種間 資産分布	23
〈表 II - 9〉固定資産에 대한 減價償却의 分布	24
〈表 II - 10〉有形資産에 대한 減價償却의 分布	25
〈表 II - 11〉固定資産 對比 業種別 減價償却率	27
〈表 II - 12〉有形資産 對比 業種別 減價償却率	28
〈表 II - 13〉業種別 減價償却額의 源泉資金 對比 比率	29
〈表 III - 1〉調査의 內容	32
〈表 III - 2〉業種別 機械裝置의 耐用年數에 대한 意見	34
〈表 III - 3〉賣出額 規模別 機械裝置 耐用年數의 實際壽命에 대한 意見	35
〈表 III - 4〉機械裝置 規模別 耐用年數의 實際壽命에 대한 意見 .....	35
〈表 III - 5〉建物 및 工具에 대한 稅法上 耐用年數에 대한 意見 .....	36
〈表 III - 6〉賣出額 規模別 建物 및 備品の 耐用年數에 대한 意見 .....	37
〈表 III - 7〉建物資産 規模別 建物 및 備品の 耐用年數에 대한 意見	37

〈表 Ⅲ－8〉	稅法上 機械裝置 分類에 대한 意見	38
〈表 Ⅲ－9〉	賣出額 規模別 機械裝置의 分類에 대한 意見	39
〈表 Ⅲ－10〉	機械裝置 規模別 稅法上 分類에 대한 意見	40
〈表 Ⅲ－11〉	業種別 稅法上 建物 및 工具·備品の 區分에 대한 意見	41
〈表 Ⅲ－12〉	賣出額 規模別 建物 및 工具·備品 區分에 대한 意見	42
〈表 Ⅲ－13〉	建物資産 規模別 建物 및 備品 區分에 대한 意見	42
〈表 Ⅲ－14〉	機械裝置의 中古品 販賣與否	44
〈表 Ⅲ－15〉	業種別 中古 機械裝置의 販賣 理由	45
〈表 Ⅲ－16〉	業種別 中古 機械裝置의 販賣價格	46
〈表 Ⅲ－17〉	賣出額 規模別 中古 機械裝置의 販賣 經驗	46
〈表 Ⅲ－18〉	機械裝置의 廢棄處分 費用	47
〈表 Ⅲ－19〉	機械裝置의 中古品 購入比率	49
〈表 Ⅲ－20〉	賣出額 規模別 中古 機械裝置의 購入有無	49
〈表 Ⅲ－21〉	全體 機械資産에서 中古 機械裝置의 比率	50
〈表 Ⅲ－22〉	有形固定資産의 減價償却方法에 대한 調查結果	51
〈表 Ⅲ－23〉	賣出額 規模別 減價償却方法	52
〈表 Ⅲ－24〉	建物資産 規模別 減價償却方法	52
〈表 Ⅲ－25〉	機械裝置 規模別 減價償却方法	53
〈表 Ⅲ－26〉	減價償却 規模別 減價償却方法	53
〈表 Ⅲ－27〉	減價償却制度의 改善事項	54
〈表 Ⅲ－28〉	賣出額 規模別 減價償却制度의 改善事項	55
〈表 Ⅲ－29〉	業種別 減價償却制度의 問題點 改善事項	55
〈表 Ⅲ－30〉	資産別 稅法 및 經濟的 耐用年數의 比較	56
〈表 Ⅳ－1〉	減價償却 政策方向에 대한 視角	57
〈表 Ⅳ－2〉	稅法上 耐用年數의 特徵 比較: 美國과 日本	59
〈表 Ⅳ－3〉	稅法上 耐用年數의 比較: 美國과 韓國	60

〈表 IV - 4〉	機械裝置의 稅法上 耐用年數에 대한 韓·日比較	62
〈表 IV - 5〉	機械裝置 以外의 有形固定資産의 韓·日比較	63
〈表 IV - 6〉	機械裝置 以外 資産分類의 韓·日比較	64
〈表 IV - 7〉	業種別 稅法上 機械裝置分類의 韓·日比較	65
〈表 IV - 8〉	資産區分의 國際比較	66
〈表 IV - 9〉	殘存價額의 國際比較	66
〈表 IV - 10〉	減價償却方法의 國際比較	67
〈表 IV - 11〉	減價償却方法의 比較	68
〈表 IV - 12〉	即時償却 限度額의 國際比較	69
〈表 IV - 13〉	減價償却의 任意性 與否	70
〈表 IV - 14〉	機械裝置에 대한 減價償却制度의 國際比較	71
〈表 IV - 15〉	減價償却額 現在價値의 國際比較	72
〈表 V - 1〉	內生的 減價償却 特性에 대한 實證分析의 要約	77
〈表 V - 2〉	交通資産에 대한 經濟的 및 稅法上 減價償却率의 比較	78
〈表 V - 3〉	稅法上 및 經濟的 減價償却率의 比較	79
〈表 V - 4〉	減價償却 政策方向의 比較	86
〈表 V - 5〉	設備投資에 대한 前年 對比 成長率	88
〈表 VI - 1〉	業種別 特別償却의 分布形態	92
〈表 VI - 2〉	機械裝置 業種分類와 韓國標準産業分類의 比較	96
〈表 VII - 1〉	耐用年數에 따른 減價償却과 資本費用의 變化	111
〈表 VII - 2〉	殘存價額의 變化에 따른 減價償却率의 變化	113
〈表 VII - 3〉	殘存價額의 變化에 따른 減價償却額 現在價値의 變化	114
〈表 VII - 4〉	耐用年數 變化에 따른 資本費用의 變化	116
〈表 VII - 5〉	耐用年數의 經濟的 效果	120
〈表 VII - 6〉	殘存價額의 經濟的 效果	121
〈表 VII - 7〉	定額法에 따른 減價償却額과 資本費用	122

〈表 VII-8〉 定額法, 殘存價額의 廢止, 耐用年數의 經濟的 效果 .....	123
〈表 VII-9〉 現行制度와 中立的인 經濟的 效果를 가지는 政策代案 .....	125
〈表 VII-10〉 耐用年數에 따른 政策代案의 減價償却 形態.....	126

## 附 表 目 次

〈附表 I-1〉 産業分類體系의 調整.....	148
〈附表 I-2〉 業種別 特別損失에서 特別償却의 比率 .....	149
〈附表 I-3〉 業種別 固定資産의 分布實態 .....	150
〈附表 I-4〉 業種間 固定資産의 分布實態 .....	152
〈附表 I-5〉 土地를 除外한 減價償却 對象 固定資産의 業種別 分布 實態 .....	153
〈附表 I-6〉 業種別 減價償却 規模의 實態 .....	154
〈附表 I-7〉 減價償却額의 業種別 分布實態 .....	155
〈附表 I-8〉 減價償却額의 資産別 分布 .....	156
〈附表 I-9〉 資産 및 業種間 減價償却額의 分布實態.....	157
〈附表 V-1〉 美國 法人稅制의 歷史的 變遷過程 .....	240

## 圖目次

[圖 IV - 1]	機械裝置 減價償却의 國際比較 .....	73
[圖 VI - 1]	減價償却額의 決定過程 .....	90
[圖 VII - 1]	減價償却制度의 經濟的 效果에 대한 分析對象 .....	102
[圖 VII - 2]	減價償却制度의 全體效果 .....	103
[圖 VII - 3]	耐用年數에 따른 減價償却과 資本費用의 變化 .....	112
[圖 VII - 4]	殘存價額의 變化에 따른 減價償却 形態의 比較 .....	114
[圖 VII - 5]	殘存價額의 變化에 따른 減價償却額 現在價値의 變化 .....	115
[圖 VII - 6]	殘存價額의 變化에 따른 資本費用의 變化 .....	117
[圖 VII - 7]	耐用年數에 따른 減價償却 形態의 比較 .....	127
[圖 VIII - 1]	減價償却制度의 單純化 方向 .....	132

## I. 序 論

減價償却制度는 기업의 財務構造와 稅負擔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固定資産이 매년 一定比率로 비용처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減價償却制度는 기업의 資本費用(Cost of Capital)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投資行爲를 결정하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先進國에서는 減價償却制度를 기업의 투자행위를 조정하는 중요한 정책변수로 사용하며 이에 대한 실증분석도 많이 제시하고 있다<sup>1)</sup>. 그러므로 선진국에서는 減價償却制度의 중요성을 오래 전부터 認識하고 있어서 學界 및 政府次元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減價償却制度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다. 減價償却制度를 기업의 투자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지 회계상의 과정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減價償却制度는 경제환경과는 무관하게 지속되어 왔고, 회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만 간혹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의 減價償却制度는 오랜 기간 동안 변하지 않은 채 慣習的으로 지속되어 왔다. 그러므로 減價償却制度가 非現實的이고 非合理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자산별 耐用年數는 1951년에 제정되어 그 골격을 유지한 채 현재에

1) 減價償却制度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實證的 分析은 Jorgenson을 중심으로 한 新古典 投資理論(Neoclassical Investment Theory)에 관한 많은 文獻에서 볼 수 있다. 美國 財務部에서 분석한 대표적 실증적 연구로는 Chirinko와 Eisner(1981)를 들 수 있다.

이르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 및 경제외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는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減價償却制度 또한 국가의 經濟規模가 커지고 기술개발의 속도가 빨라져 새로운 資産이 많이 생기는 현실에 맞추어 변화하여야 한다.

西歐에서 減價償却制度가 학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때는 1960년대부터 Jorgenson이 중심이 된 新古典 投資理論(neoclassical investment theory)이 확립되면서이다<sup>2)</sup>. 신고전 투자이론에 의하면 기업의 투자행위는 정부의 租稅政策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정책변수로 法人稅率, 投資稅額控除, 減價償却制度를 대표적으로 들고 있다. 특히 減價償却制度는 기업의 투자수준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이론 및 실증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減價償却制度에 대한 관심은 학계뿐 아니라 정책추진에서도 많아서 역사적으로 減價償却政策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減價償却制度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최근이며 學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 연구들은 新古典 投資理論을 근거로 하여 租稅政策의 效果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표적인 연구로는 郭泰元(1985), 金峻永과 具東鉉(1992), 尹建永(1988)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減價償却制度가 企業의 投資行爲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減價償却制度에 대한 정책 입안자의 관심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현실적으로 減價償却制度가 기업의 財務構造나 稅負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現行 減價償却制度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 적지 않은 社會費用을 浪費하고 있다. 國際化·開放化를 내세우며 기업의 對外競爭力을 강조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減價償却制度는 너무도 뒤떨어져 있다.

2) 新古典 投資理論에 대한 代表的인 研究로는 Chirinko와 Eisner(1981), Hall과 Jorgenson(1967, 1969)을 들 수 있다.

減價償却制度가 이렇게 경제환경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非彈力的으로 운용되는 이유 중 하나로 감가상각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의 미비를 들 수 있다. 減價償却制度를 정책수단으로 認識하여 多角度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태를 週期的으로 파악하여 현재의 제도와 비교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자산에 관한 微視資料는 統計廳에서 발간하는 「國富統計調查」뿐이다. 그나마 이 자료는 調查週期가 10년이고 조사대상 범위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減價償却政策을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점으로 인해 감가상각에 대한 논의는 制限的일 수밖에 없어서 정책개혁으로까지 연결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減價償却의 現實態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여러 가지 정책방향에 대해 多角度로 논의한 후 우리 실정에 맞는 감가상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韓國銀行의 企業經營分析資料와 國稅廳의 法人稅 申告結果를 집계한 자료이다. 또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資産의 減價償却 實態에 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政策案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고, 아울러 제도적인 면에서 개선책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減價償却의 現況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소유한 資産規模와 減價償却規模를 業種別로 나누어 분석하고 감가상각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제Ⅲ장에서는 企業의 減價償却에 대한 實態調查 결과를 보여준다.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 減價償却制度를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 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減價償却制度의 위치를 살펴본다. 제Ⅴ장에서는 감가상각의 특성으로 經濟環境에 따라 변화하는 內生的 性格(endogenous characteristics)을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稅法上 減價償却과 經濟的 減價償却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減價償却 政策의 종류와 각 政策方向의 長短點을 살피고 우리나라 감

가상각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한다. 제Ⅵ장에서는 우리나라 減價償却制度가 가지는 문제점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규명한다. 제Ⅶ장에서는 최적 減價償却制度에 대해 논의하고, 減價償却制度의 변화가 減價償却額과 資本費用에 미치는 影響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보여준다. 또한 減價償却制度를 이루는 각 요소들의 經濟的 效果를 減價償却額과 資本費用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에 대한 정책평가를 시도한다. 제Ⅷ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減價償却制度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制度的인 면을 중심으로 改善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Ⅸ장에서는 본 研究結果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資料와 分析過程에 대해서는 부록에 자세히 수록하였다. 아울러 미국의 減價償却制度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므로 미국 減價償却制度의 變遷過程을 附錄에 자세히 정리하였다.

## Ⅱ. 減價償却의 現況

여기에서는 企業이 소유한 固定資産 및 減價償却 規模를 보여준다. 사용한 자료는 1992년 기준으로 韓國銀行의 企業經營分析과 國稅廳 內部資料이다. 固定資産은 크게 機械分과 建物分으로 나누고, 감가상각은 一般償却과 特別償却으로 나누어 業種別로 살펴보고, 固定資産의 減價償却額 또한 業種別로 비교·분석한다.

### 1. 減價償却의 規模 및 重要性

企業이 소유한 자산 중에서 감가상각 대상 固定資産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表 II-1>과 같다. 먼저 固定資産은 有形資産과 無形資産으로 나뉘며, 有形資産 비율이 資産價額 대비 전체의 97.9%를 차지한다. 有形資産을 크게 건물분(건물과 구축물)과 기계분(기

<表 II-1> 減價償却 對象 固定資産의 構成

(單位: %)

比率	固定資産	有形資産		無形資産
		建物分 <sup>1)</sup>	機械分 <sup>2)</sup>	
	100	97.9	58.2	2.1

註: 1) 건물분: 건물, 구축물

2) 기계분: 기계장치, 차량, 선박, 운반구

資料: 韓國銀行(1993)

계장치, 차량, 선박, 운반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계분이 전체 固定資産 중에서 58.2%를 차지해 그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表 II-2〉 減價償却額의 規模

(單位: 10億원, %)

	固定資産	總減價償却 (A+B)	一般償却 (A)	特別償却 (B)
總額	122,745	15,941	14,686	1,255
GNP 對比	53.4	6.9	6.4	0.5
固定資産 對比	100.0	13.0	12.0	1.0
總減價償却 對比	-	100.0	92.1	7.9

資料: 한국은행(1993), 국세청 내부자료

企業이 소유한 감가상각 대상 固定資産의 총액과 감가상각 규모를 1992년에 대하여 구한 결과는 〈表 II-2〉와 같다<sup>1)</sup>. 1992년에 우리나라 기업전체가 가지고 있는 減價償却 對象 固定資産의 규모는 122兆 7千億원으로 나타났다<sup>2)</sup>. 이 규모는 1992년 우리나라 GNP인 229兆 9千億원에 대비할 때 약 53.4%를 차지한다. 이러한 규모의 固定資産에서 1992년 한해 동안 減價償却額의 총 규모는 15兆 9千億원이며 이는 GNP의 6.9%를 차지하며, 전체 固定資産에 대비하여 13%를 차지한다. 總 減價償却은 크게 一般償却과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特別償却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法人稅法上에 있는 자산을 일정시간 이상 동안 사용함으로 인한 特別償却은 一般

- 1) 本 研究에서 사용한 資料에 대한 具體的인 설명은 〈부록 I〉을 참조하기 바란다.
- 2) 1987년 「國富統計調査」에 의하면 법인이 소유한 有形固定資産(純資産)은 약 97兆원으로 나타났다. 「國富統計調査」에 無形固定資産에 대한 통계는 없으므로 전체 固定資産에 대한 자료는 구할 수 없다. 韓國銀行 資料에 의하면 無形固定資産이 全體 固定資産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國富統計調査」에 의한 固定資産 總額は 약 99兆원 가량 될 것이다. 國稅廳 集計資料에 의하면 1992년 법인의 固定資産 總額は 약 180兆원으로 한국은행 자료보다 높게 나타났다.

償却으로 고려하였으므로 稅法에서 규정하는 特別償却의 범위와는 다르다<sup>3)</sup>. 이들 減價償却이 차지하는 규모를 살펴보면 一般償却과 特別償却이 전체 減價償却의 92.1%, 7.9%를 각각 차지한다.

〈表 II-3〉 減價償却規模의 對比

(單位: 10億원, 倍)

減價償却 總額 (A)	14,685
法人稅前 純利益 (B)	7,845
A / B	1.87

資料: 한국은행(1993)

減價償却額은 稅務會計上 전액 費用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法人稅收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목이다. 減價償却額의 規模를 稅務會計上 課稅標準과 비교해보면 減價償却의 중요성을 더 잘알 수 있다. 減價償却의 總規模를 法人稅前 純利益과 비교한 결과는 〈表 II-3〉과 같다. 전체 산업의 總減價償却 規模가 法人稅前 純利益(課稅標準)보다 1.87배 큼을 알 수 있다<sup>4)</sup>. 이는 減價償却 政策의 변화에 따라 減價償却額이 변화하면 이 변화가 稅收에 직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감가상각 정책수단으로 대표적인 것이 耐用年數와 殘存價額을 들 수 있다. 이들 政策手段들은 전체 減價償却 規模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法人稅收 규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減價償却 政策이 企業의 投資行爲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經濟政策의 한 수단이지만, 이에 따른 稅收減少의 비용 또한 매우 크므로 費用과 便益에 대하여 충분히

3) 企業會計에서는 資産의 過多使用으로 인한 法人稅法上的 特別償却은 損益計算書의 一般償却에 포함되는 반면,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特別償却만이 特別損失 計定の 特別償却으로 처리된다. 法人稅法과 租稅減免規制法에서 규정하는 特別償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 IV〉를 참고하기 바란다.

4) 美國의 경우에 1989년 현재 減價償却 總額은 3,373억 200만달러이며 法人稅 課稅標準이 3,710억 5,400만달러이므로, 減價償却額이 課稅標準의 0.91배이다.

검토한 후에 정책이立案되어야 한다.

약 14兆 7千億원에 해당하는 一般償却額은 企業會計上의 구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規模는 <表 II-4>와 같다. 즉 生産目的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減價償却分(減價償却 1)과 販賣目的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減價償却分(減價償却 2)이 그것이다. 前者의 감가상각분이 약 90%를 차지하는 13兆 2千億원 정도를 차지하고, 後者の 감가상각분이 약 10%를 차지하는 1兆 5千億원 규모이다. 그러므로 企業의 총 減價償却額 중에서 제조목적으로 사용하는 資産의 減價償却額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表 II-4> 一般償却額의 項目別 規模

(單位: 10億원, %)

	一般償却	減價償却 1 <sup>1)</sup>	減價償却 2 <sup>2)</sup>
總額	14,686	13,169	1,517
一般償却對比	100	89.7	10.3

註: 1) 감가상각 1: 제조원가명세서의 감가상각액

2) 감가상각 2: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액

資料: 한국은행(1993)

一般償却額을 資産 種類別로 機械分과 建物分으로 나누어 그 규모를 살펴보면 <表 II-5>와 같다<sup>5)</sup>. 機械分에서의 一般償却額이 전체의 86.7%를 차지하는 12兆 7千億원 규모이며 建物分이 약 13.3%로

- 5) 總 一般償却額을 機械分과 建物分으로 나누어 구분한 자료는 없다. 그러므로 全體 一般償却額을 機械分과 建物分으로 나누어 구하기 위해 다음 假定을 사용하였다. 즉 機械分과 建物分의 稅法上 平均 耐用年數를 각각 8년, 40년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므로 定率法 減價償却率은 각각 25%, 5.6%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機械分 減價償却額(X)과 建物分 減價償却額(Y)은 다음의 수식 (1)과 (2)를 통하여 구할 수 있다.

$$X + Y = \text{일반 감가상각 총액} \dots\dots\dots(1)$$

$$b \times X / 0.25 = a \times Y / 0.056 \dots\dots\dots(2)$$

여기서 a, b는 機械分과 建物分이 全體 資産規模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나타낸다.

1兆 9千億원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一般償却額의 대부분은 機械分임을 알 수 있다<sup>6)</sup>.

〈表 II-5〉 一般償却額의 資産別 規模

(單位: 10億원, %)

	一般償却	機械分	建物分
總額	14,686	12,737	1,948
一般償却對比	100	86.7	13.3

資料: 한국은행(1993), 국세청 내부자료

資産 種類別 減價償却率을 살펴보면 〈表 II-6〉과 같다. 기계분의 경우 일반상각만을 대상으로 자산대비 減價償却率은 18.3%를 차지한다.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特別償却은 대부분 機械裝置에 대해 적용되나 一部는 건물에 해당하는 항목도 있다. 그러나 전체 特別償却額 중에서 機械裝置와 建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는 없으므로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特別償却의 대부분은 機械裝置에 적용되므로 분석의 편의상 特別償却額을 機械裝置分으로 포함할 경우 機械裝置의 減價償却率은 약 20.1%를 차지한다. 반면 建物の 減價償却率은 4.8%를 차지하여 機械裝置에 비해서 낮다<sup>7)</sup>.

〈表 II-7〉은 企業의 資金을 源泉別로 구분하여 減價償却額이 源泉資金에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企業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자금은 94兆 2710億원이며 自己資本 비중은 45.46%, 타인자금 비중은 전체의 54.54%이다. 減價償却額(14兆 6860億원)은 모두

- 6) 機械分과 建物分 減價償却 規模를 비교할 수 있는 外國의 資料는 극히 드물다. 英國의 경우, 1990년 현재 總 減價償却額이 361億 6千萬파운드이며, 이 중 96.7%가 機械 및 裝備의 減價償却額이고 建物の 減價償却額은 단지 3.3%를 차지할 뿐이다.
- 7) 美國의 경우 1989년 현재 減價償却 總額 對比 減價償却 對象 資産 總額의 比率이 14.34%를 차지하고 있다. 機械分과 建物分으로 나누어 比較할 수 있는 資料는 없으므로 比較에는 한계가 있다.

〈表 II-6〉有形資産 對比 減價償却率

(單位: %)

機械分 減價償却率		建物分 減價償却率
一般償却對比	特別償却 包含 對比	一般償却對比
18.33	20.14	4.79

資料: 한국은행(1993), 국세청 내부자료

〈表 II-7〉源泉資金 對比 減價償却額

(單位: 10億원, %)

資金	自己資金	他人資金	減價償却額	減價償却額の比率	
				源泉資金對比	自己資金對比
94,271	42,851	51,420	14,686	15.58	34.27

資料: 한국은행(1993)

自己資金에 해당하므로 減價償却額이 원천자금과 자기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5.58%와 34.27%임을 보여준다.

## 2. 業種別 資産 및 減價償却額の 分布實態

〈表 II-8〉은 業種別로 資産의 分布實態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固定資産은 減價償却 대상이 되는 資産이므로 土地는 포함되지 않는다<sup>8)</sup>. 製造業種은 우리나라 企業 전체가 소유한 資産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製造業種 중에서도 조립금속제품기기 및 장비제조업이 약 20% 가량 차지하고, 化合物·석유·석탄·고무 및 플라스틱 製造業種이 12%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製造業 다음으로 資産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業種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으로 전체의 약

8) 土地를 포함한 全體資産의 業種別 分布現況과 業種間 分布實態는 〈부록 I〉에 자세히 記載되어 있다.

〈表 II-8〉 業種間 資産分布

(單位: %)

業 種	資産				
	固定資産	有形資産	建物分	機械分	無形資産
1. 어업	0.4	0.4	0.2	0.6	0.2
2. 광업	0.8	0.7	1.0	0.5	5.9
3. 제조업	60.8	60.9	61.3	60.6	56.6
31 음식료품	4.1	4.1	4.8	3.7	3.9
32 섬유, 의복 및 가죽	6.4	6.5	6.5	6.5	1.3
33 목재 및 나무제품	0.4	0.5	0.7	0.3	0.1
34 종이 및 인쇄, 출판	2.5	2.6	2.6	2.5	0.4
3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12.1	12.3	11.3	12.9	5.2
36 비금속광물제품	4.2	4.2	4.2	4.2	3.8
37 제1차금속	10.4	10.5	8.4	11.9	7.1
38 조립금속제품기기 및 장비	20.2	19.9	22.3	18.2	34.7
39 기타 제조업	0.3	0.3	0.4	0.2	0.1
4. 전기·가스 및 증기업	10.0	10.2	16.3	6.1	2.4
5. 건설업	3.0	2.8	4.1	1.9	15.0
6. 도소매, 숙박업	7.0	7.0	10.7	4.5	5.7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6.6	16.8	4.1	25.5	7.1
8.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0.7	0.7	1.5	0.2	1.7
9.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0.6	0.5	0.9	0.2	5.4
합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한국은행(1993)

17%를 차지한다. 이 業種의 資産所有 特徵은 機械裝置가 建物에 비해 소유한 비율이 월등히 크다는 것이다. 반면 전기·가스 및 증기업종은 그 반대이다.

〈表 II-9〉는 業種別 固定資産에 대한 減價償却 規模를 나타낸 것이다<sup>9)</sup>. 전체 減價償却을 크게 一般償却과 特別償却으로 나누고,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製品生産 目的으로 사용하는 資産에 대한 減價償

〈表 II-9〉 固定資産에 대한 減價償却의 分布

業 種	總 減却 償却	總			特別 償却
		一般 償却	減却 償却 1 <sup>1)</sup>	減却 償却 2 <sup>2)</sup>	
1. 어업	0.6	0.6	0.7	0.1	0.0
2. 광업	0.6	0.6	0.7	0.2	0.9
3. 제조업	59.3	64.4	66.2	48.8	52.8
31 음식료품	4.2	4.3	3.7	9.5	3.4
32 섬유, 의복 및 가죽	6.3	6.3	6.3	6.6	6.0
33 목재 및 나무제품	0.4	0.4	0.4	0.8	0.8
34 종이 및 인쇄, 출판	1.9	2.0	2.0	2.0	0.7
3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11.1	11.0	11.3	8.3	12.5
36 비금속광물제품	3.6	3.7	3.9	2.0	2.5
37 제1차금속	12.4	12.8	14.0	1.9	7.7
38 조립금속제품기기 및 장비	23.1	23.5	24.3	16.7	18.3
39 기타제조업	0.4	0.3	0.3	0.8	0.7
4. 전기·가스 및 증기업	9.8	9.3	10.1	2.4	15.7
5. 건설업	3.6	3.2	2.3	11.7	8.1
6. 도소매, 숙박업	4.5	4.0	1.4	26.8	9.6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6.6	17.0	18.5	3.8	11.9
8.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0.5	0.5	0.1	3.4	0.6
9.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0.4	0.4	0.2	2.7	0.4
합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1) 감가상각 1: 제조원가명세서의 감가상각액

2) 감가상각 2: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액

資料: 한국은행(1993)

却(減價償却 1)과 營業目的으로 사용하는 資産에 대한 減價償却(減

9) 각 업종 내에서의 減價償却 種類別 分布는 〈부록 I〉에 수록하였다.

價償却 2)으로 나누었다. <表 II-8>에서 보듯이 製造業種이 減價償却 對象이 되는 資産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減價償却額도 製造業種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總 減價償却額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製造業種이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는데 製造業種 중에서도 組立金屬제품기기 및 장비업종이 23%, 化合物·석유·

〈表 II-10〉有形資産에 대한 減價償却의 分布

(單位: %)

業 種	總減價 償却	一般		特別 償却	
		償却	機械分		建物分
1. 어업	0.58	0.63	0.69	0.17	0.03
2. 광업	0.63	0.61	0.55	1.04	0.87
3. 제조업	63.45	64.37	64.27	64.99	52.76
31 음식료품	4.22	4.28	4.11	5.42	3.44
32 섬유, 의복 및 가죽	6.28	6.30	6.31	6.25	5.99
33 목재 및 나무제품	0.44	0.41	0.36	0.75	0.81
34 종이 및 인쇄, 출판	1.93	2.03	2.03	2.07	0.71
35 化合物, 석유, 석탄, 고무, 플라스틱	11.11	10.99	11.18	9.77	12.52
36 비금속광물제품	3.60	3.69	3.69	3.72	2.53
37 제1차금속	12.38	12.78	13.30	9.38	7.73
38 組立金屬제품기기 및 장비	23.12	23.53	22.84	28.00	18.30
39 기타 제조업	0.38	0.35	0.32	0.56	0.74
4. 전기·가스 및 증기업	9.78	9.28	7.59	20.33	15.73
5. 건설업	3.62	3.23	2.79	6.12	8.14
6. 도소매, 숙박업	4.47	4.03	3.40	8.14	9.60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6.56	16.96	19.09	3.07	11.87
8.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0.47	0.46	0.22	2.05	0.58
9.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0.42	0.42	0.28	1.35	0.42
합 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資料: 한국은행(1993), 국세청 내부자료

석탄·고무 및 플라스틱 業種이 1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운수·창고 및 통신업종이 17%, 전기·가스 및 증기업종이 10%를 차지한다. 特別償却의 業種間 分布를 살펴보면 가장 비중이 큰 業種은 製造業種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지만 一般償却에 비하면 낮은 비율이다. 그 다음은 전기·가스 및 증기업종으로 이 業種의 特別償却은 16%를 차지하는데 이 業種이 차지하는 特別償却額은 一般償却額보다 비중이 크다.

〈表 II-9〉는 無形資産을 포함한 固定資産에 대한 業種別 減價償却 實態를 나타낸 것이고, 〈表 II-10〉은 無形資産을 제외한 有形資産을 대상으로 減價償却額의 分布를 業種別로 나타낸 것이다. 이때 有形資産은 크게 기계장치와 건물로 구분하여 각각의 減價償却 規模를 業種別로 보여준다. 製造業種이 有形資産에 대한 減價償却額의 비중을 살펴보면 特別償却을 제외한 모든 減價償却에서 약 64% 정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반면 製造業이 차지하는 特別償却額의 비중은 固定資産에 대한 비중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表 II-11〉은 固定資産 대비 減價償却額 規模의 비율을 보여주는 減價償却率을 業種別로 나타낸 것이다. 製造業種의 固定資産 대비 一般償却額의 비율은 12.8%, 特別償却率은 0.9%로서 固定資産 對比 全體 減價償却率은 13.7%이다. 이는 전체 業種의 減價償却率에 비해 一般償却 및 總 減價償却에서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製造業種을 中分類로 구분하여 減價償却率을 살펴보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業種에 따라 資産構成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表 II-12〉는 有形固定資産을 建物과 機械裝置로 구분하여 減價償却 規模를 비교한 것이다. 이때 機械裝置에 대해서는 一般償却額의 비율과 一般償却에 特別償却을 포함한 償却額에 대한 비율을 구하였다. 여기서 特別償却에 대한 資料는 자산별로 세분하여 구할 수 없으므로 機械裝置에만 적용된다는 가정하에서 분석하였다. 製造業

〈表 II-11〉 固定資産 對比 業種別 減價償却率

(單位: %)

業 種	總減價償却率	一般償却率	特別償却率
	(A+B)	(A)	(B)
1. 어업	17.2	17.1	0.1
2. 광업	10.7	9.5	1.2
3. 제조업	13.7	12.8	0.9
31 음식료품	12.8	11.9	0.8
32 섬유, 의복 및 가죽	13.1	12.1	1.0
33 목재 및 나무제품	12.8	10.9	1.8
34 종이 및 인쇄, 출판	10.4	10.1	0.3
3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12.5	11.4	1.1
36 비금속광물제품	11.9	11.2	0.7
37 제1차금속	16.1	15.3	0.8
38 조립금속제품, 기기 및 장비	14.3	13.4	0.9
39 기타제조업	14.5	12.3	2.2
4. 전기·가스 및 증기업	12.6	11.0	1.6
5. 건설업	9.4	7.8	1.7
6. 도소매, 숙박업	8.5	7.1	1.4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3.9	13.1	0.8
8.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8.9	8.1	0.9
9.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9.5	8.8	0.7
全 體	13.0	12.0	1.0

資料: 한국은행(1993), 국세청 내부자료

種의 경우 有形固定資産 대비 一般償却의 비율은 19.2%이고 特別償却을 포함하면 20.8%가 된다. 건물에 대한 減價償却率은 5.1%로 全體 業種을 대상으로 분석한 減價償却率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이다. 減價償却率이 비교적 높은 業種으로 건설업종과 전기·가스 및 증기업종과 어업을 들 수 있다. 이들 業種의 減價償却率은 높지만 이들 業種이 차지하는 資産 및 減價償却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製造

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表 II-12〉有形資産 對比 業種別 減價償却率<sup>1)</sup>

(單位: %)

業 種	機械分 減價償却率		建物分 減價償却率
	一般償却	特別償却包含	
1. 어업	19.83	19.93	5.25
2. 광업	18.52	21.41	4.84
3. 제조업	19.23	20.78	5.06
31 음식료품	20.11	21.77	5.34
32 섬유, 의복 및 가죽	17.84	19.50	4.64
33 목재 및 나무제품	20.30	24.76	5.40
34 종이 및 인쇄, 출판	15.17	15.69	3.85
3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16.23	18.02	4.16
36 비금속광물제품	16.44	17.56	4.22
37 제1차금속	20.03	21.18	5.31
38 조립금속제품, 기기 및 장비	21.95	23.68	5.93
39 기타제조업	23.05	28.34	6.29
4. 전기·가스 및 증기업	21.90	26.37	5.91
5. 건설업	25.10	32.32	6.98
6. 도소매, 숙박업	14.54	18.58	3.67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4.40	15.28	3.63
8.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23.79	30.01	6.53
9.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25.74	29.49	7.21
全 體	18.33	20.14	4.79

註: 1) 감가상각률 =  $\frac{\text{감가상각액}}{\text{유형자산 총액}}$

資料: 한국은행(1993), 국세청 내부자료

〈表 II-13〉은 減價償却額이 源泉資金과 대비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業種別로 분석한 결과이다. 源泉資金은 自己資金과 他人資金의 합으로 표현되는데 전체적으로 自己資金 비율은 45.45%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은 전체 수준보다 조금 높은 47% 정도이다. 製造業의 경

〈表 II-13〉 業種別 減價償却額의 源泉資金 對比 比率

(單位: %)

業 種	自己資金 比率 <sup>1)</sup>	減價償却額의 比率	
		源泉資金對比 <sup>2)</sup>	自己資金對比 <sup>3)</sup>
1. 어업	37.34	79.83	213.79
2. 광업	34.00	22.18	65.22
3. 제조업	47.02	27.50	58.48
31 음식료품	36.96	22.77	61.61
32 섬유, 의복 및 가죽	35.25	25.68	72.83
33 목재 및 나무제품	11.59	14.14	122.01
34 종이 및 인쇄, 출판	34.37	16.60	48.30
3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44.23	26.06	58.92
36 비금속광물 제품	45.80	26.66	58.22
37 제1차금속	50.89	40.92	80.40
38 조립금속제품, 기기 및 장비	56.01	27.09	48.37
39 기타 제조업	26.34	24.02	91.18
4. 전기·가스 및 증기업	57.23	29.62	51.76
5. 건설업	25.92	5.99	23.10
6. 도소매, 숙박업	28.90	9.33	32.30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5.18	46.51	71.35
8.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45.30	13.50	29.79
9.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38.41	23.42	60.96
全 體	45.45	15.58	34.27

註: 1) 자기자금, 2) 감가상각액 원천자금, 3) 감가상각액 자기자금

資料: 한국은행(1993)

우 減價償却額이 원천자금과 자기자금에 대비하여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7.5%와 58.48%이다. 減價償却額이 源泉資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다양하지만 비교적 減價償却額이 自己資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減價償却額의 증가는 企業에게 自己資金의 비율을 높여 資本費用을 줄이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Ⅲ. 企業 減價償却 實態調查 結果

減價償却制度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企業이 소유하고 있는 固定資產에 대한 減價償却 실태 파악과 制度에 따라 실제 업무를 遂行하는 企業의 입장에 대한 調查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減價償却 관련 研究를 할 수 있는 企業別 微視資料는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는 企業의 減價償却 實態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그 結果를 減價償却 政策에 반영하여 비교적 탄력적으로 政策을 운용하고 있다. 減價償却政策을 彈力的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企業의 감가상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본 研究院과 大韓商工會議所가 공동으로 企業의 減價償却 實態에 관한 調查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實施하였다. 이 調查는 실시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 章은 企業의 減價償却 實態 調查 結果를 整理하여 分析한다.

#### 1. 調查概要

이번 調查의 目的은 企業이 보유하고 있는 資產의 經濟的 耐用年數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고 現行 稅法上的 耐用年數와 비교하는데 있다. 또한 現行 減價償却制度와 관련하여 制度의 現況을 파악하고 減價償却制度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基礎資料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調査對象 業體는 韓國信用評價(株)에서 발행한 『1993년 韓國企業總覽』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이 資料에는 各 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財務諸表 및 損益計算書가 수록되어 있다.

본 조사에서 사용한 한국신용평가(주)의 『1993년 韓國企業總覽』은 上場法人 694개, 登錄法人 2,188개, 上場法人과 登錄法人을 제외한 外監法人 3,317개 업체로 총 6,199개 업체에 대한 정보가 韓國標準産業分類의 중분류별로 기재되어 있다. 實查는 調査表와 大韓商工會議所의 協助文을 소지한 전문면접원이 선정된 業體에 직접 방문하여 調査의 目的과 조사표 기재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2 ~ 3일 뒤에 재방문하여 조사표를 회수하는 部分 留置調査 方法을 이용하였다. 회수된 조사표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전화를 이용하여 추가로 답변을 받았다.

調査의 內容은 크게 네 부분(A, B, C, D)으로 나누어지며 각 설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업체 총 1,202개의 調査對象業體 중 面接調査를 성공적으로 마친 業體數는 938개 業體이다(회수율 78%)<sup>1)</sup>.

〈表 III-1〉 調査의 內容

種 類	內 容
說問紙 A	· 企業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 · 稅法上 耐用年數에 대한 의견 · 中古資産의 처리방법 및 減價償却 방법
說問紙 B	· 機械裝置 이외 資産의 耐用年數에 관한 질문
說問紙 C	· 機械裝置의 耐用年數에 대한 질문
說問紙 D	· 韓國標準産業分類에 의한 業種別 機械裝置의 구분 · 구분한 機械裝置의 용도와 耐用年數에 관한 질문

1) 本 調査의 調査表는 〈부록 II〉에 手錄하였다.

조사한 사항에 대해 業種別·資産種類別로 나누어 분석한 統計的 結果를 함축적으로 요약한 結果를 以下에서 보여준다.

## 2. 業種別 現行 稅法上의 耐用年數에 對한 意見

稅法上 규정되어 있는 資産別 耐用年數에 대한 의견을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이 結果를 業種別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는데 耐用年數에 대한 의견은 크게 機械裝置와 建物 및 工具·備品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 가. 機械裝置

稅法上에 규정되어 있는 機械裝置別 耐用年數의 길이에 대한 의견을 業種別로 정리한 結果는 <表 Ⅲ-2>와 같다. 應答業體 全體를 놓고 볼 때 機械裝置의 耐用年數에 대한 意見은 稅法上 耐用年數가 실제보다 '조금 길다'고 응답한 業體가 相對적으로 많다. 製造業의 경우는 같은 반응을 보이나 그 정도는 조금 낮았고, 鑛業의 경우는 現行 稅法上의 耐用年數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반면, 金融 및 保險業의 경우는 現行 稅法上 耐用年數가 '길다'고 응답한 業체가 많았다. 단 金融 및 保險業種의 경우는 現行 稅法上 機械裝置에 해당하는 資産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항에 대한 答변은 機械裝置 이외의 일반적인 有形資産의 경우로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업으로 대변되는 都·小賣業, 飲食 및 宿泊業, 運輸·通信業,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는 稅法上의 耐用年數가 '길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表 Ⅲ-2〉業種別 機械裝置의 耐用年數에 대한 意見

(單位: 個, %)

標準分類	業 體 數	平均	(1)	比率	(2)	比率	(3)	比率	(4)	比率	(5)	比率
농업, 수렵업 및 임업	5	3.4	0	0.0	1	20.0	2	40.0	1	20.0	1	20.0
어업	10	3.2	2	20.0	1	10.0	2	20.0	3	30.0	2	20.0
광업	19	3.0	2	10.5	4	21.1	7	36.8	5	26.3	1	5.3
제조업	599	3.1	24	4.0	137	22.9	213	35.6	186	31.1	39	6.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	3.0	1	25.0	0	0.0	1	25.0	2	50.0	0	0.0
건설업	51	3.4	3	5.9	5	9.8	17	33.3	19	37.3	7	13.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5	3.3	2	3.6	10	18.2	18	32.7	19	34.6	6	10.9
숙박 및 음식점업	28	3.3	0	0.0	7	25.0	8	28.6	10	35.7	3	10.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38	3.4	0	0.0	9	23.7	8	21.1	17	44.7	4	10.5
금융 및 보험업	31	3.6	1	3.2	3	9.7	11	35.5	11	35.5	5	16.1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36	3.1	2	5.6	7	19.4	14	38.9	10	27.8	3	8.3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5	3.3	0	0.0	1	6.7	9	60.0	4	26.7	1	6.7
합 계(平均)	891	(3.2)	37	(4.2)	185	(20.8)	310	(34.8)	287	(32.2)	72	(8.1)

註: 평균은 각 항목에 대해 다음 수를 적용하여 구한 결과임:

너무 짧음 (1), 조금 짧음 (2), 적당하다 (3), 조금 길다 (4), 너무 길다 (5)

機械裝置의 稅法上 耐用年數에 대한 反應을 賣出額 規模別로 살펴본 결과를 〈表 Ⅲ-3〉에서 보여준다. 機械裝置의 耐用年數에 대한 반응은 企業의 賣出額 規模別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表 Ⅲ-4〉는 機械裝置를 보유한 水準과 機械裝置의 耐用年數에 대한 反應間의 關係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企業이 소유한 機械裝置 規模는 機械裝置의 耐用年數에 대한 반응과는 별다른 연관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表 Ⅲ-3〉 賣出額 規模別 機械裝置 耐用年數의 實際壽命에 대한 意見

(單位 : 個, %)

賣出額	너무짧다		조금짧다		적당하다		조금길다		너무길다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千億원 以上	18	2.0	51	5.7	92	10.3	97	10.9	26	2.9
200億원~千億원 未滿	11	1.2	59	6.6	111	12.5	84	9.4	26	2.9
200億원 未滿	8	0.9	75	8.4	107	12.0	106	11.9	20	2.2
合 計(平均)	37	(4.2)	185	(20.8)	310	(34.8)	287	(32.2)	72	(8.1)

註: Chi-Square 값 = 12.7, p값 = 0.123, 표본수 = 891

〈表 Ⅲ-4〉 機械裝置 規模別 耐用年數의 實際壽命에 대한 意見

(單位 : 個, %)

機械裝置	너무짧다		조금짧다		적당하다		조금길다		너무길다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30億원 以上	18	2.1	63	7.3	99	11.5	77	9.0	21	2.4
5億~30億원 未滿	11	1.3	61	7.1	101	11.8	98	11.4	21	2.4
5億원 未滿	7	0.8	58	6.8	98	11.4	101	11.8	25	2.9
合 計(平均)	36	(4.2)	182	(21.2)	298	(34.7)	276	(32.1)	67	(7.8)

註: Chi-Square 값 = 9.4, p값 = 0.313, 표본수 = 858

#### 나. 建物 및 工具·備品

建物 및 工具·備品の 稅法上 耐用年數의 길이에 대한 反應을 業種別로 나누어 정리한 結果를 〈表 Ⅲ-5〉에서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建物 및 工具·備品の 稅法上의 耐用年數에 대한 反應은 '조금 길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反應은 機械裝置에 대한 反應보다 더욱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業種別로 살펴보면 製造業의 경우 전체 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준다. 반면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경우는 '조금 길다'고 느끼는 강도가 가장 약하게 나타났으며, 농업·수렵업 및 임업의 경우는 '너무 길다'고 느끼고 있어 業種別로

〈表 Ⅲ-5〉 建物 및 工具에 대한 稅法上 耐用年數에 대한 意見

(單位 : 個, %)

標準分類	業 體 數	平 均	(1) 比率		(2) 比率		(3) 比率		(4) 比率		(5) 比率	
농업, 수렵업 및 임업	5	4.4	0	0.0	0	0.0	1	20.0	1	20.0	3	60.0
어업	13	3.3	1	7.7	1	7.7	6	46.2	3	23.1	2	15.4
광업	19	3.6	0	0.0	3	15.8	6	31.6	6	31.6	4	21.1
제조업	606	3.5	8	1.3	94	15.5	193	31.8	224	37.0	87	14.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	3.3	0	0.0	2	50.0	0	0.0	1	25.0	1	25.0
건설업	51	3.7	0	0.0	7	13.7	9	17.7	28	54.9	7	13.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8	3.7	0	0.0	6	10.3	17	29.3	21	36.2	14	24.1
숙박 및 음식점업	30	3.4	0	0.0	6	20.0	9	30.0	13	43.3	2	6.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49	3.5	0	0.0	9	18.4	14	28.6	20	40.8	6	12.2
금융 및 보험업	44	3.6	0	0.0	3	6.8	19	43.2	15	34.1	7	15.9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39	3.4	0	0.0	6	15.4	16	41.0	11	28.2	6	15.4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6	3.5	0	0.0	2	12.5	6	37.5	6	37.5	2	12.5
합 계(平均)	934	(3.5)	9	(1.0)	139	(14.9)	296	(31.7)	349	(37.4)	141	(15.1)

註: 평균은 각 항목에 대해 다음 수를 적용하여 구한 결과임:

너무 짧음 (1), 조금 짧음 (2), 적당하다 (3), 조금 길다 (4), 너무 길다 (5)

다른 반응을 보여준다.

〈表 Ⅲ-6〉은 賣出額 規模에 따른 建物 및 工具·備品の 耐用年數에 관한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建物 및 工具·備品에 대한 稅法上 耐用年數에 대한 반응은 賣出額 規模別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Ⅲ-7〉은 建物資産 規模에 따른 建物 및 工具·備品の 稅法上 耐用年數의 길이에 대한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建物 및 工具·

〈表 Ⅲ-6〉賣出額 規模別 建物 및 備品の 耐用年數에 대한 意見

(單位: 個, %)

賣出額	너무짧다		조금짧다		적당하다		조금길다		너무길다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千億원 以上	3	0.3	37	4.0	96	10.3	129	13.8	40	4.3
200億~千億원 未滿	2	0.2	48	5.1	89	9.5	109	11.7	52	5.6
200億원 未滿	4	0.4	54	5.8	111	11.9	111	11.9	49	5.3
合 計(平均)	9	(1.0)	139	(14.9)	296	(31.7)	349	(37.4)	141	(15.1)

註: Chi-Square 값 = 8.66, p값 = 0.371, 표본수 = 934

備品에 대한 稅法上 耐用年數에 대한 의견은 建物資產規模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表 Ⅲ-7〉建物資產 規模別 建物 및 備品の 耐用年數에 대한 意見

(單位: 個, %)

建物資產	너무짧다		조금짧다		적당하다		조금길다		너무길다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50億원 以上	3	0.4	38	4.3	87	9.8	120	13.5	44	4.9
10億~50億원 未滿	4	0.5	52	5.8	96	10.8	101	11.4	42	4.7
10億원 未滿	2	0.2	46	5.2	93	10.5	113	12.7	48	5.4
合 計(平均)	9	(1.0)	136	(15.3)	276	(31.1)	334	(37.6)	134	(15.1)

註: Chi-Square 값 = 5.2, p값 = 0.73, 표본수 = 893

### 3. 稅法上 耐用年數의 資產別 區分에 대한 意見

現行 稅法에는 耐用年數를 적용하기 위해 業種과 資產을 구분하고 있다. 현행 규정되어 있는 資產區分의 細分化 정도에 대한 반응을 機械裝置와 建物 및 工具·備品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는데 그 結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機械裝置

耐用年數의 적용을 위한 機械裝置의 資産區分에 대하여 應答한 內容을 業種別로 <表 Ⅲ-8>에 정리하였다. 應答業體 全體를 놓고 볼

&lt;表 Ⅲ-8&gt; 稅法上 機械裝置 分類에 대한 意見

(單位: 個, %)

標準分類	業體數	平均	(1) 比率	(2) 比率	(3) 比率	(4) 比率	(5) 比率					
농업, 수렵업 및 임업	5	2.0	1	20.0	3	60.0	1	20.0	0	0.0	0	0.0
어업	11	2.8	3	27.3	1	9.1	3	27.3	3	27.3	1	9.1
광업	19	3.3	0	0.0	4	21.1	8	42.1	5	26.3	2	10.5
제조업	599	3.2	37	6.2	121	20.2	214	35.7	170	28.4	57	9.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	2.5	0	0.0	3	75.0	0	0.0	1	25.0	0	0.0
건설업	51	3.1	4	7.8	11	21.6	16	31.4	17	33.3	3	5.9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5	3.4	2	3.6	7	12.7	20	36.4	20	36.4	6	10.9
숙박 및 음식점업	29	3.4	2	6.9	3	10.3	9	31.0	11	37.9	4	13.8
운수 창고 및 통신업	39	3.2	4	10.3	7	18.0	9	23.1	15	38.5	4	10.3
금융 및 보험업	29	3.2	3	10.3	4	13.8	12	41.4	5	17.2	5	17.2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36	3.1	1	2.8	8	22.2	14	38.9	11	30.6	2	5.6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5	3.3	2	13.3	1	6.7	4	26.7	7	46.7	1	6.7
합 계(平均)	892	(3.2)	59	(6.6)	173	(19.4)	310	(34.8)	265	(29.7)	85	(9.5)

註: 평균은 각 항목에 대해 다음 수를 적용하여 구한 결과임:

너무 세분화(1), 조금 세분화(2), 적당하다(3), 조금 단순화(4), 너무 단순화(5)

대 機械裝置의 分類은 '적당하다'는 業體가 가장 많았고, '조금 단순화'되었다고 응답한 업체가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業種別로 살펴보면 製造業의 경우 전체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수렵업 및 임업의 경우는 資産區分이 '너무 세분

화'되었다는 반응을 보이나, 現行 稅法上의 産業分類에서는 농업, 수렵업 및 임업의 경우는 기타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機械裝置에 대한 分類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宿泊 및 飲食店業의 경우는 '조금 단순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가장 많았다.

〈表 III-9〉 賣出額 規模別 機械裝置의 分類에 대한 意見

(單位: 個, %)

賣 出 額	너무 세분됨		조금 세분됨		적당하다		조금 단순함		너무 단순함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千億원 以上	14	1.6	51	5.7	93	10.4	95	10.7	31	3.5
200億~千億원 未滿	19	2.1	45	5.0	106	11.9	88	9.9	34	3.8
200億원 未滿	26	2.9	77	8.6	111	12.4	82	9.1	20	2.2
合 計(平均)	59	(6.6)	173	(19.4)	310	(34.8)	265	(29.7)	85	(9.5)

註: Chi-Square 값 = 17.9, p값 = 0.022, 표본수 = 892

〈表 III-9〉는 業體의 賣出額 規模別로 機械裝置의 分類에 대한 意見을 정리한 것이다. 賣出額이 적은 업체일수록 機械裝置의 分類가 '너무 세분화'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賣出額이 큰 업체일수록 '너무 단순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賣出額이 큰 업체일수록 다양한 機械裝置를 사용하고 있고, 稅法上 資産分類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 機械裝置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업체들은 稅法上 資産分類가 '너무 단순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 단순한 몇 개의 資産만을 사용하는 비교적 賣出額이 적은 업체들은 現行 稅法上 資産區分이 '너무 세분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表 III-10〉은 소유한 機械裝置 規模別로 機械裝置의 分類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機械裝置를 많이 보유한 업체들은 現行 稅法上 資産區分이 '단순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機械裝置를 적게 보유한 업체들은 資産구분이 '세분화되었다'는 반응을 보여준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대기업일수록 賣出規模가 크고 機械裝置도 많

〈表 Ⅲ-10〉機械裝置 規模別 稅法上 分類에 대한 意見

(單位: 個, %)

機械裝置	너무 세분됨		조금 세분됨		적당하다		조금 단순함		너무 단순함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30億원 以上	16	1.9	42	4.9	99	11.5	86	10.0	36	4.2
5億~30億원 未滿	20	2.3	69	8.0	91	10.6	88	10.2	24	2.8
5億원 未滿	20	2.3	57	6.6	108	12.5	86	10.0	36	2.3
合 計(平 均)	56	(6.5)	168	(19.5)	298	(34.6)	260	(30.2)	80	(9.3)

註: Chi-Square 값 = 13.5, p값 = 0.095, 표본수 = 862

이 保有한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들은 현행 減價償却制度下에서의 業種區分이나 資産區分에 대하여 不完全하다는 主張을 하고 있고, 會計上의 便宜를 위하여 소유한 모든 資産의 耐用年數가 1對1 對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나. 建物 및 工具·備品

〈表 Ⅲ-11〉은 建物 및 工具·備品の 稅法上 資産區分에 대한 응답을 業種別로 정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建物 및 工具·備品에 대한 稅法上의 分類에 대한 意見은 대체적으로 '적당하다'는 응답이 많고, 다음으로는 '조금 단순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약 25% 정도로 나타났다. 業種別로 살펴보면 製造業種이 전체 결과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表 Ⅲ-12〉는 業體의 賣出額 規模에 따른 建物 및 工具·備品の 稅法上의 分類에 대한 意見을 정리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賣出額 規模에 따른 資産區分에 대한 意見은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機械裝置의 稅法上의 資産區分에 대한 意見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表 Ⅲ-13〉은 보유한 建物資産 規模에 따른 建物 및 工具·備品

의 稅法上의 資産區分에 대한 意見을 나타낸 것이다. 대체로 建物 및 工具·備品の 稅法上의 分類에 대한 意見은 建物資産 規模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Ⅲ-11〉業種別 稅法上 建物 및 工具·備品の 區分에 대한 意見

(單位: 個, %)

標準分類	業 體 數	(1)		(2)		(3)		(4)		(5)		
		平均	比率	平均	比率	平均	比率	平均	比率	平均	比率	
농업, 수렵업 및 임업	5	2.4	2	40.0	1	20.0	1	20.0	0	0.0	1	20.0
어업	13	2.6	4	30.8	1	7.7	5	38.5	2	15.4	1	7.7
광업	19	3.0	2	10.5	5	26.3	4	21.1	7	36.8	1	5.3
제조업	606	3.0	43	7.1	140	23.1	231	38.1	152	25.1	40	6.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	2.8	0	0.0	2	50.0	1	25.0	1	25.0	0	0.0
건설업	50	3.0	4	8.0	14	28.0	16	32.0	12	24.0	4	8.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8	3.3	5	8.6	5	8.6	21	36.2	20	34.5	7	12.1
숙박 및 음식점업	30	3.1	1	3.3	10	33.3	9	30.0	6	20.0	4	13.3
운수 창고 및 통신업	48	3.0	5	10.4	16	22.9	16	33.3	13	27.1	3	6.3
금융 및 보험업	43	3.0	3	7.0	15	25.6	15	34.9	11	25.6	3	7.0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38	3.1	2	5.3	13	23.7	13	34.2	10	26.3	4	10.5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6	3.3	1	6.3	7	12.5	7	43.8	4	25.0	2	12.5
합 計(平均)	930	(3.2)	72	(7.7)	211	(22.7)	339	(36.5)	238	(25.6)	70	(7.5)

註: 平均은 각 항목에 대해 다음 수를 적용하여 구한 결과임:

너무 세분화(1), 조금 세분화(2), 적당하다(3), 조금 단순화(4), 너무 단순화(5)

〈表 Ⅲ-12〉 賣出額 規模別 建物 및 工具·備品 區分에 대한 意見

(單位: 個, %)

賣出額	너무 세분됨		조금 세분됨		적당하다		조금 단순함		너무 단순함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千億원 以上	23	2.5	73	7.9	96	10.3	88	9.5	24	2.6
200億~千億원 未滿	23	2.5	71	7.6	109	11.7	68	7.3	26	2.8
200億원 未滿	26	2.8	67	7.2	134	14.4	82	8.8	20	2.2
合計(平均)	72	(7.7)	211	(22.7)	339	(36.4)	238	(25.6)	70	(7.5)

註: Chi-Square 값 = 8.68, p값 = 0.37, 표본수 = 930

〈表 Ⅲ-13〉 建物資産 規模別 建物 및 備品 區分에 대한 意見

(單位: 個, %)

建物資産	너무 세분됨		조금 세분됨		적당하다		조금 단순함		너무 단순함	
		比率		比率		比率		比率		比率
50億원 以上	19	2.1	75	8.5	97	11.0	75	8.5	26	2.9
10億원~50億원 未滿	26	2.9	59	6.7	113	12.8	75	8.5	21	2.4
10億원 未滿	19	2.7	65	7.3	114	12.9	77	8.7	20	2.3
合計(平均)	69	(7.8)	199	(22.5)	324	(36.6)	227	(25.6)	67	(7.6)

註: Chi-Square 값 = 375.6, p값 = 0.685, 표본수 = 886

#### 4. 中古資産의 處理方法

이節에서는 企業이 中古資産의 使用實態와 處理實態를 機械裝置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선 減價償却이 끝난 機械裝置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아직 固有의 生産目的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生産目的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본 調査에서는 生産目的에 이용할 여지가 있는 機械裝置들을 中古品으로 팔 때에 받을 수 있는 金額을 조사하였는데 그 結果는 購入價額 대비 약 9.3%로 나타났다. 이러한 종류의 機械裝置는 우선적으로

移動이 간편하고, 製品의 生産週期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機械裝置여야 할 것이다.

또 生産에 이용할 수 없는 機械裝置의 경우에 드는 廢棄處分 費用이나 解體費用은 購入價格 대비 약 2.3%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機械裝置에는 크기가 커서 이동하기가 어려운 것들과 製品의 生産週期와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同一 製品의 生産에 이용될 수 없는 機械裝置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판매할 수 있는 機械裝置의 비중은 廢棄處分해야 하는 경우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수명이 다한 기계가 가지고 있는 價値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調査의 結果를 現行 稅法上의 10%의 殘存價額과 비교해 보면 이 殘存價額制度는 現實性이 없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된다.

다음은 機械裝置를 中古品으로 판매한 經驗有無와 處分理由, 處分費用 및 處分利益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 가. 中古 機械裝置의 販賣 經驗

〈表 III-14〉는 機械裝置를 中古品으로 판매한 經驗여부를 業種別로 나누어 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71%가 中古品으로 판매한 經驗이 있고 29%가 판매한 經驗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調査에 應答한 業體 중에는 설립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業體도 포함되어 있고 金融業種과 같이 機械裝置가 없는 業種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中古資産인 機械裝置의 賣買는 보편적인 일임을 알 수 있다. 業種別로 살펴보면 製造業의 경우 전체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준다. 반면 建設業은 중고품을 판매한 經驗이 가장 높아 82% 수준으로 나타났다. 宿泊 및 飲食店業은 가장 낮은 수준인 47%로 나타나 業種別로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도 현행 세법상의 분류에 의하여 機械裝置를 보유하지 않는 業種인 金融 및 保險業은 工具 및 備品에 대한 의견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것이다.

〈表 Ⅲ-14〉 機械裝置의 中古品 販賣與否

(單位: 個, %)

標 準 分 類	業體數	있 다		없 다	
		業體數	比 率	業體數	比 率
농업, 수렵업 및 임업	5	3	60.0	2	40.0
어업	14	8	57.1	6	42.9
광업	19	15	78.9	4	21.1
제조업	609	449	73.7	160	26.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	3	75.0	1	25.0
건설업	51	42	82.4	9	17.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8	43	74.1	15	25.9
숙박 및 음식점업	30	14	46.7	16	53.3
운수 창고 및 통신업	49	33	67.3	16	32.7
금융 및 보험업	44	24	54.5	20	45.5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39	22	56.4	17	43.6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6	10	62.5	6	37.5
합 計(平均)	938	666	(71.0)	272	(29.0)

#### 나. 中古品으로 販賣한 理由

〈表 Ⅲ-15〉는 中古品으로 판매한 이유를 정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하는 資産이 물리적 문제가 없어도 舊形이기 때문에 機械資産을 販賣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42%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機械資産의 수명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應答한 業體가 21%로 나타났다.

〈表 Ⅲ-15〉業種別 中古 機械裝置의 販賣 理由

(單位: 個, %)

標準分類	業體數	(1) <sup>1)</sup>	比率	(2) <sup>2)</sup>	比率	(3) <sup>3)</sup>	比率	(4) <sup>4)</sup>	比率
농업, 수렵업 및 임업	3	0	0.0	2	66.7	1	33.3	0	0.0
어업	8	2	25.0	1	12.5	5	62.5	0	0.0
광업	15	4	26.7	3	20.0	6	40.0	2	13.3
제조업	449	96	21.4	80	17.8	190	42.3	83	18.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	1	33.3	1	33.3	1	33.3	0	0.0
건설업	42	8	19.0	6	14.3	20	47.6	8	19.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43	6	14.0	11	25.6	20	46.5	6	14.0
숙박 및 음식점업	14	3	21.4	6	42.9	4	28.6	1	7.1
운수 창고 및 통신업	33	8	24.2	5	15.2	13	39.4	7	21.2
금융 및 보험업	24	4	16.7	7	29.2	11	45.8	2	8.3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22	4	18.2	5	22.7	10	45.5	3	13.6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0	2	20.0	3	30.0	1	10.0	4	40.0
합 計(平均)	666	138	(20.7)	130	(19.5)	282	(42.3)	116	(17.4)

註: 1) 자산의 수명이 끝났기 때문

2) 사용하는 자산에 물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

3) 사용하는 자산에 물리적 문제가 없어도 구형이기 때문

4) 그외 이유

技術發展 速度가 빨라짐에 따라 物理的 壽命이 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계설비로 대체하는 일은 企業活動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既存의 기계설비를 中古市場을 통하여 판매하는 비율은 減價償却이 완료되기 이전에도 흔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Ⅲ-16〉은 業種別로 壽命이 다한 中古資産을 판매할 수 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 경우이다. 結果를

〈表 Ⅲ-16〉業種別 中古 機械裝置의 販賣價格(購入價格 對比)

(單位: 個, %)

標準分類	業體數	販賣價格	標準偏差
농업, 수렵업 및 임업	3	16.8	25.0
어업	10	8.1	6.7
광업	18	10.5	6.7
제조업	482	9.5	7.0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	8.3	8.9
건설업	47	9.4	7.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49	9.3	9.1
숙박 및 음식점업	15	5.8	3.6
운수 창고 및 통신업	32	12.2	13.8
금융 및 보험업	25	7.3	3.5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23	6.7	4.5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2	9.0	6.5
합 計(平均)	720	(9.3)	(7.5)

〈表 Ⅲ-17〉賣出額 規模別 中古 機械裝置의 販賣 經驗

(單位: 個, %)

賣 出 額	있다		없다	
	個數	比率	個數	比率
1000億원 以上	241	25.7	65	6.9
200億원~1000億원 未滿	214	22.8	88	9.4
200億원 未滿	211	22.5	119	12.7
合 計(平均)	666	(71.0)	272	(29.0)

註: Chi-Square 값 = 16.9, p값 = 0.000, 표본수 = 938

보면 전반적인 業種에서 現行 稅法上의 殘存價額인 10% 수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표는 廢棄費用이 정리되어 있는 〈表 Ⅲ-18〉과 동시에 분석함이 옳을 것이다.

〈表 Ⅲ-17〉은 賣出額 規模別로 中古品으로 機械裝置를 판매한 經驗 有無를 정리한 표이다. 表를 보면 賣出額이 큰 企業일수록 賣出

額이 작은 企業보다 機械裝置를 中古品으로 판매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출액이 큰 企業들은 資本力을 바탕으로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彈力的으로 새로운 資産을 도입하고 既存의 資産은 中古市場을 통하여 판매하는 일이 相對的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다. 機械裝置의 廢棄費用

〈表 Ⅲ-18〉은 機械裝置가 物理的 壽命이 다하였을 때 처리하는 費用을 購入價格 對比 比率로 나타낸 것이다. 現行 稅法上에는 수명이 다한 資産도 購入價格의 10%에 대해서는 減價償却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廢棄資産의 價値가 購入價格의 10%인 것을 의미한다. 그

〈表 Ⅲ-18〉 機械裝置의 廢棄處分 費用(購入價格 對比 比率)

(單位: 個, %)

標準分類	業體數	處分費用	標準偏差
농업, 수렵업 및 임업	4	0.8	0.5
어업	12	2.3	3.1
광업	18	0.8	2.4
제조업	553	2.3	3.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	6.3	9.5
건설업	50	2.3	3.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2	3.4	6.4
숙박 및 음식점업	20	3.3	2.9
운수 창고 및 통신업	40	2.7	3.8
금융 및 보험업	28	1.5	1.9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29	1.6	1.8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3	3.2	3.6
합 計(平均)	823	(2.3)	(3.4)

러나 현재 廢棄品에 대한 價値는 購入價格의 10%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購入價格의 2.3% 정도의 廢棄費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中古資産을 販賣하는 경우와 廢棄處分하는 경우를 종합해 보면 판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購入價格의 약 9.3%이고, 廢棄處分費用은 약 2.3%로 販賣와 廢棄處分되는 資産의 비율을 무시하더라도 減價償却이 끝난 資産의 평균적인 價値는 現行 稅法上의 殘存價額 10%보다는 훨씬 작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製品製造設備가 각 企業間에 互換性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감안할 때 어떠한 형태로 中古資産(감가상각이 다 끝난 자산)을 처리하든지 간에 處分利益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結果를 종합해 보면 10%의 殘存價額을 두고 있는 현행 제도는 企業의 稅負擔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100% 償却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改善이 要望된다.

#### 라. 中古 機械裝置의 購入 經驗

〈表 Ⅲ-19〉는 機械裝置의 中古品 購入 有無를 業種別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中古品으로 機械裝置를 구입한 經驗이 있는 業體가 전체의 28%, 經驗이 없는 業體가 전체의 72%를 차지한다. 이를 業種別로 나누어 살펴보면 製造業의 경우는 中古品으로 구입한 經驗이 있는 業體가 전체의 31%로 전체 수준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表 Ⅲ-20〉은 企業의 賣出額 規模別로 機械裝置를 中古品으로 구입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賣出額이 적은 業體일수록 機械裝置를 中古品으로 구입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賣出額이 적은 企業이 대체적으로 技術開發에 민감한 資産을 구입할 필요가 없고,

賣出規模가 큰 企業에 비해 資金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中古市場을 통해 一般 機械資産을 구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表 Ⅲ-19〉 機械裝置의 中古品 購入比率

(單位: 個, %)

標準分類	業體數	있 다		없 다	
		比 率	비 率	비 率	비 率
농업, 수렵업 및 임업	5	2	40.0	3	60.0
어업	14	5	35.7	9	64.3
광업	19	8	42.1	11	57.9
제조업	609	191	31.4	418	68.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	1	25.0	3	75.0
건설업	51	14	27.5	37	72.5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8	10	17.2	48	82.8
숙박 및 음식점업	30	4	13.3	26	86.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49	17	34.7	32	65.3
금융 및 보험업	44	1	2.3	43	97.7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39	10	25.6	29	74.4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6	0	0.0	16	100.0
합 計(平均)	938	263	(28.0)	675	(72.0)

〈表 Ⅲ-20〉 賣出額 規模別 中古 機械裝置의 購入有無

(單位: 個, %)

賣 出 額	있 다		없 다	
	業體數	比 率	業體數	比 率
1000億원 以上	66	7.0	240	25.6
200億원~1000億원 未滿	86	9.2	216	23.0
200億원 未滿	111	11.8	219	23.4
合 計(平均)	263	(28.0)	675	(72.0)

註: Chi-Square 값 = 11.5, p값 = 0.003, 표본수 = 938

### 마. 機械資産에서 中古 機械裝置의 比率

〈表 Ⅲ-21〉은 全體 機械資産 중에서 中古品으로 구입한 資産의 帳簿價格 對比 比率를 業種別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全體 機械資産 중에서 中古品으로 구입한 資産의 비율은 3.9%로 調査 結果 나타났다. 이를 業種別로 나누어 살펴보면 製造業의 경우는 3.4%로 조금 낮은 수준이다. 반면 中古品을 구입한 비율이 높은 業種은 광업과 운수·창고 및 통신업으로 각각 10.3%, 8%로 나타났다. 중고품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業種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과 금융 및 보험업으로 각각 1.2%, 1.4%를 보여준다.

〈表 Ⅲ-21〉 全體 機械資産에서 中古 機械裝置의 比率(帳簿價格對比)

(單位: 個, %)

標準分類	業體數	中古價格	標準偏差
농업, 수렵업 및 임업	5	4.0	8.9
어업	14	5.8	9.6
광업	19	10.3	25.9
제조업	609	3.4	10.9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	1.2	2.5
건설업	51	4.7	13.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8	3.7	12.6
숙박 및 음식점업	30	5.4	17.9
운수·창고 및 통신업	49	8.0	19.0
금융 및 보험업	44	1.4	9.1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39	5.1	15.5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6	0.0	0.0
合計(平均)	938	(3.9)	(12.4)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金融 및 保險業의 경우는 機械裝置로 분류된 資産이라기보다는 備品으로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 5. 減價償却方法에 대한 調査 結果

現行 稅法에서는 減價償却方法을 定率法과 定額法 중에서 하나를 企業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表 Ⅲ-22>는 企業이 사용하고 있는 減價償却方法을 業種別로 조사한 結果이다. 全體 企業 중에서 약 4분의 3 정도가 定率法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4분의 1 은 定額法을 사용하고 있다. 定率法을 사용하는 비율을 業種別로 살펴보면 製造業의 경우는 전체 수준과 비슷하나 약간 낮았고, 建設業의 경우는 96%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宿泊 및 飲食店業과 運輸·倉庫 및 通信業이 定率法을 사용하는 比率은 全體 平均보다 낮은 약 57% 수준이다.

<表 Ⅲ-22> 有形固定資産의 減價償却方法에 대한 調査結果

(單位: 個, %)

標準分類	業體數	定率法		定額法	
			比率		比率
농업, 수산업 및 임업	5	3	60.0	2	40.0
어업	14	12	85.7	2	14.3
광업	19	16	84.2	3	15.8
제조업	609	449	73.7	160	26.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	2	50.0	2	50.0
건설업	51	49	96.1	2	3.9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8	47	81.0	11	19.0
숙박 및 음식점업	30	17	56.7	13	43.3
운수·창고 및 통신업	49	28	57.1	21	42.9
금융 및 보험업	44	35	79.5	9	20.5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39	33	84.6	6	15.4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6	11	68.8	5	31.3
합 計(平均)	938	702	(74.8)	236	(25.2)

企業의 特性에 따른 減價償却方法을 살펴본다. 먼저 <表 Ⅲ-23>은 賣出額 規模別로 減價償却方法에 대한 應答을 정리한 것이다. 이 表를 보면 賣出額이 큰 業體일수록 定額法을 이용하는 비율이 全體水準보다 높고, 賣出額이 적은 業體일수록 定率法을 사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규모가 큰 企業들은 稅政當局과의 마찰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減價償却方法을 保守的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表 Ⅲ-23> 賣出額 規模別 減價償却方法

(單位: 個, %)

賣 出 額	定率法		定額法	
		比 率		比 率
1000億원 以上	197	21.0	109	11.6
200億원~1000億원 未滿	241	25.7	61	6.5
200億원 未滿	264	28.1	67	7.0
合 計(平 均)	702	(74.8)	236	(25.1)

註: Chi-Square 값 = 26.39, p값 = 0.000, 표본수 = 938

<表 Ⅲ-24> 建物資産 規模別 減價償却方法

(單位: 個, %)

建 物 資 産	定率法		定額法	
		比 率		比 率
50億원 以上	180	20.2	114	12.7
10億원~50億원 未滿	236	26.4	60	6.7
10億원 未滿	250	28.0	53	6.0
合 計(平 均)	666	(74.6)	227	(25.4)

註: Chi-Square 값 = 41.8, p값 = 0.000, 표본수 = 893

<表 Ⅲ-23>의 結果는 建物資産 規模別로 비교한 結果(<表 Ⅲ-24>)와 機械資産 規模別로 정리한 結果(<表 Ⅲ-25>)와도 비슷한 結果를 보여준다. 즉 建物資産 및 機械資産 規模가 큰 企業은 상대적으로 定額法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規模가 작은 業體는 상대적

〈表 III-25〉機械裝置 規模別 減價償却方法

(單位: 個, %)

機 械 裝 置	定率法		定額法	
		比 率		比 率
30億원 以上	160	17.9	121	13.6
5億원~30億원 未滿	248	27.8	44	4.9
5億원 未滿	258	28.9	62	6.9
合 計(平 均)	666	(74.6)	227	(25.4)

註: Chi-Square  $\chi^2 = 68.8$ ,  $p\chi^2 = 0.000$ , 표본수 = 893

으로 定率法을 사용하는 比率이 높다.

〈表 III-26〉은 減價償却額과 減價償却方法을 비교한 結果이다. 表를 보면 減價償却額 規模가 큰 業體가 상대적으로 定額法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減價償却額 規模가 작은 業體는 定率法을 사용하는 比率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表 III-31〉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表 III-26〉減價償却 規模別 減價償却方法

(單位: 個, %)

減 價 償 却 額	定率法		定額法	
		比 率		比 率
10億원 以上	172	19.3	101	11.3
10億원 以上	172	19.3	101	11.3
3億원~10億원 未滿	238	26.7	59	6.6
3億원 未滿	256	28.7	67	7.5
合 計(平 均)	666	(74.6)	227	(25.4)

註: Chi-Square  $\chi^2 = 27.9$ ,  $p\chi^2 = 0.000$ , 표본수 = 893

## 6. 改善事項에 대한 調査結果

〈表 Ⅲ-27〉은 現行 稅法上의 減價償却制度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問題點이 무엇인가라는 質問의 應答을 내용별로 분류한 결과이다. 가장 높은 比率을 보여주는 사안은 耐用年數에 관한 것으로 全體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다. 두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는 사안은 殘存價額에 대한 것으로 全體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表 Ⅲ-28〉은 企業의 賣出額 規模에 따른 減價償却制度의 問題點을 비교한 結果이다. 賣出額이 큰 業體가 耐用年數에 대한 問題點의 지적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殘存價額에 대한 問題點은 더욱 심각하게 느낌을 보여준다.

〈表 Ⅲ-29〉는 業種別로 減價償却制度에 대한 問題點을 분류해 보았다. 製造業의 경우는 耐用年數에 대한 問題點이 非製造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데 비해, 殘存價額에 대한 問題點 是正을 주장하는 業體가 많았다.

〈表 Ⅲ-27〉 減價償却制度의 改善事項

(單位: 件, %)

建 議 內 容	件 數	比 率
1. 耐用年數	507	58.8
2. 資產區分	69	8.0
3. 減價償却方法	32	3.7
4. 殘存價額	96	11.1
5. 特別償却	17	2.0
6. 會計處理 問題	41	4.8
7. 即時償却限度	56	6.5
8. 滿足함	44	5.1
總 件 數	862	100.0

〈表 Ⅲ-28〉賣出額 規模別 減價償却制度의 改善事項

(單位: 件, %)

賣出額/比率	(1) <sup>1)</sup>	(2) <sup>2)</sup>	(3) <sup>3)</sup>	(4) <sup>4)</sup>	(5) <sup>5)</sup>	(6) <sup>6)</sup>	(7) <sup>7)</sup>	(8) <sup>8)</sup>	件數
10億원 以上	177	27	14	36	10	14	21	4	303
比率	58.4	8.9	4.6	11.9	3.3	4.6	6.9	1.3	100.0
2億원~10億 원 未滿	159	16	8	37	2	14	16	22	274
比率	58.0	5.8	2.9	13.5	0.7	5.1	5.8	8.0	100.0
2億원 未滿	171	26	10	13	5	13	14	18	270
比率	63.3	9.6	3.7	4.8	1.9	4.8	5.2	6.7	100.0

註: 1) 耐用年數, 2) 자산구분, 3) 감가상각방법, 4) 잔존가액, 5) 특별  
상각, 6) 회계처리 문제, 7) 즉시상각, 8) 만족함

〈表 Ⅲ-29〉業種別 減價償却制度의 問題點 改善事項

(單位: 件, %)

産業區分/比率	(1) <sup>1)</sup>	(2) <sup>2)</sup>	(3) <sup>3)</sup>	(4) <sup>4)</sup>	(5) <sup>5)</sup>	(6) <sup>6)</sup>	(7) <sup>7)</sup>	(8) <sup>8)</sup>	件數
製造業	316	42	19	67	8	29	38	29	548
比率	57.7	7.7	3.5	12.2	1.5	5.3	6.9	5.3	100.0
非製造業	191	27	13	29	9	12	18	15	314
比率	60.8	8.6	4.1	9.2	2.9	3.8	5.7	4.8	100.0

註: 〈表 Ⅲ-28〉과 같음

## 7. 經濟的 耐用年數에 대한 調査結果

본 調査에서는 稅法上에 규정되어 있는 各 資産에 대하여 經濟的 耐用年數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資産別 經濟的 耐用年數에 대한 질문은 매우 어려운 질문이며 깊은 생각을 요하는 문제이다. 또한 經濟的 耐用年數에 대한 理解度가 낮아 응답한 자료를 해석하는 데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技術開發 速度가 빠르지 않은 業種의 경우에

는 經濟的 耐用年數와 物理的 耐用年數가 別다른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또한 資本的 支出을 통해 耐用年數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經濟的 耐用年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資本的 支出을 고려하지 않은 응답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業種에 따라서는 이러한 資本的 支出을 통해 증가한 耐用年數를 經濟的 耐用年數로 응답한 업체가 있어 각 資産에 대한 平均 耐用年數를 구할 때 本 調査에서 의도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業體들의 應答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여 비교하는 것보다 최빈값을 이용하여 비교하는 것이 本 調査에서 의도한 資産別 經濟的 耐用年數를 더욱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本 調査를 통해 구한 資産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建物資産, 機械裝置 이외의 資産 및 機械資産이 그것이다. 세 가지 자산에 대한 經濟的 耐用年數의 최빈값의 평균치와 稅法上 耐用年數의 平均値를 비교한 結果를 <表 III-30>에서 정리하였다. 세 資産 모두에서 經濟的 耐用年數가 稅法上 耐用年數보다 짧은을 알 수 있다. 즉 建物の 경우는 稅法에서 규정한 耐用年數의 65%, 機械裝置 이외의 資産은 82%, 機械裝置는 88% 水準을 보여준다<sup>2)</sup>.

<表 III-30> 資産別 稅法 및 經濟的 耐用年數의 比較

(單位: 年, %, 個)

資 産	建 物		機械裝置 以外		機 械 裝 置	
	稅法	實際	稅法	實際	稅法	實際
平均値	24.3	15.8	6	4.9	8.1	7.1
實際/稅法	65		82		88	
資産數	35		47		260	

2) 資産別 응답한 經濟的 耐用年數에 대한 결과는 大韓商工會議所와 韓國租稅研究院의 『기업의 감가상각 실태와 정책시사성』에 자세히 수록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資産種類別로 나누어 建物資産, 機械裝置 이외의 資産, 機械裝置 順으로 統計値가 정리되어 있다.

## IV. 減價償却制度의 國際比較

일반적으로 減價償却制度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세 가지를 드는데 그것은 稅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資産의 耐用年數와 減價償却方法, 殘存價額이다. 이 세 가지 變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作用하여 企業이 부담하는 減價償却額이 결정된다. 그외 減價償却制度에서 고찰이 필요한 사항으로 強制償却 여부, 即時償却의 限度額 등을 들 수 있다. 이 章에서 우리나라의 減價償却制度和 비교할 나라는 美國과 日本이 중심이 되고, 英國과 獨逸의 制度는 資料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比較한다.

減價償却制度를 國際比較할 때는 減價償却에 대한 視角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美國과 英國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減價償却 政策은 減價償却의 現實과 관계없다는 視角이다. 둘째는 日本과 獨逸로 대표할 수 있으며 減價償却 政策은 減價償却의 現實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視角이다. 이러한 減價償却 政策에 대한 국가별 視角의 차이는 구체적인 制度를 비교하면 더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減價償却制度는 日本과 獨逸의 政策方向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章에서는 두 가지 政策方向을 갖고 있는 국가들 중

〈表 IV-1〉 減價償却 政策方向에 대한 視角

國名	減價償却政策에 대한 視角
美國, 英國	減價償却政策은 減價償却 現實과 別個
日本, 獨逸	減價償却政策은 減價償却 現實과 一致

에서 비교적 資料가 풍부한 美國과 日本을 中心으로 制度의 差異點을 논의하고 우리나라 制度와 비교한다<sup>1)</sup>.

## 1. 耐用年數의 國際比較

우리나라의 稅法上 耐用年數를 美國과 日本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比較對象國인 美國과 日本의 稅法上 耐用年數는 매우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美國의 경우 1981년 이전까지는 각 有形資產의 經濟的 耐用年數를 바탕으로 稅法上 耐用年數를 결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따라서 稅法上 耐用年數를 가능한 經濟的 耐用年數와 일치시키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다<sup>2)</sup>. 그러나 1981년 ACRS 制度가 도입되면서 稅法上 耐用年數를 經濟的 耐用年數와 관계없이 대폭 단축시켰다. ACRS 制度가 도입된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고찰할 수 있다. 첫째, 有形資產에 대한 經濟的 耐用年數는 經濟 및 經濟外的 環境에 따라 변화하므로 이를 稅法으로 정확히 일치시키기 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고, 둘째로 稅法上 耐用年數는 企業의 經濟活動을 유도할 수 있는 政策道具로써 사용되므로 經濟的 耐用年數와는 일치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981년 이후 美國의 稅法上 耐用年數는 各 資產에 해당하는 耐用年數가 대폭 단축되었을 뿐 아니라, 資產의 區分도 5개 그룹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日本의 경우, 稅法上 耐用年數는 有形資產의 經濟的 耐用年數에 가능한 접근시키려는 段階에 있다. 그러므로 美國과는 달리 有形資產의 區分도 매우 복잡하게 되어 모두 849개의 資產으로 區分되어 있

1) 영국, 독일, 프랑스의 감가상각제도에 대한 개략적 설명은 한국조세연구원 (1994)을 참조하기 바란다.

2) 美國의 減價償却 制度에 대한 歷史的 考察은 <부록 V>를 參照하기 바란다.

고, 稅法上 耐用年數도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本 研究에서 우리나라의 稅法上 耐用年數를 美國과 日本과 비교하는 이유는 이 두 나라가 有形資産의 耐用年數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制度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美國과 日本의 有形資産의 稅法上 耐用年數에 대한 特徵을 比較한 結果는 <表 IV-2>에 요약되어 있다<sup>3)</sup>.

<表 IV-2> 稅法上 耐用年數의 特徵 比較: 美國과 日本

	美 國	日 本
視角	세법상 내용연수가 경제적 내용연수와 별개임	세법상 내용연수가 경제적 내용연수와 일치함
資産區分	8 그룹	849개

稅法上 耐用年數를 國際比較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나라별로 다른 有形資産의 區分을 標準化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비교적 既存의 研究結果를 중심으로 資産을 區分하여 우리나라의 稅法上 耐用年數와 比較한다.

<表 IV-3>은 35개 有形資産에 대한 稅法上 耐用年數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美國을 비교한 結果이다<sup>4)</sup>. 有形資産에 대한 稅法上 耐用年數는 美國의 네 가지 歷史的 制度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하였다. 美國의 耐用年數 制度가 1981년을 기점으로 視角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美國의 과거 制度들과 현재 우리나라의 制度를 비교한다. <表 IV-3>에서 35개 有形資産의 平均을 比較해보면 우리나라의 稅法上 耐用年

3) 獨逸은 資産別 耐用年數의 區分을 95개 業種別로 細分化하고 각 業種別로 資産을 구분하여 매우 세분화하였다. 반면 英國은 資産區分을 業種別 區分이 없이 全體 資産을 4개로 그룹을 지어 매우 單純하게 適用한다.

4) 35개 資産區分은 Jorgenson과 Sullivan(1981)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들 資産에 대한 稅法上 耐用年數가 이미 잘 정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區分을 基準으로 우리나라의 資産區分을 再構成하였다. 우리나라의 資産區分과 Jorgenson과 Sullivan 구분에 대한 具體的인 一致方法은 <부록 III>에 정리되어 있다.

〈表 IV-3〉 稅法上 耐用年數의 比較: 美國과 韓國

(單位: 年, %)

資産의 區分	美 國				韓 國	比 較			
	Bullein F (A)	ADR (B)	ACRS (C)	MACR (D)	稅法上 耐用年 數 (E)	(E/A)	(E/B)	(E/C)	(E/D)
1. 가구 및 내부시설	17.6	10	5	7	7.06	40.1	70.6	141.2	100.9
2. 조립금속제품	21.2	12.5	5	7	6.22	29.3	49.8	124.4	88.9
3. 엔진 및 터빈	24.7	15.6	5	7	-	-	-	-	-
4. 트랙터	9.4	4.3	5	5	-	-	-	-	-
5. 농업용기계	20	10	5	7	5	25.0	50.0	100.0	71.4
6. 건설용기계	10.6	9.9	5	5	4.71	44.4	47.6	94.2	94.2
7. 광산 및 유전용기계	11.8	9.6	5	5	6.6	55.9	68.8	132.0	132.0
8. 금속가공용기계	18.8	12.7	5	7	8.05	42.8	63.4	161.0	115.0
9. 특수산업용기계	18.8	12.7	5	7	8.11	43.1	63.9	162.2	115.9
10. 일반산업용기계	16.6	12.3	5	7	7.7	46.4	62.6	154.0	110.0
11.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	9.4	10	5	7	5.36	57.0	53.6	107.2	76.6
12. 서비스산업용기계	11.8	10.3	5	7	5.93	50.3	57.6	118.6	84.7
13. 전기기계	16.5	12.4	5	7	5.2	31.5	41.9	104.0	74.3
14. 트럭, 버스, 트레일러	10.6	5.6	5	5	4	37.7	71.4	80.0	80.0
15. 승용차	11.8	3	3	5	4	33.9	133.3	133.3	80.0
16. 비행기	10.6	6.3	5	5	4.4	41.5	69.8	88.0	88.0
17. 선박 및 보트	25.9	18	5	10	9.82	37.9	54.6	196.4	98.2
18. 철도장비	29.4	15	5	5	22.3	75.9	148.7	446.0	446.0
19. 기구	12.9	10.6	5	5	5.38	41.7	50.8	107.6	107.6
20. 기타장비	12.9	10.2	5	5	8.4	65.1	82.4	168.0	168.0
21. 공업용건물	31.8	28.8	15	31.5	22.45	70.6	78.0	149.7	71.3
22. 상업용건물	42.3	47.6	15	31.5	38	89.8	79.8	253.3	120.6
23. 사찰(교회)용건물	56.5	48	15	31.5	39.17	69.3	81.6	261.1	124.3
24. 교육용건물	56.5	48	15	31.5	37.6	66.5	78.3	250.7	119.4
25. 의료용건물	56.5	48	15	31.5	37.6	66.5	78.3	250.7	119.4
26. 기타 비농업용건물	36.5	30.9	15	31.5	12	32.9	38.8	80.0	38.1
27. 철도	60	30	15	20	24.12	40.2	80.4	160.8	120.6
28. 전신전화용시설	31.8	27	15	20	11.33	35.6	42.0	75.5	56.7
29. 전동 및 전력	35.3	27	15	20	22.92	64.9	84.9	152.8	114.6
30. 가스	35.3	24	10	15	12.17	34.5	50.7	121.7	81.1
31. 기타 공공재	30.6	22	10	15	27.85	91.0	126.6	278.5	185.7
32. 농장	44.7	25	10	20	8	17.9	32.0	80.0	40.0
33. 채광, 탐사, 경도, 유정	18.8	6.8	5	5	-	-	-	-	-
34. 기타 비건축 시설물	36.5	28.2	15	31.5	19.1	52.3	67.7	127.3	60.6
35. 주거용건물	40	40	15	27.5	39.17	97.9	97.9	261.1	142.4
평 균						50.9	70.6	160.0	110.2

註: Bulletin F : 1962년 이전, ADR: 1971~1980, ACRS: 1981~1986, MACRS : 1987 이후  
 資料: Jorgenson and Sullivan(1981)

數는 1962년 이전에 시행된 Bulletin F 耐用年數의 50.9%에 해당한다. 반면 ADR 制度(1971~1980)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制度는 70.6%에 해당한다. 美國에서 資産의 經濟的 耐用年數를 제대로 반영하려는 두 가지 制度에 의한 稅法上 耐用年數는 우리나라의 稅法上 耐用年數보다 훨씬 길게 나타났다. ACRS 制度(1981~1986)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耐用年數는 평균적으로 美國 耐用年數의 160%만큼 길다. 1987년 이후 시행된 現在의 制度인 MACRS下에서는 우리나라의 耐用年數가 美國의 110% 水準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稅法上 耐用年數는 美國의 經濟的 耐用年數를 바탕으로 한 制度와 비교할 때는 짧은 반면 經濟的 耐用年數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된 美國의 制度와 비교할 때는 길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表 IV-4〉는 機械裝置에 대한 稅法上 耐用年數를 日本과 우리나라를 비교한 結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資産의 區分은 美國보다는 日本과 유사하기 때문에 資産區分에 따른 어려움은 적었다. 40개 業種에 대한 稅法上 耐用年數를 平均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機械裝置에 대한 平均 耐用年數는 7.97年인 반면, 日本의 平均 耐用年數는 9.66年으로 나타났다<sup>5)</sup>.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耐用年數는 日本의 82.5% 정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機械裝置 이외의 有形固定資産에 대한 稅法上 耐用年數를 日本의 경우와 비교한 結果가 〈表 IV-5〉이다. 8개 종류의 有形固定資産의 平均 耐用年數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14年으로 나타난 반면 日本은 20.79年임을 보여준다. 機械裝置 이외의 資産에 대한 稅法上 耐用年數는 두 나라간에 큰 차이는 없다.

5) 本 研究에서 구한 機械裝置의 平均 耐用年數는 單純平均値이다. 「國富統計調査」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機械裝置에 대한 平均 耐用年數가 9年으로 나타났다. 이 推定値는 全體 資産額에서 各 資産이 차지하는 比率를 考慮하여 구한 加重平均値이기 때문에 더욱 正確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나라와 日本의 機械裝置의 耐用年數를 比較하는 것이 目的이고 日本의 加重平均値에 대한 正確한 資料를 구할 수 없으므로 單純平均値를 使用하여 比較한다.

〈表 IV-4〉 機械裝置의 稅法上 耐用年數에 대한 韓·日比較

(單位: 年, %)

番 號	事 業 別	韓 國 (A)	日 本 (B)	A / B
1	금속광업	7.0	9.0	77.8
2	비금속광업	6.5	6.5	100.0
3	석면광업	7.0	8.0	87.5
4	석탄광업	5.0	7.3	68.5
5	석유광업	8.0	9.3	86.0
6	철강업	8.2	11.1	73.9
7	비철금속 제조업	7.9	9.5	83.2
8	금속제품 제조업	8.8	11.4	77.2
9	기계 제조업	8.6	11.1	77.5
10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6.4	8.7	73.6
11	수송용기계 제조업	8.9	11.1	80.2
12	계량기·측정기·측량기계·의료기기 ·광학기계 제조업	8.0	0.7	74.8
13	무기 제조업	9.0	11.3	79.7
14	기타의 기계류 제조업	11.5	13.3	86.5
15	의약품·농약 제조업(화학공업)	5.5	9.0	61.1
16	비료 제조업	8.3	9.6	86.5
17	무기공업제품 제조업	6.2	7.9	78.5
18	유기공업제품 제조업	6.4	8.3	77.1
19	화학섬유 제조업	6.0	7.8	76.9
20	유지가공제품 제조업	7.3	7.8	93.6
21	화약류 제조업	6.0	6.5	92.3
22	도료·염료 등 제조업	6.5	9.1	71.4
23	기타의 화학공업	7.6	8.4	90.5
24	석유제품·석탄제품 제조업	7.8	10.2	76.5
25	고무제품 제조업	7.7	9.8	78.6
26	제혁·혁제품 제조업	8.0	9.3	86.0
27	요업·토석제품 제조업	8.0	9.3	86.0
28	삼유공업	7.9	10.1	78.2
29	목재·목제품 제조업	8.0	8.6	93.0
30	펄프지·지가공제품 제조업	8.8	10.6	83.0
31	인쇄·제본 출판업	7.3	8.9	82.0
32	식품 제조업	9.1	10.2	89.2
33	기타의 제조	8.1	9.6	84.4
34	건설업	4.7	5.7	82.5
35	운수통신업	7.8	9.2	84.8
36	전기업	15.3	16.8	91.1
37	가스업	12.2	13.3	91.8
38	서비스업	5.8	7.6	76.3
39	수산업	7.6	-	-
40	기타 사업	10.5	12.5	84.0
	平均 耐用年數	7.97	9.66	82.5

〈表 IV-5〉 機械裝置 以外の 有形固定資産의 韓·日比較

(單位: 年, %)

資産의 區分	韓國 (A)	日本 (B)	A/B
1. 建物	33.76	31.09	108.6
2. 建物附屬設備	13.13	13.63	96.3
3. 構築物	27.11	30.68	88.4
4. 車輛 및 運搬具	27.32	31.28	87.3
5. 工具	3.25	4.50	72.2
6. 器具 및 備品	6.24	6.64	94.0
7. 船舶	11.38	8.25	137.9
8. 航空機	4.40	5.00	88.0
總平均 耐用年數	20.14	20.79	96.6

## 2. 資産區分의 國際比較

〈表 IV-6〉은 우리나라와 日本의 機械裝置 외 固定資産에 대한 분류를 비교한 結果이다. 日本에서 분류하는 體系가 韓國과 비교하여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資産에서 더욱 세밀한 분류를 보여준다. 全體 合計를 통하여 비교를 하면 韓國의 경우는 274개의 資産으로 구분된 반면, 日本은 347개의 資産으로 구분하고 있다.

〈表 IV-7〉은 業種別로 稅法上의 機械裝置 分類를 韓國과 日本에 대해 비교한 結果이다. 韓國의 資産分類가 대부분의 業種에서 日本보다 적게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機械裝置의 資産分類를 합산하여 비교하면, 韓國의 경우 317개 機械裝置 種類로 나눈 반면, 日本은 499개로 분류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美國과 日本은 減價償却制度에 대한 視角이

전혀 다른 觀點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稅法上 耐用年數의 적용에 있어서도 美國의 경우는 대략적인 구분만 있을 뿐인 반면, 日本은 개개 資産의 特性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매우 세밀하게 資産을 구분하였다. <表 IV-8>은 우리나라와 日本, 美國의 資産區分을 간단하게 요약한 結果이다. 韓國은 총 591개 資産으로 區分한 반면, 日本은 846개 資産으로 區分되어 있고, 美國은 8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資産分類는 日本과 美國의 중간단계에 있으나, 基本的인 方向은 日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sup>6)</sup>.

<表 IV-6> 機械裝置 以外 資産分類의 韓·日比較

産業區分	韓國	日本
1. 建物	60	81
2. 建物附屬設備	9	15
3. 構築物	88	119
4. 車輛 및 運搬具	23	33
5. 工具	4	12
6. 器具 및 備品	70	77
7. 船舶	15	9
8. 航空機	5	1
合計	274	347

6) 우리나라에서 稅法上 耐用年數의 資産區分에 대한 具體的인 根據는 알 수 없다. 그러나 日本의 體系를 模倣한 흔적을 많이 볼 수 있으므로 日本의 區分을 根據로 만들어졌다고 생각된다.

〈表 IV-7〉業種別 稅法上 機械裝置 分類의 韓·日比較

番 號	事 業 別	韓 國	日 本
1	금속광업	1	1
2	비금속광업	2	2
3	석면광업	1	1
4	석탄광업	1	3
5	석유광업	3	10
6	철강업	13	21
7	비철금속 제조업	7	8
8	금속제품 제조업	10	19
9	기계제조업	10	22
10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0	10
11	수송용기계 제조업	8	14
12	계량기·측정기·측량기계·의료기기·광학기계 제조업	4	6
13	무기 제조업	2	3
14	기타의 기계류 제조업	2	4
15	의약품·농약 제조업(화학공업)	2	3
16	비료제조업	4	5
17	무기공업제품 제조업	13	36
18	유기공업제품 제조업	18	31
19	화학섬유 제조업	3	4
20	유지가공제품 제조업	3	5
21	화약류 제조업	1	2
22	도료·염료 등 제조업	4	11
23	기타의 화학공업	11	10
24	석유제품·석탄제품 제조업	4	6
25	고무제품 제조업	3	6
26	제혁·혁제품 제조업	2	3
27	요업·토석제품 제조업	24	47
28	섬유공업	20	25
29	목재·목제품 제조업	3	8
30	펄프지·지가공제품 제조업	6	11
31	인쇄·제본 출판업	6	8
32	식품 제조업	36	47
33	기타의 제조	21	44
34	건설업	7	7
35	운수통신업	10	17
36	전기업	8	10
37	가스업	6	7
38	서비스업	18	20
39	수산업	8	-
40	기타 사업	2	2
	합 계	317	499

〈表 IV-8〉 資産區分の 國際比較

(單位: 個)

國 名	機械裝置外 資産	機 械 裝 置	合 計
韓 國	274	317	591
日 本	347	499	846
美 國	-	-	8

### 3. 殘存價額의 國際比較

有形資産은 일정기간 耐用年數가 지난 후에는 生産目的으로 사용 할 수 없게 되며 이때 남아있는 價値가 殘存價額이 된다. 殘存價額은 나라별로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殘存價額이 높게 정해지면 그만큼 減價償却額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企業의 稅負擔은 늘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殘存價額의 설정은 企業의 稅負擔을 결정하는 중요한 政策變數가 된다. 〈表 IV-9〉는 殘存價額에 대해서 韓國, 日本, 美國을 비교한 結果이다. 韓國의 殘存價額은 取得原價의 10%로 日本의 5%와 美國의 0%에 비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sup>7)</sup>. 그러므로 韓國의 企業은 取得原價의 10%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殘存價額에 대한 관점에서는 日本과 美國에 비해 稅負擔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表 IV-9〉 殘存價額의 國際比較

(單位: %)

	韓 國	日 本	美 國
殘 存 價 額	10	5	0

7) 獨逸은 日本과 減價償却政策을 보는 視角이 같으나 殘存價額은 1마르크만을 許容하여 日本과는 다르다.

## 4. 減價償却方法의 國際比較

〈表 IV-10〉은 韓國, 日本, 美國의 減價償却方法을 비교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日本은 減價償却方法으로 定率法과 定額法을 모두 허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定率法을 사용하고 있다<sup>8)</sup>. 그러나 美國의 경우는 二重遞減法(200% declining balance method) 및 年數合計法(sum-of-years'-digits method)같은 加速償却을 사용하고 있다<sup>9)</sup>.

韓國과 日本의 定率法과 美國의 加速償却方法을 비교함<sup>10)</sup>에 있어서 減價償却方法만을 독립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定率法 減價償却方法은 반드시 殘存價額이 존재하여야 하나, 加速償却 方法에는 殘存價額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減價償却方法의 國際比較는 減價償却方法뿐 아니라 殘存價額도 고려한 비교여야 한다.

〈表 IV-10〉 減價償却方法의 國際比較

	韓國	日本	美國
減價償却方法	定率法, 定額法	定率法, 定額法	二重遞減法, 年數合計法

美國의 耐用年數가 우리나라에 비해 짧지만 減價償却方法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 같은 耐用年數에 대해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를

- 8) 獨逸의 減價償却 方法은 定額法과 三重遞減法 중에서 選擇할 수 있게 하였다. 三重遞減法을 使用할 境遇는 最高 30%를 超過할 수 없도록 하였다.
- 9) 二重遞減法은 定額法과 같은 計算方法을 사용하고 定額法 償却額의 두 배에 해당하는 比率를 사용하므로 定率法과 같은 效果를 가진다. 즉 計算方法은 定額法에서 유도되나 실제 使用面에서는 定率法과 같다.
- 10) 韓國과 日本의 경우 減價償却方法으로 定率法과 定額法을 허용하고 있으나 定率法이 初期投資에 대한 控除額이 크므로 대부분 定率法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定率法만을 比較對象으로 한다.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機械裝置의 平均 耐用年數를 8년으로 가정하고, 8년 資産에 대해 定率法 減價償却方法과 美國에서 사용하는 二重遞減法 및 年數合計法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計算結果는 <表 IV-11>과 같다. 定率法 減價償却方法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殘存價額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세 가지 形態에 대해 분석해 본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10% 殘存價額과 日本의 5% 殘存價額 및 가장 낮은 殘存價額 1%에 대해 定率法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를 구한다.

<表 IV-11> 減價償却方法의 比較

年數	定率法			二重遞減法	年數合計法
	10% 殘價率	5% 殘價率	1% 殘價率		
1년	0.2501	0.3123	0.4377	0.2500	0.2222
2년	0.1876	0.2148	0.2461	0.1875	0.1944
3년	0.1406	0.1477	0.1384	0.1406	0.1667
4년	0.1055	0.1016	0.0778	0.1055	0.1389
5년	0.0791	0.0699	0.0438	0.0791	0.1111
6년	0.0593	0.0480	0.0246	0.0593	0.0833
7년	0.0445	0.0330	0.0138	0.0445	0.0556
8년	0.0334	0.0227	0.0078	0.0334	0.0278
現在價値	0.7492	0.8138	0.8912	0.7490	0.8143

定率法 減價償却方法에서 10% 殘存價額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0.7492로 二重遞減法의 0.7490과 거의 같은 水準을 보여 준다. 반면 日本에서처럼 5% 殘存價額에 대한 定率法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는 0.8138로 二重遞減法보다 높은 數値를 보여준다<sup>11)</sup>. 年數合計法의 경우는 0.8143으로 가장 높은 減價償却의 現在價値를 보여

11) 참고로 定額法을 사용할 경우 10% 殘存價額下에서는 0.6602의 現在價値를 가지고, 殘存價額이 없을 때는 0.7336의 現在價値를 가진다.

준다. 美國에서는 1980년까지는 年數合計法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二重遞減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美國의 二重遞減法과 우리나라의 定率法을 비교할 때 減價償却 許容額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비교는 殘存價額을 동시에 고려한 비교이므로 減價償却方法에 대한 독립적인 비교는 할 수 없다. 최소한의 殘存價額을 1%로 했을 때의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는 0.89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5. 其他 事項

一定 水準 以下の 資産은 減價償却額이 크지 않으므로 即時 全額 費用處理를 하여 會計節次를 간편하게 허용하고 있다. <表 IV-12>는 이러한 即時償却을 할 수 있는 資産의 限度額을 비교한 結果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30萬원 이하의 資産에 대해서는 即時償却을 허용하고 있다. 日本의 限度額은 약 160萬원으로서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sup>12)</sup>. 그러나 日本의 物價水準과 經濟規模를 고려할 때 이 限度額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반면 美國은 稅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限度額이 없으며, 企業에서 자체적으로 即時償却 限度額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稅法에서도 이를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美國에서는 企業會計의 결정을 稅務會計에서 최대한 허용해주고 있다.

<表 IV-12> 即時償却 限度額의 國際比較

	韓 國	日 本	美 國
限 度 額	30만원	약 160만원	없음

12) 獨逸의 限度額은 800마르크로서 약 40만원 정도이다. 그러므로 獨逸은 即時償却 該當資産을 매우 낮게 許容하고 있다.

減價償却額은 매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당해의 減價償却 水準이 결정된다. 그러나 減價償却을 매년 의무적으로 稅務會計에 반영하게 하지 않으면 年度別로 減價償却額을 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日本은 減價償却을 강제하지 않는 任意償却制度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美國은 일정한 규칙을 세워두고 그 규칙대로 減價償却을 하여야 하는 일종의 強制償却으로 볼 수 있다. 減價償却의 任意性 여부는 企業의 稅負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缺損金 移越控除를 허용하는 기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韓國과 日本은 任意償却制이므로 缺損金移越控除가 5년으로 비교적 짧은 반면, 美國은 強制償却을 사용하므로 이에 따른 缺損金을 15년간 移越控除할 수 있다. 그러므로 強制償却으로 인해 缺損을 보는 企業에 強制償却制度가 가지는 問題點을 해결하고 있다<sup>13)</sup>.

〈表 IV-13〉 減價償却의 任意性 與否

	韓 國	日 本	美 國
償却 任意性	任意償却	任意償却	強制償却
缺損金 移越控除	5年	5年	15年

## 6. 機械裝置에 대한 減價償却制度의 國際比較

以上에서는 減價償却制度를 이루는 요소들을 하나씩 國際間 比較

13) 獨逸은 強制償却을 施行하고 있으며 缺損金 移越控除에 대한 期間制限이 없다. 반면 美國은 企業의 決定을 최대한 稅務會計에서 許容하므로 任意償却制度에 가까우며, 缺損金 移越控除에 대한 期間制限도 없어 매우 관대한 減價償却制度를 運營하고 있다.

하였다. 그러나 減價償却制度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耐用年數, 殘存價額, 減價償却方法을 모두 고려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減價償却制度를 종합적으로 國際比較하기 위해서는 特定基準을 선정하여야 한다. 機械裝置에 대한 減價償却은 企業의 投資程度와 밀접한 關聯을 가지므로 有形資産 중에서 機械裝置에 대한 減價償却制度를 비교하여 본다. <表 IV-14>는 機械裝置에 대한 減價償却制度를 國際比較한 結果이다. 우리나라의 機械裝置에 대한 耐用年數는 평균 8.07년이나, 日本은 9.59년으로 길게 나타났다. 반면 美國은 대부분의 機械裝置가 5년에 속하므로 韓國과 日本에 비해 월등히 낮게 나타났다.

<表 IV-14> 機械裝置에 대한 減價償却制度의 國際比較

(單位: 年, 個, %)

區分	韓國	日本	美國
耐用年數	8.07	9.59	5
資産區分	317	499	5
殘存價額	10	5	0
減價償却方法	定額法, 定率法	定額法, 定率法	二重遞減法

機械裝置에 대한 세 나라의 減價償却制度를 특정 機械裝置에 적용한 減價償却額을 現在價値로 환산하여 比較하여 본다. 이때 耐用年數는 계산의 편의상 韓國은 8년, 日本은 10년이라 하고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를 통하여 各國의 減價償却制度를 分析한다<sup>14)</sup>. 韓國과 日本의 減價償却方法은 定額法과 定率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므로 定率法을 사용하여 分析한다.

<表 IV-15>는 機械裝置의 單位投資額에 대한 減價償却 形態와 減價償却額의 現在價額을 보여준다. 機械裝置에 대해 單位價格을 투자한 경우 전체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는 우리나라가 0.7492, 日本이

14) 韓國이 8년, 日本이 10년인 機械裝置로 金屬製品 製造業의 金屬機械·工具 및 道具類 製造設備를 들 수 있다.

〈表 IV-15〉 減價償却額 現在價値의 國際比較

年數	韓國	日本	美國
1	0.2501	0.2589	0.4000
2	0.1876	0.1919	0.2400
3	0.1406	0.1422	0.1440
4	0.1055	0.1054	0.0864
5	0.0791	0.0781	0.0518
6	0.0593	0.0579	—
7	0.0445	0.0429	—
8	0.0334	0.0318	—
9	—	0.0236	—
10	—	0.0175	—
現在價値	0.7492	0.7782	0.8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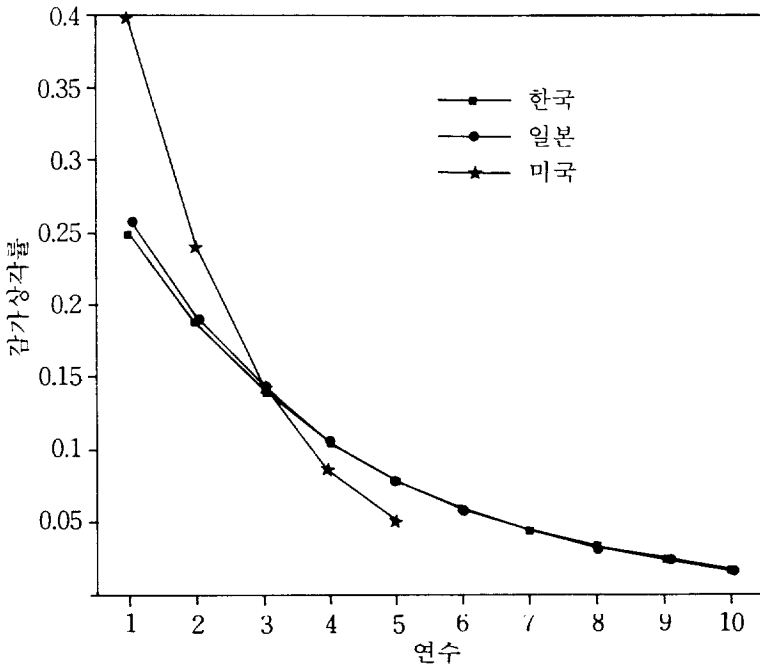
註: 現在價値를 구하기 위해 사용한 이자율은 10%임.

0.7782, 美國이 0.8375로 나타나 美國의 減價償却制度는 減價償却額을 가장 관대하게 허용하고 있다<sup>15)</sup>. 따라서 美國의 경우는 單位價格을 機械裝置에 투자하였을 때 0.8375가 減價償却을 통한 費用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日本과 비슷한 制度를 가미하고 있지만 殘存價格이 10%로 높아 減價償却額을 통한 費用控除는 오히려 日本에 못 미치는 結果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結果는 하나의 例 혹은 대략적인 資料를 토대로 이루어진 結果에 불과하므로 機械裝置에 대한 전체적인 資產構造를 통한 分析이 이루어져야 한다. [圖 IV-1]은 〈表 IV-15〉의 減價償却 形態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美國의 減價償却 形態는 우리나라나 日本의 形態와는 차이가 많으며, 3년 동안에 減價償却 許容額이 우리나라와 日本에 비해

15) 이는 利率을 모두 10%로 假定하고 計算한 缺課이다. 그러나 美國과 日本이 우리나라에 비해 利率이 훨씬 낮은 현실을 勘案할 때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의 差異가 더욱 큼은 쉽게 豫想할 수 있다.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日本은 減價償却 形態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사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日本의 減價償却額 現在價値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이유는 殘存價額의 차이가 耐用年數의 차이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分析된다.

[圖 IV-1] 機械裝置 減價償却의 國際比較



## V. 減價償却의 特性과 政策方向

### 1. 減價償却의 內生的 特性

일반적으로 減價償却은 經濟 및 經濟外的 環境과는 무관한 母數(parameter)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資本과 關聯된 대부분의 研究에서 減價償却은 母數로 고려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研究로는 Hall과 Jorgenson(1967, 1969)에서 보여주는 新古典 投資理論(neoclassical investment theory)을 들 수 있다. 그러나 減價償却에 대해 전혀 다른 視角을 가진 學者들이 있다. 즉 減價償却은 經濟變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변화하는 內生的 特性을 가진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研究로는 Feldstein과 Rothschild(1974)와 Feldstein(1983)을 들 수 있다. 그들은 減價償却이 內生的 性格을 가지므로 이를 무시한 分析은 사실을 誤導하는 結果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減價償却의 內生的 特性을 분석한 많은 研究가 進行되었다.

減價償却의 內生的 特性을 분석한 이론적 研究를 먼저 살펴본다. Abel(1981)과 Auerbach(1979)는 減價償却을 企業이 利潤을 極大化하기 위해 결정하여야 할 선택변수(choice variable)로서 고려하고 있고, 따라서 인플레이의 변화에 따른 減價償却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Taubman과 Wilkinson(1970)은 企業이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이론적 모형하에서 利率과 減價償却은 서로 상반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Baumol(1986)은 社會的인 觀點에서 最適의 減價償却에

대한 分析을 시도하였으며, 그 結果 減價償却은 技術開發, 인플레이, 資產 維持·管理 形態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租稅政策의 變化가 減價償却에 미치는 影響을 분석한 이론적 研究로는 Feldstein과 Rothschild(1974), Schworm(1979), Oliner(1985)를 들 수 있다. Feldstein과 Rothschild(1974)는 企業이 資本費用을 極小化한다는 假定下에 企業의 稅負擔을 완화하는 租稅政策은 減價償却率을 크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Schworm(1979)은 企業이 利潤을 極大化한다는 理論的 模型을 사용하여 租稅政策이 減價償却率에 미치는 影響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Oliner(1985)는 生産費用을 極小化한다는 假定下에서 企業의 稅負擔을 완화할 수 있는 租稅政策은 減價償却率을 작게 한다는 結果를 보여주었다. 이들 세 가지 研究들은 租稅政策이 減價償却에 미치는 影響에 대해 서로 다른 結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들 研究는 減價償却에 대한 內生的 特性을 租稅政策의 變化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는 데에 共通點이 있다.

減價償却의 內生的 特性에 관한 研究와 같은 맥락으로 資產의 經濟的 耐用年數에 대한 內生的 特性을 분석한 研究들이 있다. Taubman과 Rasche(1971)는 經濟的 耐用年數가 여러 가지 資產들의 相對的 價格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Cox(1975)는 비행기의 耐用年數가 技術 및 經濟的 變數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비행기의 耐用年數는 技術이 進步하거나 燃料價格이 상승하면 짧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研究들은 減價償却의 內生的 特性에 대한 理論的 研究들이었다. 減價償却의 內生的 特性을 實證的으로 규명하려는 관심은 지대하였으나, 實證分析 研究結果는 理論的 研究에 비해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 이유는 減價償却을 측정하기 위한 資產에 대한 時系列 資料의 收集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減價償却의 內生的 特性에 대한 實證的 分析으로서 Feldstein과 Foot(1971)는 資本에 대한 巨視資

料(1949~1968)를 사용하여 代替投資(replacement investment)의 행태를 分析하였다. 즉 대체투자는 自己資金의 程度와 資本 使用率과는 陽의 關係가 있고, 投資程度와는 陰의 關係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Bitro와 Kelejian(1974)은 美國의 電氣産業에 대한 巨視資料(1946~1971)를 사용하여 이 關係를 分析한 결과, 代替投資는 總 投資規模와는 陽의 關係가 있고, 管理費用과 利子率과는 陰의 關係가 있음을 밝혔다.

減價償却의 內生的 特性을 分析하는 데 巨視資料가 대부분 사용되었다. 그러나 微視資料의 사용이 Hulten과 Wykoff(1981a, 1981b)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資産의 減價償却을 分析하는 데 더욱 精교한 계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微視資料를 사용하여 減價償却의 內生的 特性을 分析한 研究를 살펴보면 Hulten과 Wykoff(1981a)와 Hulten 외(1987)를 들 수 있다. Hulten과 Wykoff(1981a)는 建物の 減價償却率을 매년 추정하고 이 推定值의 安定性을 統計的으로 調査한 結果, 建物の 減價償却率은 時間 經過에 影響을 받지 않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주었다. Hulten 외(1987)는 機械裝備와 建設裝備의 9개 資産을 사용하여 1970년대의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減價償却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하였으나 統計的으로 有意的인 수준의 結果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減價償却의 內生的 特性에 대한 實證的 分析結果를 요약하면 <表 V-1>과 같다.

減價償却의 內生的 特性에 대한 이상의 理論的 및 實證的 研究들은 모두 美國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結果들이다. 우리나라에서 減價償却의 內生的 特性을 分析한 研究는 매우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減價償却의 內生的 特性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理論 및 實證的 資産關聯 研究들은 減價償却을 母數로 고려하여 分析하였다. 대표적인 理論 研究로 郭泰元(1985), 尹建永(1988), 尹建永과 林周瑩(1993)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研究는 新古典 投資理論을 바탕으로 減價償却率을 母數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表 V-1〉 內生的 減價償却 特性에 대한 實證分析의 要約

研究名	說明變數	效果
Feldstein과 Foot(1971)	自己資本의 程度	+
	資本使用의 程度	+
	投資의 規模	-
Bitro와 Kelejian(1974)	總 投資의 規模	+
	管理費用	-
	利子率	-
Hulten과 Wykoff(1981a)	時間的 變化	?
Hulten 외(1987)	에너지 價格	?

減價償却과 有關한 代表적인 實證的인 資産研究로는 Pyo(1988, 1992)를 들 수 있으며, 이 研究는 減價償却을 母數로 假定하여 측정하였다. 반면 金峻永과 具東鉉(1992)은 實證的 規程없이 減價償却을 內生的으로 假定하고 매년 다른 減價償却率을 자본스톡에 對한 巨視 資料를 使用하여 分析하였다. 우리나라에서 減價償却의 內生的 特性을 實證的으로 分析한 研究는 玄鎭權(1993)을 들 수 있다. 이 研究는 中古 交通資産에 對한 市場價格의 微視資料를 使用하여 減價償却率을 1992년과 1993년을 對象으로 各各 추정하고 兩 시점간 減價償却率의 差異를 統計的으로 검증하였다. 그 結果 兩 시점간 交通資産의 減價償却率은 統計的으로 有意한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減價償却의 內生的 特性을 規程하였다. 그러나 이 研究에서 分析한 對象은 三 가지 交通資産이므로 減價償却率의 內生的 特性을 一般的으로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以上의 文獻을 통해 알 수 있듯이 減價償却의 內生的 特性에 對한 關心은 매우 높으며, 이러한 特性을 精確히 規程하기에는 좀더 많은 實證的 研究結果가 필요하다. 減價償却의 內生的 特性은 新古典 投

資理論 등에서 아직은 고려되지 않지만, 減價償却은 資産 關聯 研究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減價償却의 內生的 特性에 대한 關心은 차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減價償却은 經濟 및 經濟 外的 要因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母數가 아닌, 이들 變化에 따라 體系的으로 변화하는 內生的 特性을 가질 수도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 2. 經濟的 減價償却과 稅法上 減價償却과의 關係

稅法上 減價償却을 經濟的 減價償却에 일치시키느냐 아니냐 하는 問題는 減價償却 制度에 대한 視角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서는 現在의 稅法上 減價償却이 經濟的 減價償却과 어느 정도 가까운가에 대한 實證的 調査를 시도한다. 여기서는 稅法上 減價償却과 經濟的 減價償却을 비교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減價償却率을 사용하여 비교하는데, 經濟的 耐用年數에 대한 實證的 分析이 없으므로 經濟的 減價償却率을 사용하여 비교한다. 現在 經濟的 減價償却率에 대한 實證的 研究로 玄鎮權(1993)을 들 수 있으며 몇 개의 交通資産에 대해서만 稅法上 減價償却率과 비교할 수 있다.

〈表 V-2〉 交通資産에 대한 經濟的 및 稅法上 減價償却率의 比較

(單位: %, 倍)

	트럭	버스	승용차
經濟的 減價償却率 (A)	22.03	25.87	26.71
稅法上 減價償却率 (B)	43.8	36.9	43.77
減價償却率의 比較 (B/A)	1.99	1.43	1.64

資料: 玄鎮權(1993)

〈表 V-2〉는 두 가지 交通資産에 대한 經濟的 減價償却率과 稅

(表 V-3) 稅法上 및 經濟的 減價償却率의 比較

資 産 의 區 分	美 國		韓 國	比 較	
	經濟的 減價償却率 (A)	稅法上 減價償却率 (B)	稅法上 減價償却率 (C)	(B/A)	(C/A)
1. 가구 및 내부시설	0.11	0.6020	0.2783	5.47	2.53
2. 조립금속제품	0.0917	0.6020	0.3094	6.56	3.37
3. 엔진 및 터빈	0.0786	0.6020	-	7.65	-
4. 트랙터	0.1633	0.6020	-	3.68	-
5. 농업용기계	0.0971	0.6020	0.3690	6.19	3.80
6. 건설용기계	0.1722	0.6020	0.3867	3.49	2.24
7. 광산 및 유전용기계	0.165	0.6020	0.2945	3.64	1.78
8. 금속가공용기계	0.1225	0.6020	0.2488	4.91	2.03
9. 특수산업용기계	0.1031	0.6020	0.2472	5.83	2.39
10. 일반산업용기계	0.1225	0.6020	0.2585	4.91	2.11
11.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	0.2729	0.6020	0.3492	2.20	1.27
12. 서비스산업용기계	0.165	0.6020	0.3218	3.64	1.95
13. 전기·통신장비	0.1179	0.6020	0.3578	5.10	3.03
14. 트럭, 버스, 트레일러	0.2537	0.6020	0.4377	2.37	1.72
15. 승용차	0.3333	0.6020	0.4377	1.80	1.31
16. 비행기	0.1833	0.6020	0.4074	3.28	2.22
17. 선박 및 보트	0.075	0.6020	0.2090	8.02	2.78
18. 철도장비	0.066	0.6020	0.0981	9.12	1.48
19. 기구	0.1473	0.6020	0.3482	4.08	2.36
20. 기타 장비	0.1473	0.6020	0.2398	4.08	1.62
21. 공업용건물	0.0361	0.2640	0.0975	7.31	2.70
22. 상업용건물	0.0247	0.2640	0.0588	10.68	2.38
23. 사찰(교회)용건물	0.0188	0.2640	0.0571	14.04	3.03
24. 교육용건물	0.0188	0.2640	0.0594	14.04	3.15
25. 의료용건물	0.0233	0.2640	0.0594	11.33	2.54
26. 기타 비농업용건물	0.0454	0.2640	0.1746	5.81	3.84
27. 공공재	0.0316	0.2640	0.0910	8.35	2.87
32. 농장	0.0237	0.3690	0.2501	15.56	10.55
33. 채광, 탐사, 갱도, 유정	0.0563	0.6020	-	10.69	-
34. 기타	0.029	0.2640	0.1136	9.10	3.91
평 균				6.77	2.78

註: 經濟的 減價償却率은 Hulten and Wykoff(1981a) 연구 결과를 사용하였음.

法上 減價償却率을 비교한 結果이다. 여기서 비교한 數値는 定率法을 근거로 하여 구하였으며 稅法上 減價償却率은 殘存價額과 稅法上 耐用年數를 사용하여 구하였다<sup>1)</sup>. 트럭의 稅法上 減價償却은 經濟的 減價償却의 1.99배를 나타내고, 버스는 1.43배, 승용차는 1.38배 높게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經濟的 減價償却率과 稅法上 減價償却率을 비교할 수 있는 資産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는 資産別로 經濟的 減價償却率에 대한 實證的 結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美國의 경우 資産別 經濟的 減價償却率에 대한 綜合的인 實證研究 結果가 있으므로 이 결과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稅法上 減價償却率과 비교한다. 美國의 Hulten과 Wykoff(1981a, 1981b) 研究는 中古資産의 市場價格 資料를 사용하여 資産別 經濟的 減價償却率을 推定하였으며, 이 研究結果는 대부분의 資本關聯 研究의 基礎資料로써 활용되고 있다<sup>2)</sup>.

〈表 V-3〉은 Hulten과 Wykoff가 추정한 資産別 經濟的 減價償却率과 美國의 稅法上 減價償却率을 우리나라의 稅法上 減價償却率과 비교한 結果이다. 美國의 경우에 平均的으로 稅法上 減價償却率이 經濟的 減價償却率의 6.77배를 보여준다<sup>3)</sup>. 우리나라의 경우 資産別 經濟的 減價償却率이 美國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稅法上 減價償却率은 經濟的 減價償却率의 2.78배를 平均的으로 보여준다. 以上의 結果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稅法上 減價償却率은 經濟的 減價償却率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 1) 즉 定率法의 減價償却率 =  $1 - (\text{殘存價値率})^{1/n}$ , 여기서 n은 耐用年數를 의미한다.
  - 2) Hulten과 Wykoff 研究 以前에는 Bureau of Economic Analysis(BEA)의 研究結果를 使用하였다. BEA 연구는 스톡자료를 사용하여 推計하였으므로 個別 資産에 따른 結果는 구할 수 없다.
  - 3) 美國의 資産別 稅法上 減價償却率은 稅法上 耐用年數와 殘存價額이 1%일 境遇에 定率法으로 換算한 값이다. 美國의 實際 稅法上 減價償却率은 加速償却을 따르므로 하나의 數値로 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본 표에서 보여주는 經濟的 減價償却率보다는 큰 값을 가짐을 豫想할 수 있다.

### 3. 減價償却 政策方向의 考察

減價償却 政策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方向은 企業이 소유한 資産의 減價償却 形態를 정확히 稅法에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는 실제의 減價償却 形態와는 관계없이 政府에서 減價償却制度를 經濟政策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政策方向은 서로 상반된 것이며 어느 政策方向이 옳으나 하는 問題는 市場經濟에서 政府의 役割에 대한 價値判斷에 의해 결정된다. 즉 市場經濟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政府의 介入이 不必要하다는 立場에서는 減價償却의 現實을 정확히 반영하는 減價償却 政策이 합리적이다. 반면 市場失敗(market failure) 등으로 인해 政府가 市場經濟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政策方向이 달라질 것이다. 즉, 企業의 投資活性化를 위한 수단으로 減價償却 額을 실제 이상으로 허용함으로써 稅負擔을 줄이는 方向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의 減價償却 形態와 일치하지 않고 政府에서 任意로 減價償却 額을 조정할 수 있다.

올바른 減價償却 政策은 市場經濟에 대한 價値判斷을 근거로 이루어지므로 一律의인 方向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問題는 각각의 方向이 주는 社會的 費用과 便益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現 經濟環境에서는 어떠한 政策方向이 社會的 費用을 極小化하고 社會的 效用을 極大化할 수 있는가에 대한 論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合理的 減價償却의 政策方向에 대한 討論의 前段階로서 政策方向 각각의 效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減價償却 政策方向에 대한 本質을 비교적 간단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안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減價償却 政策을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상반된 方向으로 나누어 各案의 效果를 살펴본다. 두 가지의 單純化한 政策方向은 다음과 같으며 편의상 “中立的 政策”과 “手

段的 政策”으로 명한다.

- 中立的 政策: 減價償却의 形態를 現實과 일치시키는 方向
- 手段的 政策: 減價償却을 經濟政策의 한 手段으로 사용하는 方向

#### 가. 中立的 減價償却 政策

中立的 減價償却 政策은 稅法上 減價償却制度를 企業의 실제 減價償却 形態와 일치시키는 方向이다. 이러한 中立的 減價償却 政策이 가지는 特性을 살펴보면 첫째, 稅政當局과 納稅者間的 意見 不一致로 인한 行政費用 및 社會費用이 증가하게 된다. 中立的 減價償却 政策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企業이 사용하는 資産의 실제 減價償却 形態에 대한 完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만약 中立的 減價償却 政策을 수립하면서 資産別 實際 減價償却 形態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稅法이 立案되었다고 가정하자. 이때 資産을 사용하는 企業들은 그 資産의 實際 耐用年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耐用年數와 크게 다른 稅法上的 耐用年數에 많은 불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中立的 減價償却 政策方向은 높은 行政費用과 社會費用을 수반하게 된다. 둘째, 中立的 減價償却 政策方向은 減價償却制度를 매우 복잡하게 만든다. 資産別 實際 減價償却의 特性을 제각기 반영하기 위해서는 耐用年數를 資産別로 具體的으로 명시하여야 하므로 減價償却 關聯 制度가 복잡해 질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中立的 減價償却 政策方向을 실행하는 데 따른 問題點을 하나씩 생각해 보기로 한다.

### (1) 中立的 減價償却에 대한 基準設定의 問題

中立的 減價償却은 實際 減價償却 形態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실제 減價償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一般的으로 資産別 經濟的 減價償却을 바탕으로 稅法上 減價償却을 立案하는 것이 中立的일 수 있다. 그러나 技術開發이 빠른 現代 社會에서 保有資産만으로는 最新技術을 도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技術開發의 速度에 따른 資産의 減價償却 形態는 經濟的 減價償却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形態의 減價償却을 技術的 減價償却(technology depreciation)이라 하며 대표적으로 半導體 産業에서 사용하는 資産을 들 수 있다. 問題는 中立的인 減價償却 政策이 이러한 技術的 減價償却을 고려하여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모든 企業이 技術開發에 민감하여 실제로 技術的 減價償却을 하는 상태이면 中立的 減價償却 政策은 技術的 減價償却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企業이 技術開發에 따른 技術的 減價償却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에 技術的 減價償却을 적용하면 中立的인 減價償却이 될 수 없다. 반대로 技術的 減價償却을 고려하지 않은 稅法은 技術導入에 적극적인 企業에게 中立的이 아니다. 또한 政府政策이 企業의 技術導入을 抑制하는 結果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企業에게 中立的인 減價償却制度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2) 中立的 減價償却 測定의 問題

中立的 減價償却 政策은 概念的으로는 단순한 制度이나 실제로 실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制度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中古 資産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資産別 中古資産의 價格資料가 없고,

따라서 資産別 經濟的 減價償却 形態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sup>4)</sup>. 이상적인 中立的 減價償却制度는 資産別 經濟的 減價償却 形態의 차이를 모두 반영하도록 資産을 세밀하게 나누어 耐用年數를 규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細分化한 資産別 經濟的 減價償却에 대한 정보는 우리나라의 現 狀況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한 中立的 減價償却 政策을 실시하기는 매우 어렵다.

### (3) 內生的 減價償却 特性의 考慮

中立的 減價償却 政策은 經濟的 減價償却을 技術 및 經濟環境에 관계없는 母數(parameter)로서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經濟的 減價償却은 經濟 및 經濟外的 環境에 따라 변화하는 內生的 特性을 가지고 있다. 그 해의 經濟 與件과 技術開發의 速度 등에 따라 經濟的 減價償却 形態는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資産別 減價償却을 일률적으로 稅法에서 규정하는 것은 經濟的 減價償却에 대한 特性을 고려하지 못한 政策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手段的 減價償却 政策

手段的 減價償却 政策은 減價償却制度를 經濟政策의 한 방편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政策은 美國에서는 1950년대 이후부터 歷史的으로 활발하게 사용되어 減價償却 政策에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sup>5)</sup>. 이에 따라 學界에서도 減價償却制度의 效果를 實證的으로 분석

4) 우리나라에서 比較的 中古去來가 있는 자산으로는 交通資産을 들 수 있다. 交通資産 資料를 사용한 經濟的 減價償却을 측정 한 연구로 玄鎮權(1993)이 있다.

5) 美國 減價償却 政策의 歷史的 變遷에 대한 具體的인 說明은 <부록 V>를 參照하기 바란다.

한 研究가 많이 시도되었다.

手段的 政策은 Jorgenson을 중심으로 한 新古典 投資理論(neoclassical investment theory)에서 理論的 및 實證的으로 오랫동안 개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郭泰元(1985), 尹建永과 林周瑩(1993)에서 부분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고, 金峻永과 具東鉉(1992)은 實證的인 結果를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手段的 減價償却 政策方向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手段的 減價償却의 政策方向은 실제 減價償却 形態와는 관계없이 企業의 減價償却 控除額을 실제 이상으로 인정함으로써 企業의 稅負擔을 줄여준다. 그러므로 企業은 稅負擔이 줄어드는 대신 정부에는 稅收의 減少를 가져다 준다. 手段的 減價償却 政策은 企業의 投資活性化를 위해 稅收의 감소를 費用으로 하는 政策方向이다.

手段的 減價償却 政策의 長點을 살펴보면 첫째, 이 정책은 資產의 실제 減價償却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政策方向에 따라 임의적으로 稅法이 이루어져서 세법이 대폭 간소화될 수 있다. 둘째, 실제의 減價償却 形態 이상으로 減價償却을 허용하므로 納稅者는 稅法에 만족할 것이므로 行政費用이 줄어든다. 반면 이러한 政策이 가지는 短點은 첫째, 資產의 實際 減價償却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減價償却 政策이 아니므로 특정 資產에 대한 선호를 야기하여 사회적 관점에서 資產配分의 歪曲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企業의 減價償却 控除額이 實際 減價償却額보다 커지므로 稅收의 減少를 초래한다.

#### 다. 減價償却 政策의 比較評價

위에서 논의한 두 가지 減價償却 政策方向은 評價하는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을 얻게 된다. 일반적으로 어떤 政策代案도 모든 기준을 만족시키지는 않는다. 각기 다른 기준들이 상충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政策代案을 평가할 때는 각 기준에 따라 政策代案을 評價하고 현재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 기준을 더 중요시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價値判斷이 우선되어야 한다. 각각의 政策代案을 평가하기는 비교적 쉽지만, 여러 가지 政策代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현실에 대한 가치판단이 主觀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먼저 두 가지 減價償却 政策方向에 대한 각 기준의 評價를 요약하면 <表 V-4>와 같다. 두 가지 減價償却 政策方向에 대해 다섯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가지 減價償却 政策方向이 모든 기준을 만족시키지는 않는다. 즉, 각 평가기준에 대해 서로 상반된 結果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減價償却 政策方向을 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 經濟 狀況에서 어떠한 기준을 더 중시하여야 하는가 하는 價値判斷이 필요하다.

<表 V-4> 減價償却 政策方向의 比較

基準	中立的方向	手段的方向
稅收	安定	減少
投資	中立的	活性化
資源配分	中立的	歪曲
制度	複雜	單純
行政費用	높음	낮음

표에서 보여주는 다섯 가지 기준 중에서 논의를 더욱 간단하게 하기 위해 두 가지 평가기준 즉 稅收規模와 投資를 중심으로 減價償却 政策方向을 논의해 보자. 稅收規模와 投資活性化는 서로 대치되는 기준이므로 減價償却 政策方向이란 稅收規模와 投資活性化 中에서 어떠한 측면을 중시하여야 하는가를 정하는 것이다. 즉 우리 경제가 稅收減少를 費用으로 投資活性化를 이루느냐, 혹은 投資 刺戟策을 쓰지 않고 안정적 稅收를 확보하느냐에 대한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물

른 이러한 接近法은 靜態的인 觀點이다. 動態的 觀點에서 본다면 投資活性化가 이루어지면 稅收基盤이 커지게 되고 세수는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效果는 長期的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短期的으로 可視化되기는 힘들 것이다.

## 라. 減價償却 政策方向의 討論

우리나라의 減價償却 政策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政策方向 중에서 中立的 政策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減價償却 制度를 經濟的 현실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만 접근하였지 經濟的 政策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우리나라의 現 經濟 環境을 비추어 볼 때 中立的 方向으로 갈 것이냐 手段的 方向으로 갈 것인가는 우리나라 經濟 現實과 減價償却 制度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 經濟는 企業의 國際 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한 多角度的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企業의 投資環境 조성을 위해 多角度的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다. 企業의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는 國家 經濟 成長을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90년대에 들어 企業의 투자설비는 매우 저조하였다. <表 V-5>는 1990년에서 1993년까지 설비투자에 대한 전년대비 成長率을 나타낸 것이다<sup>6)</sup>. 1992년부터 企業의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經濟的 및 經濟外的 方案들이 신중히 논의되고 있다. 企業의 投資活性化를 위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기계설비에 대한 가격이다. 즉 機械設備 價格의 하락을 통하여 企業의 投資需要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機械設備의 가격을 이루는 중요한 정책변수의 하나가 減價償却

6) 總 設備投資額은 1991년에 25兆원, 1992년에 24兆 8千億원 가량이다.

〈表 V-5〉設備投資에 대한 前年 對比 成長率

(單位: %)

	1990	1991	1992	1993	1994
1 分期	30.7	16.9	6.5	-6.2	20.2
2 分期	25.0	14.4	-0.1	-0.9	
3 分期	22.7	7.5	-3.3	5.5	
4 分期	20.0	9.9	-8.2	3.6	
年間	18.4	12.8	-0.8	-0.5	

資料: 韓國銀行(1993)

制度이다. 기존의 우리나라 減價償却制度를 企業의 設備投資 需要에 대한 觀點에서 手段으로 이용하는 視角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 IV 章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機械裝置의 투자분이 減價償却으로 公제받을 수 있는 비율이 美國과 日本에 비해 낮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는 우리나라 企業의 國際競爭力을 低下시키는 방향으로 減價償却制度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現行 減價償却制度는 企業에게 투자에 대한 費用回收를 높게 해주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 VI. 現行 減價償却制度의 問題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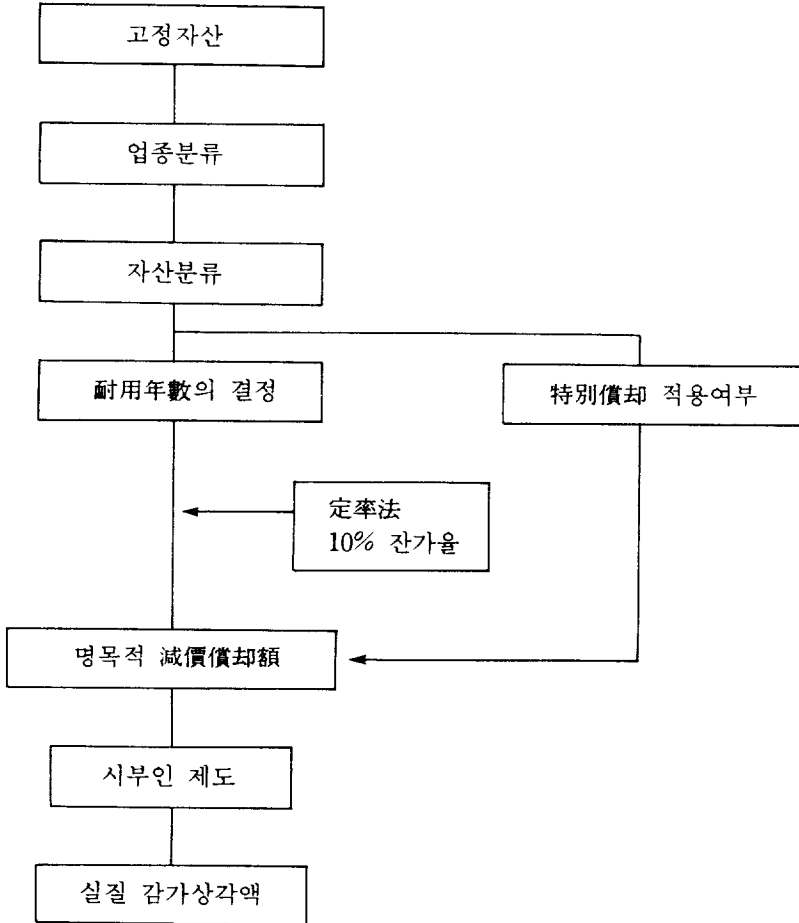
현행 減價償却制度를 개념적으로 單純化하여 도식화하면 [圖 VI-1]과 같다. 특정 固定資産에 대해 業種 및 資産分類를 하면 耐用年數가 결정된다. 이때 이 資産이 特別償却에 적용되는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定率法과 10% 殘價率을 적용하여 減價償却額을 결정한다. 이 章에서는 현행 減價償却制度가 가지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非科學的 政策 設定

우리나라의 減價償却方法에 대한 稅法 改正은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변함이 없다. 減價償却 政策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에 관계없이 政策 設定을 위한 基礎資料가 있어야 政策에 대한 效果를 구할 수 있다. 減價償却制度의 한 요소인 資産別 耐用年數의 결정에 관한 것도 각 資産의 實際 耐用年數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稅法上의 資産別 耐用年數는 실제의 耐用年數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이 임의적으로 정해진 흔적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sup>1)</sup>. 美國의 경우 ACRS

1) 우리나라의 稅法上 耐用年數는 基本的으로 日本을 그대로 模倣하였으나 資産別 細分化 程度는 日本보다 적다. 基本的인 骨格은 日本 것임에 반해 細分化는 모방하지 않았으므로 資産區分에 많은 行政的 어려움이 있다.

[圖 VI-1] 減價償却額의 決定過程



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資産別 經濟的 耐用年數에 대한 調査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稅法에 반영하였다. 우리나라 企業會計에서 허용하고 있는 資産別 耐用年數는 稅法上 耐用年數表나 韓國鑑定院에서 발간한 耐用年數表를 따르고 있다. 두 가지 耐用年數表가 우리나라 資産의 耐用年數를 결정하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불행히도 두 가지 자료 모두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稅法上

耐用年數表는 日本을 모방하였고, 韓國鑑定院의 耐用年數表는 美國 財務部에서 발간한 資産別 耐用年數 조사결과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企業의 減價償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직관에만 의존한 減價償却 政策은 설득력이 약하게 된다. 그러므로 資産別 耐用年數에 대한 정책은 企業에 주는 稅負擔 效果나 稅收減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非科學的 政策수립은 설득력이 약하고 일단 확정이 되면 經濟環境의 변화에 彈力的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폐단이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료의 확보없이 이루어진 비과학적인 減價償却 수립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基礎資料를 確保하기 위한 制度的인 裝置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 2. 複雜한 制度

현행 減價償却制度에 의해서 固定資産의 減價償却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즉 資産을 業種 및 資産別로 區分하고 減價償却도 一般償却과 特別償却으로 나누어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다단계를 거치는 制度는 美國과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편이다. 또한 특정 단계 내에서도 적용방법이 복잡하여 정책 집행자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복잡한 制度는 긍정적인 효과는 적은 반면 높은 行政費用과 協力費用을 유발시킨다.

### 가. 減價償却의 二元化 問題

현재 減價償却은 一般償却과 特別償却으로 나뉘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二元化 정책은 減價償却制度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一般償却이 業種·資産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特別償却은 業種別·資産別로 선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特別償却을 통한 선별적인 지원은 업종과 資産에 따른 資源配分の 效率性を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재 特別償却制度가 製造業을 지원하는 정도는 타업종에 비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特別償却의 業種別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발표된 자료가 없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 이를 개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앞장에서 보여준 전체 액수에서 業種別로 資産을 보유한 비율과 特別償却額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表 VI-1>은 전체 機械資産에 대한 業種別 보유비율과 一般償却額과 特別償却額을 전체 수준에서 業種別

(表 VI-1) 業種別 特別償却의 分布形態

(單位: %)

業 種	機械資産	一般償却額	特別償却額
	比率	比率	比率
어업	0.6	0.7	0.0
광업	0.5	0.6	0.9
제조업	60.6	64.3	52.8
전기 가스 및 중기업	6.1	7.6	15.7
건설업	1.9	2.8	8.1
도소매 숙박업	4.5	3.4	9.6
운수, 창고, 통신업	25.5	19.1	11.9
부동산, 사업 서비스업	0.2	0.2	0.6
오락 및 문화예술	0.2	0.3	0.4
합 計	100.0	100.0	100.0

로 차지한 비율을 비교한 結果이다. 제조업이 보유하고 있는 機械資產은 전체 기계자산의 60.6%를 차지하고, 전체 一般償却額의 64.3%를 차지하여 一般償却額의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特別償却은 52.8%로 제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비율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도·소매 및 숙박업의 경우는 보유한 기계자산이 전체의 4.5%를 차지하며 一般償却額은 3.4%로 一般償却額이 조금 낮은 비중을 보인다. 그러나 特別償却은 9.6%를 보여 特別償却制度가 제조업에 비해 도·소매, 숙박업에 지원효과가 오히려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만으로 特別償却의 業種別 지원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特別償却의 경우 法人稅法과 租稅減免規制法에서 각각 명시하고 있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法人稅法에서 허용하고 있는 特別償却은 일정시간 이상 사용한 資產에 대해 적용하므로 租稅減免規制法에서의 特別償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법인세법의 特別償却은 一般償却과 같은 성격이므로 구태여 特別償却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지는 再考해야 할 問題로 판단된다.

### 3. 非合理的인 制度

#### 가. 非現實的 耐用年數

經濟環境이 빠른 속도로 변함에 따라 資產의 經濟的 耐用年數는 단축되어가고 있다. 또한 기술발달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새로운 개념의 기술적 耐用年數를 稅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企業의 減價償却 實態調査에서 보여주었듯이 機械裝置의 경우 現行 稅法上 耐用年數가 실제 耐用年數보다 평균 1.22배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稅法上 耐用年數는 현실과 거리감을 가지게 되어 納稅者의 불만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稅法上 耐用年數는 企業으로 하여금 기술도입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 企業에게 신기술의 도입을 촉진시켜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므로 稅法上 耐用年數도 새로운 資産의 技術的 耐用年數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 나. 非現實的 殘存價額

減價償却制度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耐用年數, 減價償却方法, 殘存價額이다. 이 세 가지 정책변수들 중에서 減價償却方法과 殘存價額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즉 減價償却方法이 定率法일 경우에는 殘存價額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定率法의 減價償却方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殘存價額의 존재여부 및 정도에 대한 독립적인 정책을 이룰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定率法의 減價償却方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殘存價額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減價償却方法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 殘存價額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減價償却方法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殘存價額의 타당성을 독립적으로 논의할 때는 殘存價額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행 10%의 殘存價額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資産種類別로 차이가 있지만 수명이 다한 자산을 처분하는 데 오히려 비용이 수반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殘存價額制度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企業의 減價償却 實態 調查 結果에서도 보았듯이 資産을 폐기하는 데 오히려 자산가격의 2.3%의 處分費用이 들고 있다. 따라서 殘存價額制度는 非現實的인 制度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는 減價償却方法을 定率

法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殘存價額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서도 1%나 5%가 아닌 10%의 殘存價額은 충분한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 현행 殘存價額은 資産의 실제 殘存價額을 반영한 것도 아니고, 定率法의 減價償却方法을 채택하기 위해 단순히 제도적으로만 필요하기에는 너무 높은 기준이다. 그러므로 殘存價額은 경제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定率法 減價償却方法을 운영하기 위한 보조적 기능 이상의 비현실적인 기준은 개선되어야 한다.

#### 다. 非科學的 業種分類體系

현행 機械裝置에 대한 稅法上 耐用年數는 40개 業種別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企業에서 사용하고 있는 機械裝置의 耐用年數를 알려면 먼저 해당하는 업종을 파악하여야 한다. 현행 業種別 分類體系의 문제점은 分類體系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데 있다. 일반적으로 業種別 분류는 韓國標準産業分類體系를 많이 따르고 있다. 韓國標準産業分類는 현재까지 6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1991년에 마지막 개정작업이 있었다<sup>2)</sup>. 經濟가 발전함에 따라 業種이 점차 細分化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業種別 구분체계의 조정은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므로 業種別 區分이 필요한 대부분의 통계치와 정부정책은 韓國標準産業分類를 따르고 있다. 현재 國稅廳의 소득표준을 업종분류표도 韓國標準産業分類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機械裝置의 稅法上 耐用年數의 業種別 分類體系는 韓國標準産業分類體系와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表 VI-2>는 현행 機械裝置의 業種別 分類體系를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와 대비한 결과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機械裝置의 業種別 분류는 업종에 따라 韓

2) 韓國標準産業分類體系는 1963년에 制定되었고 現在까지 6차례(1965년, 1968년, 1970년, 1975년, 1984년, 1991년) 改正이 있었다.

〈表 VI-2〉 機械裝置 業種分類와 韓國標準産業分類의 比較

機械裝置의 業種分類	韓國標準産業分類
1. 금속광업	13. 금속광업
2. 비금속광업	14. 기타 광업 및 채석업
3. 석면광업	14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광업 및 채석업
4. 석탄광업	10. 석탄광업
5. 석유광업설비	11. 원유, 천연가스 채취 및 관련서비스업
6. 철강업	271. 제1차 철강산업
7. 비철금속 제조업	272. 제1차 비철금속산업
8. 금속제품 제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9. 기계 제조업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11. 수송용기계 제조업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 세탁기 및 기타 광학기계	34. 자동차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3. 무기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기타의 기계류 제조업	2927.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15. 의약품·농약 제조업	35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6. 비료 제조업	24212. 농약 제조업, 2423. 의약품 제조업
17. 무기공업제품 제조업	241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18. 유기공업제품 제조업	24112.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19. 화학석유 제조업	24116. 석유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0. 유지가공제품 제조업	243. 화학석유 제조업
21. 화약류 제조업	2424. 비누, 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제조업
22. 도료 염료 등 제조업	242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4114. 염료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3. 기타의 화학공업	2424. 도료,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 석유제품, 석탄제품 제조업	24132. 합성수지 제조업, 24245. 화장품 제조업
25. 고무제품 제조업	24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 제조업
26. 제혁,혁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기타 핵연료 제조업
27. 요업,토석제품 제조업	251. 고무제품 제조업
28. 섬유공업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제조업
29. 목재, 목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0. 펄프지, 지공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31. 인쇄·제본·출판업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610. 가구 제조업
32. 식품 제조업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3. 기타 제조업	221. 출판업, 222.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34. 건설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35. 운수통신업	369. 기타 제조업
36. 전기업	F. 건설업
37. 가스업	I. 운수, 창고 및 통신업
38. 서비스업	401. 전기업
	402. 가스제조 및 공급업
39. 수산업	G.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40. 기타 사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90.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93. 기타 서비스업, 502. 자동차 수리업
	B.어업
	J. 금융 및 보험업, K.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L.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M. 교육 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O.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P. 가사 서비스업,
	Q.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國標準産業分類體系의 大分類과 일치하는 항목(예를 들면 건설업, 운수·통신업 등)이 있는 반면, 韓國標準産業分類體系의 細分類과 일치하는 항목(무기공업제품 제조업, 화학류 제조업 등)도 있다. 이는 經濟가 발전함에 따른 업종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수십 년 전의 業種別 分類體系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책이 변화하는 업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현행 業種別 分類體系는 복잡하고 細分化된 현재의 업종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특정 업종의 機械裝置에 대해서는 業種分類가 어려워진다. 즉, 특정 機械裝置에 대해서는 두 개 이상의 業種으로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정확한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企業과 稅政 當局間의 불필요한 논의가 있게 되며, 이에 따른 行政費用도 높아지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業種別 統計値나 政策案들은 주로 韓國標準産業分類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企業이 사용하는 機械裝置에 대한 자료는 韓國標準産業分類와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機械裝置에 대한 자산규모의 파악은 이러한 기준을 따를 수 없다. 따라서 統計値가 二重으로 생산되어 이들 자료들을 일치시키기 어려운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sup>3)</sup>.

3) 現在 10년마다 행해지는 國富調査에서는 企業이 所有하고 있는 機械裝置의 業種區分은 法人稅法에서 규정한 業種分類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國富調査 統計値가 經濟에 대한 全般의인 研究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勘案할 때 業種分類는 韓國標準産業分類體系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機械裝置에 대한 經濟的 耐用年數와 殘存價額을 모두 法人稅法 規程에 따르고 있는데 法人稅法의 규정은 經濟的 現實을 反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客觀的 分析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실이다. 國富調査에서 보여주는 자산의 統計値는 다른 經濟分析을 위한 基礎資料로 活用되므로 좀더 科學的이고 正確한 分析을 통한 國富調査의 統計値가 구해져야 한다.

## 라. 資産 分類體系의 問題點

현행 耐用年數에 대한 機械裝置 資産의 區分은 40개 業種에서 총 321개로 나뉘어졌다. 이러한 많은 資産分類에도 불구하고 資産區分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우리나라 資産分類 形態가 日本을 많이 모방하였지만 日本의 경우는 총 502개로 細分化되어 있다. 우리나라 減價償却制度의 기본입장은 日本과 같이 稅法에서 資産別 區分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이다. 이럴 경우 稅法에서는 가능한 한 資産을 細分化하여 개개 資産에 대한 稅法 適用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시각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資産分類은 日本보다 덜 細分化시켜 資産의 감가상각을 위한 稅法適用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생긴다<sup>4)</sup>. 또한 같은 資産에 대해서 사용하는 業種에 따라 稅法適用이 달라 衡平性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sup>5)</sup>.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資産의 도입이 普遍化되고 있다. 그러나 稅法에서의 자산에 대한 규정은 기술의 발달에 대하여 非彈力的이므로 새로운 資産을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技術開發로 생긴 資産은 企業에게는 國際競爭力이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이러한 資産의 特性을 고려한 資産區分이 되지 않고 있다.

非科學적이고 불명확한 資産 分類體系는 行政費用을 높게 되고, 자원배분을 歪曲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sup>6)</sup>. 稅法適用을 위한 資産區

4) 非科學적인 資産區分으로 인한 혼란을 가져오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運送 事業用 外의 車輛과 運搬具 資産에 대한 구분은 自動車, 貨物自動車, 기타의 것, 自轉車, 鑛山用 引車, 도록크, 其他의 7개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其他의 것”에 해당하는 자산과 “其他”에 해당하는 資産區分이 明確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5) 業種別 差等適用되는 資産으로 淨化設備를 들 수 있다. 淨化設備는 모든 業種에 적용되는 環境保護 次元의 重要한 機械裝置이다. 그러나 서비스 業種에서만 産業 廢棄物 處理設備로 구분되어 3년이 적용되고, 他 業種에서는 其他 設備로 구분되어 5년 이상의 내용연수가 적용되고 있다.

6)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국세청이 1992년 한 해에 자산구분에 대해 납세자

分은 減價償却 政策이 어떠한 방향이든 관계없이 매우 명료하여야 하며 稅法適用에 혼란이 없어야 한다.

#### 마. 即時償却의 限度額 問題

현행 即時償却 限度額은 30萬원 이하이며 이 資産에 대해서는 당해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企業은 많은 종류의 資産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資産에 대한 減價償却額은 매년 계산된다. 이때 即時償却을 할 수 있는 限度額이 높으면 높을수록 企業이 회계 처리하는 協力費用은 줄어든다. 반면 限度額이 낮으면 企業이 소유한 모든 종류의 資産에 대해 減價償却을 위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많은 協力費用을 지불하여야 한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수준에 비해 即時償却의 限度額 30萬원이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한 것인데 限度額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經濟成長에 따른 物價上昇 要因을 彈力的으로 반영할 수 없는 短點이 있다. 企業實態 調査에서 볼 수 있듯이 即時償却 限度額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企業이 전체의 6.5%를 차지하므로 문제점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다. 그러므로 企業의 協力費用과 稅收減少 效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상향조절할 필요가 있다.

即時償却 限度額의 적용과 관련한 稅法上 問題點은 현행 限度額 30만원이 한 개당 가격이 아닌 거래단위로 규정되어 있어 法適用에 혼선이 있다. 예를 들면 한 개에 10萬원 하는 資産을 하나씩 따로 구입할 경우는 즉시 費用處理가 가능하나, 5개를 동시에 구입하여 50萬원을 지불하였을 때는 即時償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法適用에 불분명한 면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企業이 이러한 문

---

로부터 문의를 받은 건수는 총 386건에 달한다.

제로 인해 會計帳簿를 정리하는 데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 바. 任意償却 問題

현행 減價償却制度는 당해연도에 減價償却을 費用處理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企業은 減價償却을 통해 당해연도의 純利益을 調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차이점을 야기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是否認 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減價償却이 企業會計와 稅務會計로 二元化되어 매우 복잡하여 企業은 높은 협력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任意償却制度는 減價償却을 경제정책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한다. 즉 減價償却 政策을 통하여 企業의 投資行爲를 특정한 방향으로 誘導하려 해도 企業은 임의로 減價償却額을 年度別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減價償却 政策效果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없게 된다.

## VII. 減價償却制度의 經濟的 效果

이 章에서는 減價償却制度의 經濟的 效果를 보여주기 위하여 먼저 最適 減價償却制度(optimal depreciation policy)를 설명하고 經濟적 觀點에서 減價償却制度를 조명한다. 또한 본 研究에서 사용한 方法論과 각 政策手段의 經濟的 效果를 模擬實驗結果를 분석하여 설명한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政策案에 대한 經濟的 效果를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와 資本費用의 變化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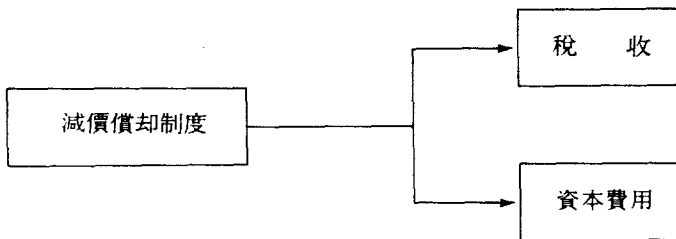
### 1. 最適 減價償却制度(optimal depreciation policy)

減價償却制度의 經濟的 效果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最適의 減價償却制度(optimal depreciation policy)에 대한 概念을 整理할 필요가 있다. 減價償却制度는 社會福祉를 極大化하는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이 定義되어야 한다. 減價償却制度가 가져다 주는 經濟的 效果는 여러 가지 方面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稅收規模와 資本費用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1) 嚴密한 意味에서 資本費用은 目的이 아니다. 資本費用은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資本投資의 增大를 통한 經濟成長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은 新古典 投資理論(neoclassical investment theory)에서 잘 糾明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資本費用과 투자와의 關係를 實證의으로 糾明한 研究가 활발하지 않다. 代表的인 研究로 金峻永과 具東鉉(1992)을 들 수 있으며, 이 분야의 實證的 研究는 앞으로 開發하여야 할 課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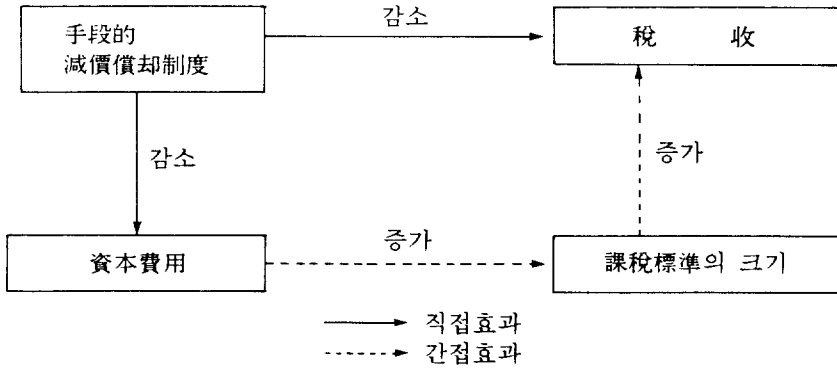
이는 減價償却制度의 變化가 法人稅收의 規模와 資本費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減價償却額의 變化는 稅收變化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그 자체가 경제적인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減價償却制度의 變化는 稅收와 資本費用의 두 가지 요소에 영향을 주며, 이 두 가지 요소는 서로 상충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최적의 減價償却制度란 稅收와 資本費用에 대한 二次元의 평면에서 社會福祉를 극대화하는 減價償却制度를 의미한다. 물론 減價償却制度가 稅收와 資本費用의 두 가지 요인만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減價償却制度의 선택에 따라 行政費用과 社會費用이 변화한다. 즉 減價償却制度가 복잡하게 되면 이에 따라 行政費用이 증가하게 되고, 세정당국과 納稅者間的 조정시간으로 인한 社會費用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行政 및 社會費用은 자료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분석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의는 이러한 비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減價償却制度의 經濟的 效果에 대한 분석은 [圖 VII-1]과 같이 稅收 측면과 資本費用 측면에서 分析할 수 있다.

[圖 VII-1] 減價償却制度의 經濟的 效果에 대한 分析對象



이 두 가지 側面은 減價償却制度의 직접적인 經濟效果를 설명한다. 그러나 減價償却制度의 간접적인 효과를 포함하면 稅收와 資本費用의 두 가지 기준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圖 VII-2]는 減價償

[圖 VII-2] 減價償却制度의 全體效果



却制度의 직접적 및 간접적 효과를 포함한 관계를 요약한 것이다. 즉 減價償却制度의 經濟的 效果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가 그림의 實線으로 표시한 것으로 稅收와 資本費用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이다. 이는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減價償却制度가 稅收와 資本費用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서로 상충관계가 있음을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실제 減價償却보다 많이 허용하는 手段的 減價償却制度는 稅收規模를 減少시키지만 資本費用 또한 감소시켜 설비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減價償却制度의 間接的 效果를 포함하면 이 두 가지 기준이 서로 상충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림의 점선으로 표시했듯이 資本費用의 감소는 기업에게 投資를 誘引하여 더 많은 利潤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즉, 課稅標準을 증가시킴으로써 해서 稅收規模를 증가시킬 수 있다.

減價償却制度의 經濟的 效果에 대한 直接 및 間接效果를 모두 포함한 분석은 실증적으로 매우 힘들다. 이러한 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直接效果만을 대상으로 分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間接效果에 대한 관계도 질적으로 고려하여 減價償却制度를 종합적으로 評價하여야 한다.

## 2. 分析模型

減價償却制度가 稅收規模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財務構造와 자산보유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微視資料를 필요로 한다. 또한 減價償却制度의 經濟的 效果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도 微視資料가 필요하다. 기업의 財務構造와 자산보유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微視資料를 대신할 수 있는 자료로 전체 기업의 財務構造와 자산보유 상황을 집계한 자료가 있다. 또한 稅收效果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國稅統計年報』에 나타난 전체 기업의 課稅標準額, 缺損額, 稅額 등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다.

減價償却制度의 變化가 민감하게 減價償却額을 변화시키고, 減價償却額이 法人稅 課稅標準의 1.87배에 이르는 규모이므로 法人稅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전체 기업의 자산보유 현황을 집계한 자료만을 사용하여 몇 가지 假定下에서 분석하기에는 그 효과가 너무 민감하여 현실을 誤導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분석은 향후 각 企業의 자산보유 현황에 대한 微視資料의 이용이 허용되는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減價償却制度의 經濟的 效果를 보여주되 가상적인 환경을 설정하여 模擬實驗을 한다. 분석의 틀을 비교적 간단히 하고 그 經濟的 效果에 대한 敏感度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 본다.

減價償却制度 중에서 耐用年數, 減價償却方法, 殘存價額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政策變數로 들 수 있다. 減價償却制度의 經濟的 效果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에 대한 經濟的 效果의 분석이 요구된다. 減價償却制度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들 간의 관계는 減價償却方法이 定率法을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text{減價償却率} = 1 - (\text{殘存價值率})^{1/N}$$

여기서 殘存價值率은 殘存價額을 취득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내며, N은 稅法上 耐用年數를 나타낸다. 減價償却方法이 定率法을 따른다는 가정은 減價償却制度의 經濟的 效果分析을 하는 데 많은 간편함을 가져다 준다<sup>2)</sup>. 즉 定率法을 적용하면 資產規模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을 전체 자산규모에 곱함으로써 減價償却額을 쉽게 구할 수 있다. 耐用年數나 殘存價額의 變化에 따른 효과를 위의 관계식을 사용하여 減價償却率의 變化로 환산할 수 있다.

위 관계식을 사용하는 減價償却制度의 經濟的 效果分析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가상적인 상황하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즉 耐用年數 및 殘存價額이 변화했을 때의 효과를 직접 구하지 않고 위 관계식을 통하여 減價償却率의 變化로 변환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동일한 기업들의 財務構造와 자산보유 상황하에서 政策變化의 효과를 현재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와 다른 특정 政策案이 과거부터 적용되었을 때의 효과를 現在와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보여주는 經濟的 效果는 政策立案者가 減價償却政策을 개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에는 現實的으로 限界가 있다.

減價償却制度의 經濟的 效果를 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減價償却率의 變化를 통한 減價償却額의 變化를 구한다. 이 관계식은 減價償却方法이 定率法을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성립하므로 減價償却方法의 變化에 따른 효과는 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減價償却制度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耐用年數와

2) 자산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減價償却이 定率法을 따른다는 假定을 하고 있다. 이 假定이 없이는 理論 展開過程이 매우 複雜하게 되므로 論理誘導가 힘들다. 대표적인 資產研究인 新古典 投資理論(neoclassical investment theory)도 定率法 假定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가정이 없이는 理論을 展開할 수 없다.

殘存價額의 效果가 減價償却方法의 效果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減價償却制度에 대한 관심은 주로 耐用年數와 殘存價額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의 관계식을 사용하여 주로 耐用年數와 殘存價額의 經濟的 效果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sup>3)</sup>.

### 가. 耐用年數 및 殘存價額의 經濟的 效果

減價償却制度의 經濟的 效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즉 法人稅收의 變化와 資本費用의 變化가 그것이다. 減價償却額의 變化는 定率法의 減價償却率을 사용할 경우 쉽게 구할 수 있다. 즉 耐用年數나 殘存價額의 變化에 따라 위의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자산의 稅法上 耐用年數를 改正한다고 가정하자. 기존의 稅法上 耐用年數에 대응하는 定率法 減價償却率이  $\delta$ 라 하고, 변화한 耐用年數에 대한 定率法 減價償却率이  $\delta'$ 라고 하자. 이때 稅法上 耐用年數의 變化에 따른 減價償却額의 變化는 다음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減價償却額의 變化는 課稅標準의 變化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減價償却額의 變化를 사용하여 課稅標準의 變化를 구한다.

$$\text{減價償却額의 變化} = (\delta' - \delta) \times \text{減價償却 對象 資産의 總額}$$

法人稅收의 變化는 減價償却額의 變化를 사용하여 이론적으로는 쉽게 구할 수 있다. 즉 減價償却額 變化만큼 課稅標準이 변화하고 이에 따른 稅收變化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했듯이 課稅

3) 여러 가지 減價償却方法의 變化에 따른 經濟的 效果를 模擬實驗한 研究로 Hall 과 Jorgenson(1967)을 들 수 있다.

標準額, 缺損額, 減價償却額, 稅額에 대한 집계자료만을 사용하여 稅收規模를 추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가정이 필요하고 그 效果 또한 너무 敏感하여 현실을 誤導할 가능성이 있다. 대신 減價償却額의 變化를 現在價値로 환산하여 그 效果를 보여줌으로써 稅收規模에 미치는 效果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資本費用은 企業이 사용하는 資産의 임대가격(rental price)을 의미한다. 資本費用이 높으면 企業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되고 반대로 資本費用이 낮으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 따라서 資本費用은 企業의 資産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資本費用은 法人稅法의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이루어지며 新古典 投資理論(neoclassical investment theory)에서 개발한 가장 간단한 형태의 資本費用(c)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sup>4)</sup>.

$$c = \frac{p(r+d)(1-k-uz)}{(1-u)} \dots\dots\dots(1)$$

- 여기서 p: 資産의 單位價格
- r: 利子率
- d: 經濟的 減價償却率
- k: 投資稅額控除率
- u: 法人稅率
- z: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 여기서 z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4) 資本費用에 대한 자세한 誘導過程과 經驗的 分析에 대한 全般的인 調查研究은 Chirinko(1986), Chirinko와 Eisner(1981, 1983), Hall과 Jorgenson(1967, 1969)을 參照하기 바란다.

定率法の 경우:

$$z = \delta \cdot \sum_{n=1}^N \left[ \frac{(1-\delta)}{(1+r)} \right]^{(n-1)}$$

여기서 N: 稅法上 耐用年數

$\delta$ : 耐用年數와 殘存價額에 대응하는 定率法 減價償却率

定額法の 경우:

$$z = \sum_{n=1}^N \frac{(1+r)^{(1-n)}}{N}$$

法人稅가 없을 경우의 資本費用은 앞의 식 (1)에서 마지막 項을 제외한 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c = p (r + d)$$

法人稅가 있는 현 상황에서의 資本費用은 법인세가 없을 경우의 자본비용에다  $(1 - k - uz) / (1 - u)$ 를 추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資本費用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減價償却制度는 z에 반영된다. 즉 減價償却制度가 변하면 z의 값도 변하게 되어 資本費用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z에 따른 資本費用을 구함으로써 資本費用에 미치는 減價償却制度의 영향을 구할 수 있다. 減價償却制度가 資本費用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法人稅制의 全體效果를 나타내는  $(1 - k - uz) / (1 - u)$ 를 통하여 模擬分析을 시도한다. 즉 減價償却制度가 변화하면 이에 따라 z가 변화한다. 따라서 전체 資本費用 중에서 減價償却制度에 의한 效果를 측정하기 위해 法人稅制을 구성하는 요소만을 대상으로 敏感度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投資稅額控除率은 10%, 法人稅率은 1992년 기준

으로 최고 한계세율인 34%를 적용하여 분석한다.

#### 나. 減價償却方法의 經濟的 效果

減價償却方法의 變化에 따른 經濟的 效果, 즉 稅收規模의 變化는 위의 관계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 없다. 반면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는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減價償却方法을 비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減價償却方法이 法人稅收에 미치는 효과를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이때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를 사용한 비교는 식 (1)을 이용한 분석과는 다른 면을 가진다. 즉, 식 (1)을 사용한 減價償却額 變化의 분석은 1년에 해당하는 法人稅收의 變化를 보여준다. 그러나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를 사용한 분석은 여러 해의 효과를 합산한 것이므로 각 연도에 일어난 효과는 비교할 수 없다<sup>5)</sup>.

### 3. 耐用年數의 經濟的 效果

耐用年數의 變化에 따른 經濟的 效果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耐用年數의 變化에 대응하는 定率法 減價償却率의 變化를 구해야 한다. 定率法 減價償却率의 變化는 減價償却額 및 資本費用의 變化를 측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表 VII-1>은 耐用年數가 변화

5) 減價償却方法의 變化에 따른 課稅標準 및 稅收規模에 미치는 영향은 向後 企業別 微視資料가 補完될 때 研究될 것이다. 이러한 方法論上의 非一致性 (inconsistency)은 本 研究에서 使用하는 資料가 集計된 것이기 때문에 惹起된 問題이다.

할 때 이에 따른 減價償却率·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 資本費用의 變化를 보여준다. 여기서 殘存價額은 현행 10%를 가정한다. 먼저 耐用年數에 따른 減價償却率의 變化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稅法上 耐用年數가 6년인 특정 자산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定率法 減價償却率은 31.9%이다. 이때 稅法上 耐用年數가 5년으로 改正되었을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定率法 減價償却率은 36.9%이다. 減價償却率이 31.9%에서 36.9%로 증가하였으므로 減價償却額은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法人稅收는 감소하게 된다.

稅法上 耐用年數의 變化에 따른 전체 減價償却額의 變化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결과를 살펴본다. 이 결과치는 특정 耐用年數를 가진 固定資産에 대해 한 단위를 투자하였을 때 허용되는 감가상각 총액의 現在價値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稅法上 耐用年數가 5년인 固定資産에 한 단위를 투자하였을 때 0.8117만큼은 비용으로 控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稅法上 耐用年數의 變化에 따른 減價償却額의 현재가치의 變化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稅法上 耐用年數가 6년인 資産의 6년 동안 전체 減價償却額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0.7910이다. 만약 이 자산의 耐用年數가 5년으로 改正되면 5년 동안의 전체 減價償却額의 현재가치는 0.8117로 변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稅法上 耐用年數를 1년 단축함으로써 공제되는 減價償却額은 2.6% 減少하게 된다.

다음으로 耐用年數의 變化에 따른 資本費用의 變化를 살펴보면 資本費用의 變化는 資本費用의 전체 요소를 통하여 구한 값이 아니고, 減價償却制度를 포함한 法人稅制에 해당하는 부분만이다. 그러므로 <表 VII-1>에서 보여주는 資本費用의 값은 資本費用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稅法上 耐用年數가 변화할 때 法人稅制에 의한 資本費用이 얼마만큼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稅法上 耐用年數가 6년인 특정자산의 資本費用은 0.9567이다. 이때 이 자산의 耐用年數가 5년으로 개정되면 資本費用

은 0.9455로 변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稅法上 耐用年數를 1년 단축한 改正案은 資本費用을 1.17% 감소시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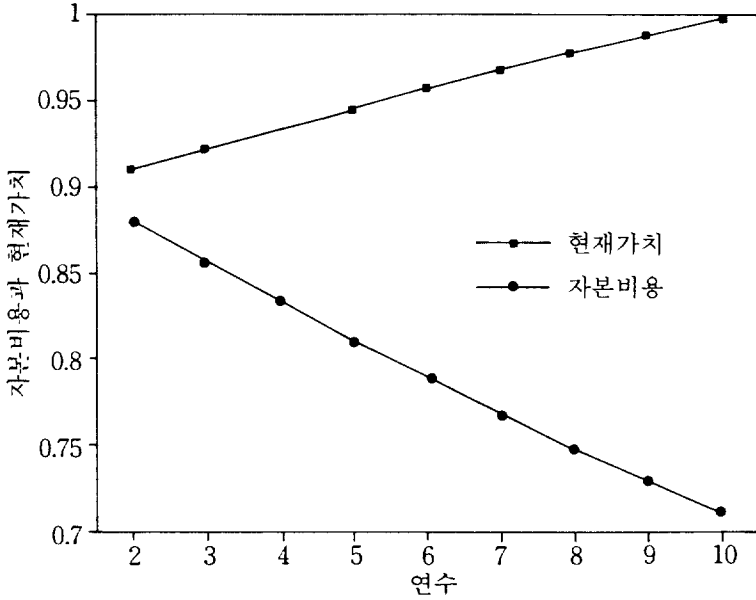
[圖 VII-3]은 <表 VII-1>을 사용하여 耐用年數에 따른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와 資本費用의 變化를 요약한 것이다. 耐用年數의 變化는 減價償却額과 資本費用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最適의 耐用年數를 선택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 요소간의 조화(trade-off) 문제인 것이다.

<表 VII-1> 耐用年數에 따른 減價償却과 資本費用의 變化

(單位: 年, %)

耐用年數	減價償却率	現在價値	資本費用
2	68.4	0.8803	0.9101
3	53.6	0.8574	0.9220
4	43.8	0.8343	0.9339
5	36.9	0.8117	0.9455
6	31.9	0.7900	0.9567
7	28.0	0.7692	0.9674
8	25.0	0.7492	0.9777
9	22.6	0.7300	0.9876
10	20.6	0.7116	0.9971
15	14.2	0.6306	1.0388
20	10.9	0.5645	1.0728
30	7.4	0.4647	1.1242
40	5.6	0.3937	1.1608

[圖 VII-3] 耐用年數에 따른 減價償却과 資本費用의 變化



#### 4. 殘存價額의 經濟的 效果

現行 稅法上 有形資産의 殘存價額은 取得價額의 10%로 定해져 있다. 그러므로 1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費用控除가 될 수 없다. 殘存價額 자체만을 살펴볼 때 미국과 일본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이다. 減價償却制度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耐用年數와 減價償却方法을 현재 상태로 유지한 채, 殘存價額만을 변화시킴으로 인한 效果를 分析한다. <表 VII-2>는 殘存價額을 현재의 10%에서 각각 5%와 1%로 바꿀 때의 效果를 定率法에 따른 減價償却率을 통하여 살펴본 것이다. 예를 들면 5년의 耐用年數를 가진 有形資産이 現行 10%의 殘存價額에서는 36.9%의 減

價償却率을 나타낸다. 만약 殘存價額을 각각 5%와 1%로 변화시키면 이 자산의 減價償却率은 45%와 60.2%로 커진다.

〈表 VII-2〉 殘存價額의 變化에 따른 減價償却率의 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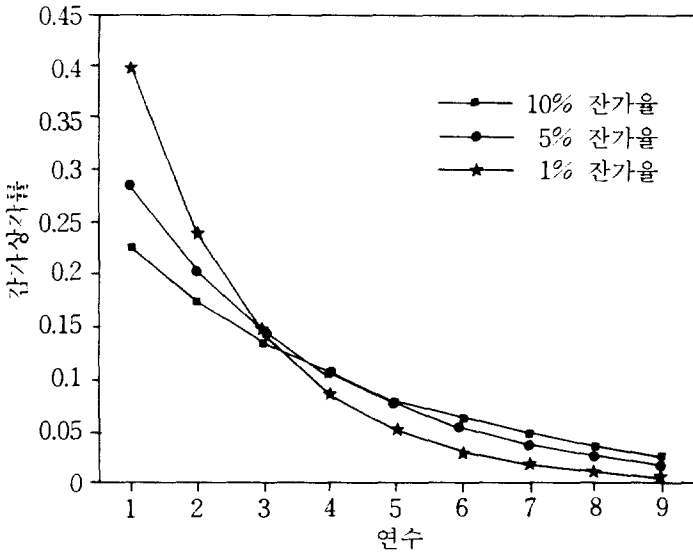
(單位: 年, %)

耐用年數	減價償却率		
	10% 殘價率	5% 殘價率	1% 殘價率
2	68.4	77.6	90.0
3	53.6	63.2	78.5
4	43.8	52.7	68.4
5	36.9	45.0	60.2
6	31.9	39.3	53.6
7	28.0	34.8	48.2
8	25.0	31.2	43.8
9	22.6	28.3	40.1
10	20.6	25.9	36.9
15	14.2	18.1	26.4
20	10.9	13.9	20.6
30	7.4	9.5	14.2
40	5.6	7.2	10.9

[圖 VII-4]는 〈表 VII-2〉의 결과를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해 耐用年數가 9년인 資產을 예로 들어 보았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殘存價額의 變化는 減價償却率에 매우 민감한 변화를 줄 수 있다. 定率法 減價償却은 특성상 殘存價額의 정도에 따라 전체 減價償却率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殘存價額이 변화할 때 변화하는 부분만이 감가상각 대상이 되므로 그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통상적인 논리는 定率法의 특성을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表 VII-3〉은 殘存價額의 變化에 따른 전체 減價償却額을 現在價

[圖 VII-4] 殘存價額의 變化에 따른 減價償却 形態의 比較



<表 VII-3> 殘存價額의 變化에 따른 減價償却額 現在價値의 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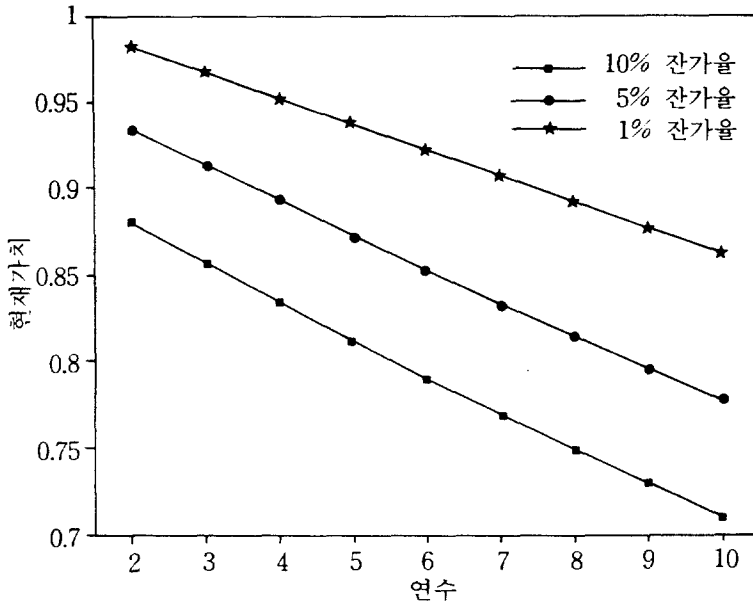
耐用年數	現在價値		
	10% 殘價率	5% 殘價率	1% 殘價率
2년	0.8803	0.9342	0.9818
3년	0.8574	0.9140	0.9683
4년	0.8343	0.8930	0.9531
5년	0.8117	0.8723	0.9374
6년	0.7900	0.8520	0.9218
7년	0.7692	0.8326	0.9063
8년	0.7492	0.8138	0.8912
9년	0.7300	0.7957	0.8765
10년	0.7116	0.7782	0.8621
15년	0.6306	0.7001	0.7962
20년	0.5645	0.6352	0.7390
30년	0.4647	0.5345	0.6457
40년	0.3937	0.4605	0.5729

註: 現在價値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이자율은 10%임.

值로 환산한 후의 變化이다. 殘存價額이 감소함에 따라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가격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減價償却 控除額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稅法上 耐用年數가 5년인 자산의 경우 현행 10%의 殘存價額을 5%와 1%로 각각 개정하였을 때의 효과를 보면, 10%하에서는 전체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는 0.8117이었으나 5%일 때는 0.8723으로 증가하고 1%일 때는 0.9374로 증가하게 된다. [圖 VII-5]는 <表 VII-3>을 사용하여 殘存價額의 變化에 따른 減價償却額 現在價値의 變化를 요약한 것이다.

<表 VII-4>는 稅法上 耐用年數의 變化에 따른 資本費用의 變化를

[圖 VII-5] 殘存價額의 變化에 따른 減價償却額 現在價値의 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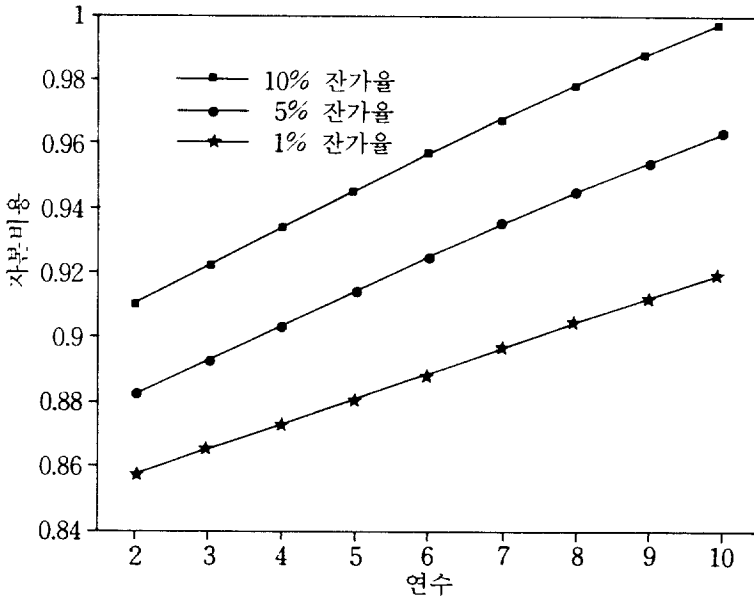
〈表 VII-4〉 耐用年數 變化에 따른 資本費用의 變化

耐用年數	資本費用		
	10% 殘價率	5% 殘價率	1% 殘價率
2년	0.9101	0.8824	0.8579
3년	0.9220	0.8928	0.8648
4년	0.9339	0.9036	0.8726
5년	0.9455	0.9143	0.8807
6년	0.9567	0.9247	0.8888
7년	0.9674	0.9347	0.8967
8년	0.9777	0.9444	0.9045
9년	0.9876	0.9538	0.9121
10년	0.9971	0.9628	0.9195
15년	1.0388	1.0030	0.9535
20년	1.0728	1.0364	0.9829
30년	1.1242	1.0883	1.0310
40년	1.1608	1.1264	1.0685

나타낸 것이다. 耐用年數가 단축되면 이에 따라 資本費用도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자산의 耐用年數가 단축됨으로써 공제되는 減價償却額도 증가하게 되어 稅法으로 인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資本費用이 감소함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稅法上 耐用年數가 5년인 특정자산에 대한 殘存價額이 現行 10%에서 5%와 1%로 각각 개정될 때의 효과를 살펴보면 10%하에서의 資本費用은 0.9455였으나 5%로 개정될 때는 0.9145로 감소하고 1%일 때는 0.8807로 감소한다. [圖 VII-6]은 〈表 VII-4〉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상은 稅法上 耐用年數와 殘存價額이 각각 변화할 때의 減價償却制度的 經濟的 效果를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앞의 표들은 稅法上 耐用年數와 殘存價額이 각각 개정될 때, 그리고 동시에 개정될 때의 經濟的 效果를 구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圖 VII-6] 殘存價額의 變化에 따른 資本費用의 變化



## 5. 政策代案의 評價

이상에서 살펴본 減價償却制度가 減價償却額 現在價値와 資本費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假想 政策案들의 효과를 분석한다.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본 연구에서 보여준 분석들은 현실적인 狀況에서 減價償却制度의 經濟的 效果를 구한 것이 아닌, 假想的인 狀況을 토대로 減價償却制度의 經濟的 效果를 분석한 것이다. 즉 현재의 減價償却制度와 특정 政策案이 과거부터 적용되었을 경우를 가상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政策代案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현재의 政策案이 특정한 政策案으로 변

화했을 때 현재와 비교한 변화를 보여주는 방법과는 다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政策代案은 다음의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먼저 政策案 1과 2는 減價償却制度의 政策變數 한 가지씩만을 변화시켜 그 효과를 측정하고, 政策案 3은 세 가지 政策變數를 복합적으로 변화시켜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政策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 혼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1) 政策案 1: 耐用年數만을 短縮함.
- (2) 政策案 2: 殘存價額만을 短縮함.
- (3) 政策案 3: 定額法 減價償却, 殘存價額 廢止, 耐用年數를 短縮함.

세 가지 政策案들의 經濟的 效果를 앞에서 보여준 減價償却額 現在價値와 資本費用을 통하여 분석하는데 固定資產은 크게 機械分(기계장치, 차량, 선박, 운반구를 포함)과 建物分(건물과 건축물을 포함)으로 나누어 각 정책대안의 經濟的 效果를 각각 분석하였다<sup>6)</sup>.

機械分 및 建物分 자산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자산을 포함하며, 이 자산들은 서로 다른 稅法上 耐用年數를 가진다. 두 가지 분석대상 자산의 耐用年數는 가중평균 耐用年數를 사용하였다. 즉 國富統計調查資料에 근거한 각 자산의 총액과 耐用年數를 사용하여 加重平均을 구하였다. 그 결과 機械裝置의 耐用年數는 8.86년, 建物은 40.39년이고 기계장치가 전체 機械分 자산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機械分의 耐用年數를 9년으로 가정하였고 반면 建物分의 耐用年數는 계산의 편의상 40년

6) 固定資產을 機械分과 建物分으로 나누어 구한 資料는 제 II 장에서 보여주었다.

7) 國富統計調查에 의하면 機械分 및 建物分 資產의 耐用年數는 다음과 같다. 機械分 資產의 경우 機械裝置가 9년, 선박이 14.1년, 車輛運搬具가 6년, 工具가 5.7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建物分 資產의 경우에는 建物과 構築物의 耐用年數가 각각 44.9년, 31.5년으로 나타났다.

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 가. 耐用年數만을 短縮하는 政策案

〈表 VII-5〉는 현재의 減價償却制度에서 耐用年數만을 단축시켰을 때 減價償却額 現在價値와 資本費用에 미치는 效果를 나타낸 것이다. 機械分 資産의 耐用年數를 9년에서 8년으로 短縮할 경우,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는 4.2% 증가하고 資本費用은 개정전의 資本費用과 비교하여 1% 감소한다<sup>8)</sup>. 또한 9년에서 6년으로 短縮하는 경우에는 減價償却額 現在價値가 13.4% 증가하고, 資本費用은 改正前の 資本費用과 비교하여 3.1% 감소하게 된다. 반면 建物分 資産의 耐用年數를 40년에서 35년으로 단축하는 경우 減價償却額 現在價値는 12.7% 증가하고, 資本費用은 改正前の 資本費用에 비해 3.1% 감소한다. 또한 40년에서 30년으로 短縮하는 경우에는 減價償却額 現在價値가 28.6% 증가하고 資本費用은 8.3% 감소하게 된다.

8)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資本費用의 減少는 投資의 增加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資本費用과 投資의 關係를 實證的으로 분석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金峻永과 具東鉉(1992)은 이 關係를 業種別로 實證的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사용한 모형이 선형함수이므로 資本費用이 한 단위 변할 때 資本投資의 變化를 보여주는 彈力度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彈力度를 模擬實驗하여 보여준 金峻永(1994)에 의하면 資本費用이 1% 하락할 때 資本의 增加效果는 다음과 같다: 1985년(0.048%), 1986년(0.042%), 1987년(0.035%), 1988년(0.033%), 1989년(0.026%). 그러므로 資本費用 1%가 하락할 때 자본은 0.026~0.048% 사이에서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表 VII-5〉耐用年數의 經濟的 效果

(單位: 年, %) )

區 分	耐用年數	減價償却額	資本費用의 變化
		現在價値의 變化	
機械分	8	4.2	-1.0
	7	8.7	-2.0
	6	13.4	-3.1
建物分	35	12.7	-3.1
	30	28.6	-8.3

註: 變化율 =  $100 \times [ T(i) - T(b) ] / T(b)$

T(i) : 耐用年數 i일 때의 減價償却額 現在價値 혹은 資本費用

T(b) : 현재 耐用年數下에서 減價償却額 現在價値 혹은 資本費用

(機械分은 9년, 建物分은 40년임)

여기서 T는 機械分과 建物分의 기준이 다름.

#### 나. 殘存價額만을 短縮하는 政策案

〈表 VII-6〉은 現行 10% 殘存價額을 5%와 1%로 短축할 경우에 減價償却額 現在價値와 資本費用에 미치는 效果를 보여준다. 5%로 短축하는 政策案에 대해 機械分 資產의 경우 감가상각 現在價値는 9% 증가하고 資本費用은 3.4% 감소한다. 반면 建物分 資產의 경우는 減價償却額 現在價値가 17% 증가하고 資本費用은 3% 감소한다. 殘存價額을 1%로 短축하는 政策案의 效果는 매우 커서 機械分 資產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現在價値가 20% 증가하고 資本費用은 7.6% 감소한다. 또한 建物分 資產의 경우 감가상각 現在價値는 45.5% 증가하고 資本費用은 8% 감소한다.

〈表 VII-6〉 殘存價額의 經濟的 效果

(單位: %)

區 分	殘存價額	減價償却額	資本費用의 變化
		現在價値의 變化	
機 械 分	5	9.0	-3.4
	1	20.1	-7.6
建 物 分	5	17.0	-3.0
	1	45.5	-8.0

註: 變化율 =  $100 \times [ T(i) - T(b) ] / T(b)$

T(i) : 耐用年數 i일 때의 減價償却額 現在價値 혹은 資本費用

T(b) : 현재 耐用年數下에서 減價償却額 現在價値 혹은 資本費用  
(機械分은 9년, 建物分은 40년임)

여기서 T는 機械分과 建物分의 기준이 다름.

#### 다. 複合的인 政策案

現行 10% 殘存價額을 廢止하는 方向으로 政策案이 세워지면 定率法 減價償却方法을 사용할 수 없다. 定率法을 대체하는 가장 대표적이며 단순한 형태의 減價償却方法이 定額法이다. 定額法 減價償却方法이 주는 이점은 제도가 단순하다는 점이다<sup>9)</sup>.

減價償却額을 결정하는 政策手段은 減價償却方法뿐 아니라 耐用年數도 있다. 어떠한 구체적인 政策方向이 결정되면 정부는 減價償却方法과 耐用年數를 政策手段으로 이용하면 된다. 定額法 減價償却方法을 사용함으로써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목표는 또 하나의 政策手段인 耐用年數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定額法 減價償却方法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減價償却制度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9) 加速償却의 方法으로 美國에서 사용하는 二重遞減法도 計算過程에 있어서 定額法의 일종으로 定額法에서 허용하는 減價償却額의 두 배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結果的으로 二重遞減法은 定率法으로 每年 一定 比率로 減價償却額이 決定된다. 그러므로 二重遞減法을 사용할 경우에도 殘存價額은 그대로 一定 水準 남게 된다.

利點이 있다. 간소한 減價償却制度는 우리나라 減價償却制度가 나아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이므로 定額法 減價償却方法을 중심으로 복합적 政策案을 평가해 본다.

減價償却方法을 定額法으로 사용할 경우 殘存價額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殘存價額이 非現實的이라는 비판이 있으므로 減價償却制度를 단순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측면에서 殘存價額은 폐지되어도 별다른 무리는 없다. 殘存價額을 폐지하면 定額法 감가상각하에서는 耐用年數만으로도 減價償却額이 쉽게 결정된다. 현행 減價償却制度가 定額法 減價償却, 殘存價額의 廢止, 耐用年數의 短縮 방향으로 改正될 때의 經濟的 效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VII-7〉은 定額法 減價償却 및 殘存價額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表 VII-7〉 定額法에 따른 減價償却額과 資本費用

耐用年數	現在價值	資本費用
2년	0.9545	0.8719
3년	0.9118	0.8939
4년	0.8717	0.9146
5년	0.8340	0.9340
6년	0.7985	0.9523
7년	0.7650	0.9695
8년	0.7336	0.9857
9년	0.7039	1.0010
10년	0.6759	1.0154
15년	0.5578	1.0763
20년	0.4682	1.1224
25년	0.3994	1.1579
30년	0.3457	1.1856
35년	0.3031	1.2075
40년	0.2689	1.2251

減價償却制度가 나갈 때, 耐用年數에 따라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와 資本費用의 變化를 보여준다. 이 자료는 현행 減價償却制度和 定額法 減價償却 및 殘存價額 폐지 방향으로 나갈 때의 經濟的 效果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즉 현행 제도하에서의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와 資本費用을 비교함으로써 정책대안의 經濟的 效果를 알 수 있다.

〈表 VII-8〉은 현행 제도를 殘存價額의 폐지 및 定額法 減價償却方法으로 개정할 경우에 耐用年數의 變化에 따른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와 資本費用의 變化를 보여준다<sup>10)</sup>. 이 표는 현행 減價償却制度에

〈表 VII-8〉 定額法, 殘存價額의 廢止, 耐用年數의 經濟的 效果

(單位: 年, %)

區 分	耐用年數	現在價値의 變化	資本費用의 變化
機 械 分	9	-3.6	1.4
	8	0.5	-0.2
	7	4.8	-1.8
	6	9.4	-3.6
	5	14.2	-5.7
建 物 分	40	-31.7	5.5
	35	-23.0	4.0
	30	-12.2	2.1
	25	1.4	-0.2
	20	18.9	-3.3

註: 變化율 =  $100 \times [ T(i) - T(b) ] / T(b)$

T(i) : 耐用年數 i일 때의 減價償却額 現在價値 혹은 資本費用

T(b) : 현재 耐用年數下에서 減價償却額 現在價値 혹은 資本費用

(機械分은 9년, 建物分은 40년임)

여기서 T는 機械分과 建物分の 기준이 다름.

10) 定額法을 사용할 경우에는 減價償却率과 殘存價額 및 耐用年數와의 關係式을 사용할 수 없다. 定額法으로 變更하는 政策案이 課稅標準에 미치는 영향은 자

서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 및 資本費用을 <表 VII-9>의 결과와 비교한 결과이다. 현행 減價償却制度가 定額法 減價償却方法과 殘存價額의 폐지로 개정되고 耐用年數는 9년으로 변하지 않을 경우 機械分 자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總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는 3.6% 감소하고 資本費用은 1.4% 증가한다. 즉 殘存價額을 폐지함으로써 얻는 혜택과 減價償却方法을 定額法으로 변화함으로써 얻는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여 결과적으로는 減價償却方法의 變化에서 오는 부담이 殘存價額의 혜택보다 크게 나타났다. 定額法 減價償却과 殘存價額을 폐지한 상태에서 耐用年數를 축소함에 따라 總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는 증가하고 資本費用은 감소하게 된다. 耐用年數가 5년일 경우에 現在價値는 14.2% 감소하고 資本費用은 5.7% 감소하게 된다.

建物分 자산의 경우, 耐用年數는 변하지 않고 定額法 減價償却과 0% 殘存價額의 政策案에 대해 現在價値는 31.7% 감소하고 資本費用은 5.5% 증가한다. 따라서 耐用年數가 축소됨에 따라 總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는 점차 증가하고 資本費用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減價償却制度가 세수와 資本費用에 미치는 영향을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와 資本費用의 變化를 통해 살펴보았다. 減價償却制度의 經濟的 效果가 세수와 資本費用에서 서로 상충하는 관계를 <表 VII-8>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 중에서 어떠한 정책대안을 선택해야 하는가는 가치판단에 달려 있다. 즉 우리나라 경제현실이 企業의 資本費用 減少를 위해 稅收를 얼마만큼 비용

---

산의 平均 經過年數에 대한 信憑性있는 資料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國富統計調査에는 資産의 平均 經過年數가 있으나 本 研究와는 시간적 차이가 있는 등으로 他當한 結果를 얻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減價償却額의 年度別 變化에 따른 課稅標準은 구할 수 없고, 대신에 年度別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를 통하여 減價償却 許容額의 規模를 把握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課稅標準에 대한 間接的인 變化를 알 수 있다. 물론 年度別 減價償却額의 形態에 따른 年度別 課稅標準 規模의 差異는 現在價値 資料를 사용해서 알 수 없는 限界點이 있다.

으로 지불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또한 거꾸로 세수확보를 위해 資本費用이 증가하는 비용을 얼마만큼 지불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減價償却方法으로 定額法을 假定하였고 殘存價額을 폐지할 때의 經濟的 效果를 분석하였다. 현행 減價償却制度를 이러한 방향으로 改正할 때 稅收規模 및 資本費用에는 거의 變化가 없는 政策案을 선택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새로운 減價償却制度는 稅收와 資本費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으므로 經濟的 效果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政策案은 減價償却制度를 單純化시켜 行政費用 및 協力費用(compliance cost)을 감소시키는 利點이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현행 減價償却制度와는 經濟的 效果에서는 중립적이거나 單純化를 통한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政策案을 <表 VII-8>에서 선택하면 <表 VII-9>와 같다. 즉 현행 減價償却制度를 定額法과 殘存價額의 폐지 방향으로 改正할 때 현행 제도하에서 稅收規模와 資本費用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耐用年數의 조정을 말한다. 따라서 機械分은 9년에서 8년으로 단축되고 建物分은 40년에서 25년으로 단축되어야 한다. 이는 자산의 耐用年數가 평균적으로 機械分은 11%, 建物分은 37% 감소됨을 의미한다.

<表 VII-9> 現行制度와 中立的인 經濟的 效果를 가지는 政策案

(單位: 年, %)

資 産	減價償却方法	殘存價額	耐用年數	
			平均值	變化率
機 械 分	定額法	廢 止	8	-11.1
建 物 分	定額法	廢 止	25	-37.5

註: 현행 평균 耐用年數는 機械分이 9년, 建物分은 40년임

政策案 3은 耐用年數 단축의 정도를 통하여 減價償却額을 조정한 것이다. 현행 減價償却制度와 經濟的 效果에서 중립적인 政策案이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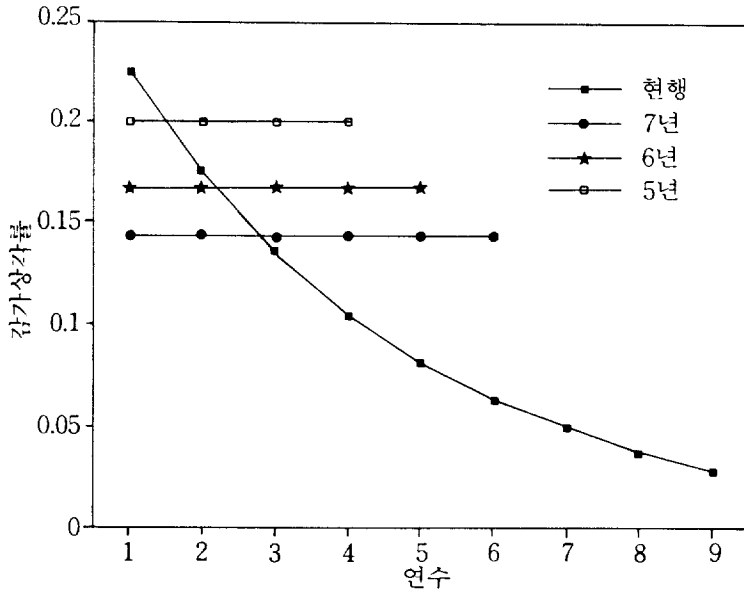
〈表 Ⅶ-10〉 耐用年數에 따른 政策代案의 減價償却 形態

(單位: %)

年 數	現 行	定 額 法 (殘存價額 廢止)							
		8年		7年		6年		5年	
		償却率	變化率	償却率	變化率	償却率	變化率	償却率	變化率
1	0.2257	0.1250	-44.6	0.1429	-36.7	0.1667	-26.2	0.2000	-11.4
2	0.1748	0.1250	-28.5	0.1429	-18.3	0.1667	-4.6	0.2000	14.4
3	0.1353	0.1250	-7.6	0.1429	5.6	0.1667	23.2	0.2000	47.8
4	0.1048	0.1250	19.3	0.1429	36.3	0.1667	59.1	0.2000	90.9
5	0.0811	0.1250	54.1	0.1429	76.1	0.1667	105.4	0.2000	146.5
6	0.0628	0.1250	99.0	0.1429	127.4	0.1667	165.3		
7	0.0486	0.1250	157.0	0.1429	193.7				
8	0.0377	0.1250	232.0						
9	0.0292								
現在價値	0.7300	0.7336	0.5	0.7650	4.8	0.7985	9.4	0.8340	14.2

기 위해서는 機械分의 耐用年數는 8년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政策案 3은 耐用年數가 8년 이하로 결정되어야 한다. 〈表 Ⅶ-10〉은 政策案 3으로 減價償却制度가 개정될 경우에 연도별로 耐用年數의 變化에 따른 減價償却額의 형태를 계산한 결과이다. 耐用年數를 8년으로 할 경우, 첫째의 減價償却額은 현행보다 45% 가량 적게 나타난다. 시간이 감에 따라 이 격차는 줄어들어 4년째부터는 현행보다 증가(19%)하며 8년째는 232% 증가한다. 耐用年數가 축소됨에 따라 현행 減價償却額과의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圖 Ⅶ-7]은 耐用年數에 따른 감가상각 형태의 變化와 현행 減價償却制度의 형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圖 VII-7] 耐用年數에 따른 減價償却 形態의 比較



## Ⅷ. 減價償却制度의 改善方向

여기에서는 減價償却制度의 改善方向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改善方向은 經濟的인 면과 制度的인 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經濟的인 면에서의 改善方向은 第Ⅶ章에서 여러 가지 效果분석을 통해 보여주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제도적인 면에서의 改善方向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1. 政策手段으로서 減價償却制度의 必要性

우리나라의 減價償却制度를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中립적인 政策方向으로 이끌어 왔음을 알 수 있다. 減價償却制度를 經濟政策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 및 稅政環境은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減價償却制度가 미국에서 처럼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減價償却制度가 設備投資規模에 유용한 政策手段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sup>1)</sup>.

減價償却制度를 보는 일반적인 시각은 아직까지 經濟政策의 중요한 수단이 아닌 객관적인 減價償却의 규정이란 會計的인 측면을 중

1) 우리나라 資料를 使用하여 減價償却制度가 포함되어 있는 資本費用이 投資水準에 중요한 影響을 끼친다는 實證的 研究은 金峻永과 具東鉉(1992), 金峻永(1994)에서 자세히 보여준다.

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탈피하여 減價償却制度를 經濟政策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가상각 政策方向에 대한 인식이 전환됨으로써 減價償却制度는 많은 변화를 가질 수 있다.

減價償却制度를 經濟政策의 수단으로 인식하면 租稅支援制度의 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조세지원 목표가 설정되면 여러 가지 조세지원 수단을 검토하고 減價償却制度는 여러 가지 政策手段 중의 하나로 가장 效果가 큰 상황에 적용되어야 한다<sup>2)</sup>.

## 2. 減價償却制度의 單純化

우리나라의 현행 減價償却制度는 너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固定資産의 減價償却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특정 단계내에도 복잡한 적용규칙이 있다. 단순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多段階 구조를 축소하고 특정 단계내에서의 적용규칙도 쉽게 改正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制度를 單純化하면 納稅者의 協力費用과 정책 집행자의 行政費用을 줄일 수 있다. 단순한 減價償却制度로 개정하기 위해서 減價償却額을 결정하는 단계를 축소하고 단계내에서 單純化하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제도의 單純化 측면은 減價償却 政策方向에서 手段的 政策方向과 같은 맥락을 갖는다. 그러므로 제도의 單純化 측면을 너무 강조하면 手段的 政策方向으로 가야 함을 의미한다. 제도의 單純化 측면을 강조하면서 감가상각 政策方向에 대해 편견이 없는 改善案으로는 特別償却을 一般償却으로 吸收하는 案과 資産의 耐用年數 결정과정을 單純化하는 案이다.

2) 租稅支援制度의 여러 가지 要素들의 經濟的 效果는 尹建永과 林周瑩(1993)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가. 特別償却制度의 整備

현행 減價償却制度는 一般償却과 特別償却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一般償却의 경우 각 자산을 稅法에서 細分化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업종 및 資産區分의 복잡성에 비해 그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러므로 복잡한 一般償却體系를 單純化하면서 현행 제도가 의미하는 바를 포함할 수 있다면 복잡한 稅法으로 인한 社會費用을 줄일 수 있다.

特別償却의 경우는 法人稅法과 租稅減免規制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그 적용체계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sup>3)</sup>. 特別償却을 통한 특정 업종과 특정 자산에 대한 지원은 UR協定을 비롯한 國際貿易體系의 變化로 인해 縮小하거나 廢止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特別償却을 一般償却에 흡수할 필요가 있다. 特別償却에 해당하는 지원정도만큼 一般償却을 통하여 무차별적으로 감면 폭을 늘리면 복잡한 減價償却制度는 單純한 제도가 될 것이다.

### 나. 耐用年數 決定過程의 單純化

機械裝置의 資産別 耐用年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자산을 사용하는 기업의 업종을 분류한 후, 자산의 종류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과정은 業種別 및 資産別 機械裝置의 耐用年數를 정확히 반영하자는 정책의도이나 그 複雜性에 비해 效果는 크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資産區分을 單純化하여 納稅者의 協力費用과 行政費用을 줄일 수 있는 보다 效率性이 높은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sup>4)</sup>. 기계장치에 대한 業種別 및 資産別 구분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3) 特別償却에 대한 法人稅法과 租稅減免規制法에서 明示한 具體的인 事項은 <부록 IV>를 參照하기 바란다.

4) 이러한 側面에서 美國과 英國의 資産區分은 매우 簡斷하여 우리에게 주는 示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減價償却制度를 單純化시킨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과정을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다.

#### 다. 減價償却方法 및 殘存價額의 單純化

減價償却方法 중에 定率法을 택하게 되면 이를 위해 殘存價額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殘存價額은 減價償却方法의 부수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으나, 이로 인해 복잡한 구조를 야기한다. 또한 實態調査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處分費用이 2.3% 필요한 經濟的 殘存價額과 비교하여 비현실적인 면이 있으므로 정책에 대한 不信이 깊을 수 있다. 그러므로 定率法 減價償却方法을 단순한 방법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즉 초기에 投資費用을 回收하기 위한 방법으로 年數合計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定率法에서 의도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sup>5)</sup>. 또한 殘存價額의 설정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殘存價額의 廢止, 投資費用의 早期回收, 制度의 簡便化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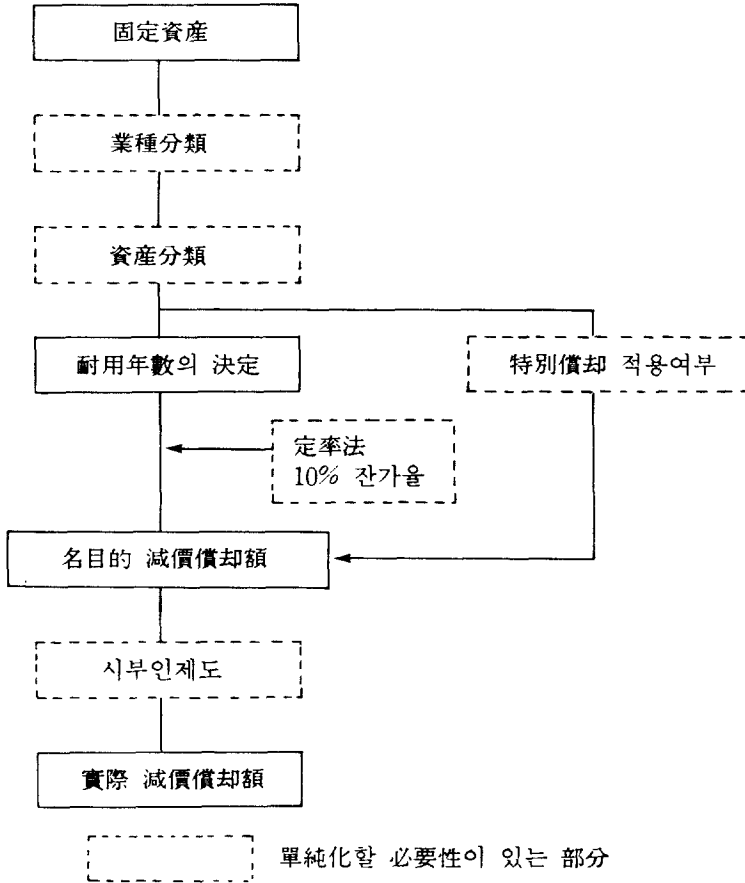
#### 라. 減價償却制度의 單純化 方向

이상에서 논의한 減價償却制度의 單純化에 대한 기본방향을 第VI章에서 설명한 흐름도를 사용하여 改善方向을 간단히 표현하면 [圖 VIII-1]과 같다.

唆性이 크다 하겠다.

5) 美國에서 使用하는 二重遞減法은 定率法과 같이 每年 一定 比率로 減價償却額이 決定되기 때문에 殘存價額이 一定 水準 存在한다. 美國에서는 殘存價額을 償却하기 위해 후반부의 減價償却은 定額法을 使用할 수 있도록 하였다.

[圖 VII-1] 減價償却制度의 單純化 方向



### 3. 合理的 制度

현행 減價償却制度 중에서 논리적인 근거가 없이 慣習的으로 운영 되어 效率性 측면에서 提高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耐用年數의 短縮

企業調査 결과에서 보았듯이 稅法上에 規定한 資産別 耐用年數는 經濟的 耐用年數보다 길게 나타났다. 機械裝置의 경우 現行 稅法上 耐用年數에서 평균 12% 정도 단축하여야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經濟環境이 빠른 속도로 변함에 따라 資産의 經濟的 耐用年數는 단축되어 가고 있다. 또한 기술발달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새로운 개념의 기술적 耐用年數를 稅法에서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資産의 耐用年數를 稅法에서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면 기업에게 신기술 도입을 저지하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

### 나. 殘存價額의 廢止

企業의 조사결과에서 보여주었듯이 資産을 廢棄處分하는 데 드는 비용이 資産원가의 2.3%이므로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물론 殘存價額은 定率法 減價償却法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이지만 10%의 殘存價額이 존재하여야 하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확실하지 않다. 定率法 減價償却法을 적용하기 위해 10% 殘存價額下에서 계산하고 償却은 100% 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殘存價額은 減價償却方法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殘存價額의 본질은 經濟的 現實과 일치시켜야 한다.

### 다. 業種分類의 改善

業種 및 資産種類의 區分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은 감가상각정책방향에 대한 價値判斷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에 달려 있다. 현재의 가치판단하에서 업종 및 자산종류별 資産區分이 合理的인가를 평가해 보면 결과는 현행 減價償却制度下에서 자산의 業種別 구분과 자산종류별 분류는 매우 비합리적이다. 業種分類의 경우는 韓國標準産業分類를 기준으로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韓國標準産業分類의 業種分類도 다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중에서 어떤 段階를 채택하여야 하는가는 더욱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행 稅法上的 業種分類는 40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현재의 분류수준을 유지하려면 韓國標準産業分類上的 大分類를 기본으로 제조업종만 중분류를 채택하면 다음의 36개로 나뉜다.

- (1) 제조업: 중분류(23개 업종)
- (2) 그외 업종: 대분류(13개 업종)

韓國標準産業分類에 의한 36개 업종으로의 분류는 현행 제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분류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업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改正案을 가질 수도 있다. 즉 모든 업종을 대분류로 할 경우에는 14개 업종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어떠한 분류방식을 채택하느냐는 減價償却制度의 政策方向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최소한 韓國標準産業分類에 근거한 業種別 분류는 합리적인 制度改善일 수 있다.

## 라. 資産分類의 改善

유형자산의 資産分類는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細分化한 資産分類는 비과학적으로 분류되어 있고 기술발달로 인한 새로운 자산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稅法適用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資産分類은 業種別로 사용하는 資産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근거로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業種別로 기술개발로 인한 새로운 資産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稅法에서의 구분도 포괄적이거나, 주기적으로 이러한 資産의 출현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資産區分の 정도는 減價償却 政策의 방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減價償却 政策이 수단적 방향일 경우는 구태여 資産區分을 細分化할 필요가 없다. 몇 개의 그룹으로 資産을 규정하고 모든 資産을 이 그룹에 적용함으로써 稅法을 대폭적으로 간편화시킬 수 있다. 반면 中立的 政策方向의 경우는 資産區分을 細分化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資産區分은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資産區분에 앞서 이를 과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 마. 即時償却 限度額 改善

기업의 減價償却 實態調査 結果에서 보았듯이 即時償却할 수 있는 資産의 限度額 30萬원이 현실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라서 기업의 불만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경제규모로 볼 때 30萬원의 限度額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가는 기업의 財務構造와 資産보유 형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적정 限度額은 納稅者의 協力費用과 당국의 行政費用, 稅收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바. 強制償却의 導入

현행 任意償却制度는 減價償却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임의 조정이 가능하다. 이는 稅務會計와 企業會計를 이원화시키게 되고,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많은 社會費用을 치루게 한다. 또한 減價償却制度를 手段的 政策方向으로 전환하려 할 때는 필연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정부가 經濟政策을 수립하는 데 減價償却 政策을 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強制償却制度의 도입이 필연적이다. 그러나 強制償却의 도입은 적자운영되고 있는 企業에게는 더욱 불리하므로 缺損金移越控除에 대한 규정이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즉 現在 5년으로 되어 있는 缺損金移越控除 기간을 10년 이상 혹은 기간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強制償却의 도입은 반드시 缺損金移越控除 기간의 설정과 함께 고찰되어야 한다.

## 4. 科學的인 制度樹立을 위한 資料確保

일반적으로 制度란 經濟環境에 따라 변화해야 하며 시간적·공간적으로 항상 절대적으로 最適인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減價償却制度도 經濟環境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해야 한다. 減價償却制度를 改正하는 데 가장 필요한 사항은 기업이 사용하는 자산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資産別 減價償却의 實態는 減價償却制度를 개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改正案에 대한 구체적인 效果를 측정하는 데 쓰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減價償却制度를 科學的으로 수립하기 위해 실제 資産의 減價償却에 관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sup>6)</sup>. 우리나라에서도 합리적으로 減價償却 관련 稅法改正을 하기 위해서는 資産別 實際 減價償却 資料를 週期的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이는 經濟環境이 빠른 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資産別 減價償却의 내용도 변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에 따라 週期的으로 調査가 이루어져야 한다<sup>7)</sup>. 본 연구에서 보여준 기업의 減價償却 實態調査는 기업이 사용하는 有形資産의 실태를 처음으로 파악하였고 향후 주기적인 조사를 위한 시발점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

6) 美國의 경우 1981년 ACRS 制度가 도입되기 전까지 資産別 實際 耐用年數에 대한 資料를 바탕으로 稅法改正이 이루어졌다. 美國 減價償却制度의 歷史的인 考察은 <부록 V>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7) 가장 큰 이유는 減價償却의 내생적 特徵 때문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考察은 제 V 장에서 이루어졌다.

## IX. 結 論

減價償却制度가 企業의 財務構造와 稅負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減價償却制度가 租稅 또는 더 나아가서 國家經濟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減價償却制度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적다. 減價償却 政策 또한 오랜 慣習 속에서 그 기본골격이 유지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減價償却制度를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資産別 耐用年數·減價償却方法·殘存價額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변화하는 經濟環境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오랜 관습 속에서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制度들이 가지는 非現實的·非合理的 요소들은 企業의 불만의 대상이 되었고, 社會費用 또한 높게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減價償却制度의 現況을 파악하고, 국제적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制度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減價償却制度가 가지는 문제점을 制度的인 면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이 減價償却額과 資本費用에 미치는 經濟的 效果를 측정하고 政策方向에 대해 토론하였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減價償却制度의 改善方向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減價償却制度가 나아가야 할 政策方向은 現實化·合理化·單純化이다. 첫째, 현실화 측면을 살펴보면, 資産別 稅法上 耐用年數는 실제 耐用年數보다 길게 나타났고, 稅法上 10% 殘存價額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稅法上 규정은 企業

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여 현실화하여야 한다. 둘째, 합리화 측면을 살펴보면, 業種 및 資産別 분류기준은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이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요소들은 일정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單純化 측면을 살펴보면, 減價償却制度가 一般償却과 特別償却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特別償却도 法人稅法과 租稅減免規制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특정 업종 및 특정 자산을 지원하는 特別償却은 폐지하고 一般償却으로 흡수하여 단일화하여야 한다.

서구에서는 減價償却 政策이 기업의 투자행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유용한 政策手段으로 인식되어 있다. 新古典 投資理論을 중심으로 減價償却 政策을 포함한 조세정책이 전반적으로 기업의 행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經濟政策의 한 수단임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減價償却 政策을 經濟政策과는 관계없는 국부적인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나라 減價償却制度이 오랫동안 改正되지 않고 지속된 원인이었다. 減價償却 政策을 재정정책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經濟環境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다른 政策手段과 함께 펴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本 研究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限界와 向後 研究方向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韓國銀行의 企業經營分析 자료와 각 기업이 國稅廳에 신고한 法人稅 資料를 집계한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業種別로 총량적인 指標만을 제시하므로 정책변화에 따른 效果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減價償却制度의 變化가 法人稅收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기업의 財務構造를 보여주는 微視資料를 사용함으로써 파악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稅收規模 대신에 減價償却額 現在價値를 사용하여 그 效果를 분석하였다.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値는 稅收規模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稅收規模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稅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작업은 企業의 財務構造를 파악할 수 있는 微視資料를 확보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減價償却制度를 주로 경제적 및 정책적인 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減價償却制度는 정책적으로도 중요하지만 企業의 會計慣行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만큼 企業會計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특정 政策案이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이라도 회계관행과 상반되어 또 다른 社會費用을 창출할 때는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 및 개선안들은 회계 측면에서 깊이 연구되어야 한다.

## 參考文獻

- 郭泰元, 『減價償却制度和 資本所得課稅』, 韓國開發研究院, 1985.
- 金峻永, 「資本費用과 投資의 Q模型」, 韓國財政學會 定期學術發表大會 發表論文, 1994.
- 金峻永·具東鉉, 「한국의 자본스톡, 자본코스트 및 투자함수 추정」, 『經濟學研究』, 제40집 제2호, 1992.
- 申瓚秀, 『法人稅의 實務』, 三逸會計法人, 1993.
- 尹建永, 「資本所得稅政策의 投資誘引效果分析」, 『財政論集』, 제2집, 1988.
- 尹建永·林周瑩, 『租稅支援制度의 現況과 改善方向』, 연보 93-04, 韓國租稅研究院, 1993.
- 崔明根·郭泰元, 『開放經濟下的 企業稅制 改編方向』, 韓國經濟研究院, 1990.
- 韓國租稅研究院, 『外國의 減價償却制度: 영국·서독·프랑스』, 1994.
- 玄鎮權, 「減價償却政策의 改善方向」,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韓國租稅研究院, 1994. 5.
- , 「市場價格資料를 사용한 經濟的 減價償却의 測定」, 國際經濟學會 冬季學術發表會 發表論文, 1993.
- Bitro, George and Harry Kelejian, "On the Variability of the Replacement Investment Capital Stock Ratio: Some Evidence from Capital Scrappag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6, 1974.
- Brazell, David, Lowell Dworin and Michael Walsh, *A History of Federal Tax Depreciation Policy*, OTA Papers 64, U.S. Department of Treasury, 1989.

- Chirinko, Robert, "Business Investment and Tax Policy: A Perspective on Existing Models and Empirical Results," *National Tax Journal* 39, 1986.
- Chirinko, Robert and Robert Eisner, *The Effects of Tax Policies on Investment in Macroeconometric Models: Full Model Simulations*, OTA Papers 46, U.S. Department of Treasury, 1981.
- Cockburn, Iain and Murray Frank, "Market Conditions and Retirement of Physical Capital: Evidence from Oil Tankers," A Paper Presented to Conference on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 NBER, 1992.
- Commerce Clearing House, *1987 Depreciation Guide*, 1987.
- Feldstein, Martin, *Capital Tax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 Feldstein, Martin and David Foot, "The Other Half of Gross Investment: Replacement and Modernization Expenditur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8, 1971.
- Feldstein, Martin and Michael Rothschild, "Towards an Economic Theory of Replacement Investment," *Econometrica* 42, 1974.
- Gravelle, Jane, *The Capital Cost Recovery System and the Corporate Income Tax*, Report No. 79-230 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979.
- Hall, Robert and Dale Jorgenson, "Tax Policy and Investment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57, 1967.
- , "Tax Policy and Investment Behavior: Reply and Further Results," *American Economic Review* 59, 1969.
- Hulten, Charles and Frank Wykoff, "The Measurement of Economic Depreciation," In Charles Hulten(ed.), *Depreciation, Inflation, and the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Urban Institute, 1981a.
- , "The Estimation of Economic Depreciation Using Vintage Asset

- Prices," *Journal of Econometrics* 15, 1981b.
- Hulten, Charles, James Robertson and Frank Wykoff, "Energy, Obsolescence, and the Productivity Slowdown," Working Paper No. 2404,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87.
- Internal Revenue Service, *Depreciation Guidelines and Rules*(Revenue Procedure 62-21),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2.
- Jorgenson, Dale and Martin Sullivan, "Inflation and Corporate Capital Recovery," In Charles Hulten(ed.), *Depreciation, Inflation, and the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Urban Institute, 1981.
- Oliner, Stephen, *The Effect of Investment Incentive on Capital-Use Decisions: Theory and Simulation*,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 1985.
- Pyo, Hak K., "Estimates of Capital Stock and Capital/Output Coefficients by Industries for the Republic of Korea (1953-1986)," KDI Working Paper No. 8810, 1988.
- , "A Synthetic Estimate of the National Wealth of Korea, 1953-1990," KDI Working Paper No. 9212, 1992.
- Zarembka, Paul (ed.), "Transformation of Variables," *Frontiers in Econometrics*, Academic Press, 1974.

## 附 錄

附錄 I. 資料說明

附錄 II. 減價償却資産의 耐用年數에 대한 調査表

附錄 III. 美國 耐用年數와의 比較를 위한 資産區分의 根據

附錄 IV. 特別償却의 種類

附錄 V. 美國 減價償却制度의 歷史的 考察

## 附錄 I. 資料說明

### 1. 사용한 資料의 說明

固定資産과 減價償却 규모에 대한 業種別 분석은 1992년을 대상으로 두 가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첫째 자료는 韓國銀行에서 매년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이다. 이 자료는 韓國銀行에서 매년 標本企業을 業種別로 선정하여 기업실태를 분석한 것으로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製造原價明細書, 資金運用表에 대한 세부항목을 보여준다. 둘째 자료는 법인세 대상 기업이 國稅廳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業種別로 나누어 집계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1992년 歸屬分으로 총 9만 4,660개 기업을 業種別로 나누어 집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韓國銀行의 「企業經營分析」 자료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이 자료에 없는 정보는 國稅廳의 집계자료로 보충하였다. 韓國銀行 자료가 표본을 통한 조사자료임에 반해 國稅廳 자료는 전수자료이고 신고자료이므로 國稅廳 자료가 훨씬 정확도가 높다. 그러나 國稅廳 자료는 減價償却額의 중요한 항목인 製造原價明細書에 대한 자료가 빠져 있기 때문에 國稅廳 자료만으로 분석할 수는 없었다. 대신 韓國銀行 자료를 중심으로 國稅廳 집계자료와 비교 가능한 항목은 서로 대조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두 가지 자료를 모두 사용한 이유는 각 자료의 不充分한 정보를 서로 補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자료를 서로 보충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業種別 분류체계가 다른 데에 있다. 즉 韓國銀行 자료의 업종분류체계는 1991년 이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를 따른 반면, 國稅廳 자료는 1991년에 새로 개정된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다. 國稅廳 자료가 제조업의 경우는 중분류에 의해 분류되어 있는 반면 그 외 업종은 대

분류로 분류되어 있어 韓國銀行 자료의 구분류를 <附表 I-1>과 같

<附表 I-1> 産業分類體系의 調整

新 分 類	舊 分 類
축산업, 수렵업 및 임업, 수산업 광업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음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및 기타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 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출 판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석유 및 석탄 제품 제외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기타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전기, 가스 및 증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 숙박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이 新分類體系와 일치하였다.

韓國銀行의 기업경영분석자료는 有形資産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特別償却에 대한 정보는 구할 수 없다. 즉 特別償却額은 損益計算書에 있는 특별손실 항목의 한 부분이나 特別償却額에 대한 독립적 자료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國稅廳 집계자료에는 특별손실 항목과 特別償却에 대한 항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별손실에서 特別償却이 차지하는 비율을 사용하였다. <附表 I-2>는 業種別로 이 비율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附表 I-2> 業種別 特別損失에서 特別償却의 比率

(單位: %)

業 種	比 率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20.0
광업	72.1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48.1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55.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6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출판	41.1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78.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51.4
제1차 금속산업	79.3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1.0
기타 제조업	72.5
전기·가스 및 증기업	98.4
건설업	64.7
도소매, 숙박업	79.0
운수 창고 및 통신업	71.3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81.9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46.9

## 2. 土地를 포함한 固定資産의 分布

〈附表 I-3〉은 토지를 포함한 固定資産의 종류별 분포를 업종에 따라 분류하여 보여준다. 固定資産은 크게 有形資産과 無形資産으로 나뉘고 有形資産은 다시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으로 나뉜다. 이

〈附表 I-3〉 業種別 固定資産의 分布實態

(單位: %)

業 種	固 定 資 産	有 形 資 産	有 形 資 産				無 形 資 産
			土 地	建 物	機 械 裝 置	車 輛 運 搬 具	
1. 어업	100.0	99.4	15.8	11.4	4.6	62.8	0.6
2. 광업	100.0	88.1	14.7	39.5	17.2	13.4	11.9
3. 제조업	100.0	98.6	20.8	29.2	40.1	2.2	1.4
3.1 음식료품	100.0	98.7	23.2	31.0	30.3	4.2	1.3
3.2 섬유, 의복 및 가죽	100.0	99.7	31.5	25.6	36.1	1.8	0.3
3.3 목재 및 나무제품	100.0	99.7	37.1	32.6	20.3	2.8	0.3
3.4 종이 및 인쇄, 출판	100.0	99.8	25.9	28.1	38.6	1.7	0.2
3.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100.0	99.3	22.2	27.3	43.9	1.8	0.7
3.6 비금속광물제품	100.0	98.5	16.6	31.9	40.0	6.3	1.5
3.7 제1차금속	100.0	98.8	14.9	26.7	54.1	1.3	1.2
3.8 조립금속제품 기기 및 장비	100.0	97.4	17.5	31.9	36.5	1.7	2.6
3.9 기타제조업	100.0	99.4	32.2	30.3	20.7	4.3	0.6
4. 전기·가스 및 증기업	100.0	99.6	4.7	54.5	29.6	0.2	0.4
5. 건설업	100.0	96.0	25.5	21.0	9.6	4.4	4.0
6. 도소매, 숙박업	100.0	99.1	42.0	31.1	5.8	13.3	0.9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00.0	99.2	9.8	8.7	36.7	42.3	0.8
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00.0	97.3	41.4	43.2	5.0	1.7	2.7
9.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100.0	88.7	33.5	34.8	9.0	1.7	11.3
全 體	100.0	98.5	20.5	28.5	32.8	8.9	1.5

들 종류별 자산 비율을 固定資産 대비로 살펴본다. 전체적으로 有形資産이 9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有形資産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9%로 절반을 차지하고 차량을 포함한 기계장치가 41.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減價償却 대상이 아닌 토지는 20.5%를 차지하고 있다.

業種別로 固定資産의 분포특징을 살펴보면 도소매 및 숙박업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종의 土地所有 비중이 가장 높아 42%,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종이 보유한 건물의 비중도 가장 높게 나타나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보여준다. 반면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차지하는 부동산의 비중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不動産 보유비중은 전체 평균수준과 비슷한 추세를 보여준다. 기계장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가장 높아 40%로 나타나는데 제조업 중에서도 제1차 금속업이 54%로 비중이 가장 높다. 반면 어업, 도소매·숙박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은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기계장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차량의 경우 62.8%로 어업이 가장 높아 선박의 중요성을 알 수 있고,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42.3%를 차지한다. 제조업의 경우는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2.2%에 불과하여 높지 않은 비중을 보여준다.

〈附表 I-4〉는 土地를 포함한 종류별 固定資産이 業種別로 어떻게 분포되었는가를 나타내는데 전체 固定資産을 기준(100)으로 각 업종에서 보유한 비율을 보여준다. 제조업이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固定資産 중에서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종류의 자산에서 비슷한 비중을 보여준다. 그러나 차량의 경우는 14.5%로 낮게 나타났고, 機械裝置의 경우는 73%로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종 중에서도 조립금속제품기기 및 장비업종이 가장 높은 자산 비중을 보여준다.



〈附表 I-5〉 土地를 除外한 減價償却 對象 固定資産의 業種別 分布實態

(單位: %)

業 種	固定 資産	有形 資産		無形 資産	
		建 物	機械裝置		
1. 어업	100.0	99.3	14.4	84.9	0.7
2. 광업	100.0	85.5	48.2	37.3	14.5
3. 제조업	100.0	98.1	40.1	58.0	1.9
3.1 음식료품	100.0	98.0	46.4	51.6	2.0
3.2 섬유, 의복 및 가죽	100.0	99.6	40.2	59.4	0.4
3.3 목재 및 나무제품	100.0	99.4	58.2	41.2	0.6
3.4 종이 및 인쇄, 출판	100.0	99.6	40.9	58.8	0.4
3.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100.0	99.1	37.0	62.1	0.9
3.6 비금속광물제품	100.0	98.1	40.0	58.1	1.9
3.7 제1차금속	100.0	98.6	32.0	66.5	1.4
3.8 조립금속제품 기기 및 장비	100.0	96.4	43.9	52.5	3.6
3.9 기타제조업	100.0	99.0	54.3	44.7	1.0
4. 전기·가스 및 증기업	100.0	99.5	64.3	35.2	0.5
5. 건설업	100.0	89.6	53.7	35.9	10.4
6. 도소매, 숙박업	100.0	98.3	60.9	37.3	1.7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00.0	99.1	9.8	89.3	0.9
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00.0	95.0	82.1	12.8	5.0
9. 오락 및 문화예술서비스업	100.0	80.1	61.3	18.8	19.9
全 體	100.0	97.9	39.7	58.2	2.1

〈附表 I - 6〉業種別 減價償却 規模의 實態

(單位: 百萬元)

業 種	固定資産	總減價 償却	一 般 償 却	減價 償却		特別償却
				償却 1	償却 2	
1. 어업	538661	92298	91863	89701	2162	435
2. 광업	947261	101029	90114	86842	3272	10915
3. 제조업	73851479	10115018	9452669	8713152	739517	662349
3.1 음식료품	5269079	672301	629165	485175	143990	43136
3.2 섬유, 의복 및 가죽	7620398	1001076	925861	825045	100816	75215
3.3 목재 및 나무제품	553880	70771	60643	48320	12323	10128
3.4 종이 및 인쇄·출판	2951771	307561	298700	268269	30431	8861
3.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14119871	1770948	1613808	1487495	126313	157140
3.6 비금속광물	4834980	573623	541801	511005	30796	31822
3.7 제1차금속	12250020	1973452	1876378	1847660	28718	97074
3.8 조립금속제품 기기 및 장비	25835662	3684894	3455154	3201310	253844	229740
3.9 기타제조업	415816	60393	51158	38873	12285	9235
4. 전기·가스 및 증기업	12392678	1559785	1362311	1326055	36256	197474
5. 건설업	6118965	577292	475040	296967	178073	102252
6. 도소매, 숙박업	8339926	712717	592241	185341	406900	120476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9005688	2640390	2491358	2433272	58086	149032
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842517	75158	67859	16175	51684	7299
9.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708232	67578	62322	21603	40719	5256
합 計	122745405	15941264	14685776	13169108	1516668	1255488

〈附表 I - 7〉 減價償却額의 業種別 分布實態

(單位: %)

業 種	總 減 價 償 却	一 般 償 却	減 價		特 別 償 却
			償 却 1	償 却 2	
1. 어업	100.0	99.5	97.2	2.3	0.5
2. 광업	100.0	89.2	86.0	3.2	10.8
3. 제조업	100.0	93.5	86.2	7.3	6.5
3.1 음식료품	100.0	93.6	72.2	21.4	6.4
3.2 섬유, 의복 및 가죽	100.0	92.5	82.4	10.1	7.5
3.3 목재 및 나무제품	100.0	85.7	68.3	17.4	14.3
3.4 종이 및 인쇄, 출판	100.0	97.1	87.2	9.9	2.9
3.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100.0	91.1	84.0	7.1	8.9
3.6 비금속광물제품	100.0	94.5	89.1	5.4	5.5
3.7 제1차금속	100.0	95.1	93.6	1.5	4.9
3.8 조립금속제품기기 및 장비	100.0	93.8	86.9	6.9	6.2
3.9 기타제조업	100.0	84.7	64.4	20.3	15.3
4. 전기·가스 및 증기업	100.0	87.3	85.0	2.3	12.7
5. 건설업	100.0	82.3	51.4	30.8	17.7
6. 도소매, 숙박업	100.0	83.1	26.0	57.1	16.9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00.0	94.4	92.2	2.2	5.6
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00.0	90.3	21.5	68.8	9.7
9. 오락 및 문화예술서비스업	100.0	92.2	32.0	60.3	7.8
全 體	100.0	92.1	82.6	9.5	7.9

\* 減價償却 1: 製造原價明細書의 減價償却額

減價償却 2: 損益計算書의 減價償却額

〈附表 I - 8〉 減價償却額의 資産別 分布

(單位: 百萬元)

區 分	有形資産			總 減價 償却	一般 償却		特別償却		
					機械	建物		機械分	建物分
1. 어업	510145	446313	63832	92298	88512	3351	435		
2. 광업	794853	377516	417337	101029	69900	20214	10915		
3. 제조업	67585114	42574237	25010877	10115018	8186458	1266211	662349		
3.1 음식료품	4580832	2603228	1977604	672301	523589	105576	43136		
3.2 섬유, 의복 및 가죽	7133513	4508847	2624666	1001076	804160	121701	75215		
3.3 목재 및 나무제품	496886	227021	269865	70771	46079	14564	10128		
3.4 종이 및 인쇄, 출판	2748767	1703618	1045149	307561	258445	40255	8861		
3.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13349271	8772001	4577270	1770948	1423459	190349	157140		
3.6 비금속광물제품	4569257	2854700	1714557	573623	469411	72390	31822		
3.7 제1차금속	11894286	8455744	3438542	1973452	1693705	182673	97074		
3.8 조립금속제품 기기 및 장비	22463887	13256775	9207112	3684894	2909583	545571	229740		
3.9 기타제조업	348415	174499	173916	60393	40222	10936	9235		
4. 전기·가스 및 증기업	11116145	4411963	6704182	1559785	966137	396174	197474		
5. 건설업	3125578	1417293	1708285	577292	355755	119285	102252		
6. 도소매, 숙박업	7303166	2983321	4319845	712717	433688	158553	120476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8529899	16883924	1645975	2640390	2431578	59780	149032		
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729150	117196	611954	75158	27875	39984	7299		
9.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504615	140067	364548	67578	36055	26267	5256		
승 計	110198665	69493290	40705375	15941264	12737417	1948359	1255488		

〈附表 I - 9〉 資產 및 業種間 減價償却額의 分布實態

(單位: %)

業 種	總減價 償却	一般償却			特別償却
		一般償却	機械分	建物分	
1. 어업	100.00	99.53	95.90	3.63	0.47
2. 광업	100.00	89.20	69.19	20.01	10.80
3. 제조업	100.00	93.45	80.93	12.52	6.55
3.1 음식료품	100.00	93.58	77.88	15.70	6.42
3.2 섬유, 의복 및 가죽	100.00	92.49	80.33	12.16	7.51
3.3 목재 및 나무제품	100.00	85.69	65.11	20.58	14.31
3.4 종이 및 인쇄, 출판	100.00	97.12	84.03	13.09	2.88
3.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100.00	91.13	80.38	10.75	8.87
3.6 비금속광물제품	100.00	94.45	81.83	12.62	5.55
3.7 제1차금속	100.00	95.08	85.82	9.26	4.92
3.8 조립금속제품 기기 및 장비	100.00	93.77	78.96	14.81	6.23
3.9 기타제조업	100.00	84.71	66.60	18.11	15.29
4. 전기·가스 및 증기업	100.00	87.34	61.94	25.40	12.66
5. 건설업	100.00	82.29	61.62	20.66	17.71
6. 도소매, 숙박업	100.00	83.10	60.85	22.25	16.90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00.00	94.36	92.09	2.26	5.64
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00.00	90.29	37.09	53.20	9.71
9.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100.00	92.22	53.35	38.87	7.78
全 體	100.00	92.12	79.90	12.22	7.88

## 附錄 Ⅱ. 減價償却資産의 耐用年數에 대한 調査表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한 조사표

승인번호  
제 03401 호

조사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분류번호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조세연구원은 감가상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감가상각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실질적인 사용연수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에서 답변하신 자료는 향후 감가상각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중요 정책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8조에 의거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절대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표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타 연락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락처 ■

☞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부 경제조사과 이계윤 대리

TEL: 316 - 3439, FAX: 754 - 5785

☞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 박사

TEL: 578 - 8438, FAX: 574-9183, 573-3698

## 설문지의 구조

본 설문지는 설문지 A, 설문지 B, 설문지 C, 설문지 D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문지의 종류와 관계없이 설문에 대한 답변은 응답자 한 분이 직관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설문문항과 관련 있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 설문지 A

- 기업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의 질문
- 감가상각 및 중고자산의 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의 질문

### 설문지 B

- 기계장치 이외의 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한 질문

### 설문지 C

-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에 대한 질문

### 설문지 D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별 기계장치의 구분
- 구분된 기계장치의 용도와 내용연수에 대한 질문

◎ 응답자에 대한 자료(응답자 중에서 대표로 한 명만).

성 명 \_\_\_\_\_, 소속부서 \_\_\_\_\_

직 위 \_\_\_\_\_, 전화번호 \_\_\_\_\_

## 설문지 A

-설문지 A는 모든 업체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포함하고 있는 질문은 기업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감가상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질문의 보기 중에 귀사의 고견과 일치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이 해 주시고, 꼭 한 사람이 모두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응답요령은 해당번호의 ( ) 안에 V표시, 또는 해당 수치를 적어주십시오.

## 1. 귀사의 일반적인 사항 (1993년 결산일 기준)

1-1. 연간 매출액 \_\_\_\_\_ 백만원

1-2. 종업원 수 \_\_\_\_\_ 명

## 2. 세법상의 내용연수에 대한 의견

2-1.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는 세법에서 규정한 자산의 내용연수가 실제 수명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1-1. 기계장치의 경우

- (1) 너무 짧다. ( ) (2) 조금 짧다. ( ) (3) 적당하다. ( )  
 (4) 조금 길다. ( ) (5) 너무 길다. ( )

- 2-1-2. 건물, 건물 부속설비, 공구, 비품, 차량 및 운반구의 경우  
 (1) 너무 짧다. ( ) (2) 조금 짧다. ( ) (3) 적당하다. ( )  
 (4) 조금 길다. ( ) (5) 너무 길다. ( )

2-2. 현행 법인세법은 내용연수를 자산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는 현행 내용연수의 자산별 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2-1. 기계장치의 경우  
 (1) 너무 세분화되었다. ( ) (2) 조금 세분화되었다. ( )  
 (3) 적당하다. ( ) (4) 조금 단순화되었다. ( )  
 (5) 너무 단순화되었다. ( )

- 2-2-2. 건물, 건물 부속설비, 공구, 비품, 차량 및 운반구의 경우  
 (1) 너무 세분화되었다. ( ) (2) 조금 세분화되었다. ( )  
 (3) 적당하다. ( ) (4) 조금 단순화되었다. ( )  
 (5) 너무 단순화되었다. ( )

### 3. 중고자산의 처리방법

3-1. 귀사에서 사용하는 기계 및 장비를 중고품으로 판매한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 ) (2) 없다. ( ) ---> 질문 (3-3)으로 가시오.

3-2. 3-1번 질문에서 (1)에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자산의 수명이 끝났기 때문 ( )  
 (2) 사용하는 자산에 물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 ( )  
 (3) 사용하는 자산에 물리적 문제가 없어도 구형이기 때문 ( )  
 (4) 기타의 이유 때문 ( ) ---> 아래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3. 귀사에서 수명이 다한 기계 및 장비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3-3-1. 중고품으로 팔 경우 보통 구입가격의 몇 %를 받습니까? %

3-3-2. 폐기품을 처분하기 위해 비용이 든다면 구입가격의 몇 %가 필요합니까? %

3-4. 귀사에서 사용하는 기계 및 장비 중에서 중고품으로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1) 있다. ( ) (2) 없다. ( ) → 설문 (3-5)는 응답하지 마십시오.

3-5. 3-4번 질문에서 (1)항에 응답하셨다면 귀사에서 사용하는 기계 및 장비 중에서 몇 %가 중고품으로 구입한 것입니까? (장부가액 대비 비율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4. 귀사에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 정률법 ( ) (2) 정액법 ( )

## 설문지 B

-설문지 B는 모든 업체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들은 법인세법에 있는 자산별 내용연수에 대해 기업이 실제로 판단하고 있는 내용연수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자산에 대한 세법상 내용연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각 자산의 실제 내용연수를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음 사항을 잘 숙독하여 주십시오.

- 본 설문은 기업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라는 자산의 세법상 내용연수가 5년이나 실제 기업에서 사용한 결과 이 자산의 내용연수는 4년에 불과하였다면 내용연수를 4년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제 내용연수도 개념상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물리적 내용연수: 자산의 실제 수명을 의미하며 '노령화'를 의미함.

(2) 경제적 내용연수: 자산의 수명은 있으나 기술개발로 인해 사용가능한 수명으로 '진부화'를 의미함.

- 본 조사에서 요구하는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의 경우 8비트 컴퓨터는 물리적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이나 실제로는 1~2년 이내에 16비트 컴퓨터로 교환하므로 8비트용 컴퓨터의 경제적 내용연수는 2년 미만입니다. 즉 컴퓨터의 노령화 연령(물리적 내용연수)을 기입하지 마시고 진부화 연령(경제적 내용연수)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설문지 B의 구조는 대별하여 다음의 5개 문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건물
2. 건물부속설비
3. 차량 및 운반구
4. 공구
5. 기구 및 비품

1. 건물의 종류별 내용연수를 묻는 문항입니다. 아래 표를 잘 보시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표 또는  안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區 分	建物の 種類別 區分에 따른 耐用年數 (單位: 年)					
	(1) 철근 콘크리트 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연와 석조 및 블록조	(3) 철골조	(4) 토벽조	(5) 목조	(6) 목골목탈조
1-1. 사무소, 점포, 주택과 1-2~1-4 이외 용도의 건물						
1-2. 여관, 일반호텔, 요리점, 대석, 극장, 영화관, 무도장, 병원, 학교, 체육관, 기숙사 및 아파트용 건물						
1-3. 영화제작용 스테이지, 실내 스케이트장, 어시장 및 공중목욕탕용 건물						
1-4. 발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 및 차고용 건물 중에서						
1-4-1. 곡약 등을 사용하는 공장으로서 부식하기 쉬운 건물 및 냉장 창고용 건물						
1-4-2. 염·칠레초석 기타 조해성이 있는 고체를 상시 장치하기 위한 건물						
1-4-3.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외의 창고용 건물						

1-5. 간이목조 또는 간이 목골목탈조

년

2. 건물 부속설비의 내용연수를 묻는 문항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자산의 내용연수를  안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 2-1. 전기설비  년
- 2-2. 급배수, 위생설비 또는 가스설비  년
- 2-3. 냉방, 난방, 통풍 또는 보일러 설비  년
- 2-4. 승강기설비  년

3. 차량 및 운반구의 내용연수를 묻는 문항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자산의 내용연수를  안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3-1. 운송사업용 · 자동차대여사업용 또는 자동차교습소용의 차량 및 운반구(전계의 것을 제외한다)

- 3-1-1. 승용자동차(이륜 또는 삼륜자동차 포함)  년
- 3-1-2. 승합자동차  년
- 3-1-3. 운송사업용 택시  년
- 3-1-4. 자전거 및 리어카  년
- 3-1-5. 견인차  년

3-2. 3-1.의 경우가 아닌 일반 업무용 차량 및 운반구

(예를 들면 통근버스, 상품수송용 트럭, 업무용 승용차 등)

- 3-2-1. 승용차(이륜 또는 삼륜자동차를 포함)  년
- 3-2-2. 화물차  년
- 3-2-3. 승합차  년
- 3-2-4. 자전거  년

3-2-5. 광산용인차, 탄차, 광차 및 대차 중에서

가. 금속제인 것  년      나. 비금속제인 것  년

3-2-6. 도록크 중에서

가. 금속제인 것  년      나. 비금속제인 것  년

4. 공구의 내용연수를 묻는 문항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자산의 내용연수를  안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가. 활자  년      나. 금형  년

5.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묻는 문항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자산의 내용연수를  안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5-1.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및 가정용품(5-2.~5-6.항 이외의 것)

5-1-1. 사무용탁자, 의자 및 캐비닛

가. 주로 금속제인 것  년      나. 비금속제인 것  년

5-1-2. 응접세트  년

5-1-3. 침대  년

5-1-4. 진열장  년

5-1-5. 라디오, 텔레비전, 테이프 레코더 기타의 음향기기  년

5-1-6. 냉방용 또는 온방용기기  년

5-1-7.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또는 가스기기  년

5-1-8. 냉장고 및 냉장스독카(전기식인 것을 제외한다)  년

5-1-9. 자동판매기(수동의 것을 포함한다)  년

5-1-10. 커튼, 방석, 침구 기타 이에 유사한 섬유 제품  년

- 5-1-11. 용단 및 기타 床用物  년
- 5-1-12. 실내장식용  년
- 5-1-13. 식사 또는 주방용품  년
- 5-2.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 5-2-1. 개인용 컴퓨터  년
- 5-2-2.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
- 가. 팩시밀리 및 데이터 단말장치  년
- 나. 전화기기 및 전화 교환설비  년
- 5-3. 시계·시험기기 및 측정기기
- 5-3-1. 시계  년
- 5-3-2. 도량형기  년
- 5-3-3. 시험 또는 측정기기
- 가. 도자기제·유리제인 것  년
- 나. 주로 금속제인 것  년
- 5-4. 광학기기 및 사진 제작기  년
- 5-5. 간판 및 광고기구
- 5-5-1. 간판, 네온사인 및 기구  년
- 5-5-2. 마네킹 인형 및 모형  년
- 5-6. 용기 및 금고
- 5-6-1. 봄베
- 가. 용접제의 것  년      나. 단조제의 것  년
- 5-6-2. 드럼관, 컨테이너, 기타의 용기  년
- 5-6-3. 手埴금고  년

## 설문지 C

- 설문지 C는 해당업종별 질문입니다.
- 아래의 업종 중에서 해당되는 업종을 1개 또는 2개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해당업종이 2개 이상일 때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규모가 큰 업종부터 2개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응답요령은 선택한 업종에 한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끝나면 설문지 D로 가십시오. 귀사와 관계없는 업종에 대한 자산과 해당업종 중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산의 내용연수는 답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아래 업종 중에서 해당업종 번호를 1개 또는 2개만 괄호 안에 적어 주십시오.( ) ( )

- |                       |                     |
|-----------------------|---------------------|
| (1) 금속 광업             | (14) 기타의 기계류 제조업    |
| (2) 비금속 광업            | (15) 의약품, 농약 제조업    |
| (3) 석면 광업             | (16) 비료 제조업         |
| (4) 석탄 광업             | (17) 무기공업제품 제조업     |
| (5) 석유 광업 설비          | (18) 유기공업제품 제조업     |
| (6) 철강업               | (19) 화학섬유 제조업       |
| (7) 비철금속 제조업          | (20) 유지가공제품 제조업     |
| (8) 금속제품 제조업          | (21) 화약류 제조업        |
| (9) 기계 제조업            | (22) 도료, 염료 등 제조업   |
| (10)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23) 기타의 화학공업       |
| (11) 수송용기계 제조업        | (24) 석유제품, 석탄제품 제조업 |
| (12) 제탕기 및 기타광학기계 제조업 | (25) 고무제품 제조업       |
| (13) 무기 제조업           | (26) 제혁, 혁제품 제조업    |

- |                   |            |
|-------------------|------------|
| (27) 요업, 토석제품 제조업 | (34) 건설업   |
| (28) 섬유공업         | (35) 운수통신업 |
| (29) 목재, 목제품 제조업  | (36) 전기업   |
| (30) 펄프지, 지공품 제조업 | (37) 가스업   |
| (31) 인쇄, 제본, 출판업  | (38) 서비스업  |
| (32) 식료 제조업       | (39) 수산업   |
| (33) 기타 제조업       | (40) 기타 산업 |

2. 업종별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안에 기입하십시오.

2-1. 금속 광업

금속광업설비(광업권을 제외하고 광산용 사택과  
갱도(坑道)포함, 架空索道 설비 포함)  년

2-2. 비금속 광업

2-2-1. 유황광업설비(광업권을 제외하고 광산용 사택,  
갱도(坑道)와 모래 채취용 자산 포함, 제련 또는 架空索道  
설비 포함)  년

2-2-2. 기타의 비금속 광업 설비  년

2-3. 석면 광업

석면 광업 설비(광업권을 제외하고 광산용 사택과  
갱도(坑道)포함)  년

2-4. 석탄 광업(아탄 포함)

석탄 광업 설비(광업권을 제외하고 광산용 사택,  
갱도(坑道)와 토석 채취용 자산 포함, 架空索道 설비 포함)  년

2-5. 석유 광업

2-5-1. 석유 광업 설비  
(가) 굴착용(掘鑿用) 기계·기구 또는 굴착용(掘鑿用)  년

및 충착용(充鑿用) 철관

(나) 탱크  년

(다) 기타(광업권과 갱도(坑道) 제외)  년

2-6. 철강업

2-6-1. 제선설비  년

2-6-2. 제강설비  년

2-6-3. 철강 단조설비  년

2-6-4. 철강구조 및 철구조물 제조설비  년

2-6-5. 합금철 제조설비  년

2-6-6. 연속주조 및 강편 제조설비  년

2-6-7. 열간 압연설비  년

2-6-8. 냉간압연 또는 냉간성형설비  년

2-6-9. 강관 제조설비  년

2-6-10. 철강신선 및 연선 제조설비  년

2-6-11. 철강 열처리설비  년

2-6-12. 철강 표면처리설비  년

2-6-13. 기타의 철강업용 설비  년

2-7. 비철금속 제조업

2-7-1. 비철금속 제련설비  년

2-7-2. 비철금속 압연·압출 또는 신선설비  년

2-7-3. 비철금속 주물 제조설비  년

2-7-4. 광통신 케이블 제조설비  년

2-7-5. 기타의 설비  년

2-7-6. 금속분말 또는 박(압연에 의한 것 제외) 제조설비  년

2-7-7. 분말야금 제품 제조설비  년

2-8. 금속제품 제조업

2-8-1.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류 제조설비  년

- 2-8-2. 재봉기 제조설비  년
- 2-8-3. 재봉기 부분품과 동부속품 제조설비  년
- 2-8-4. 펌프 제조설비  년
- 2-8-5. 농업용 기구 제조설비  년
- 2-8-6. 못·나사, 리베트 또는 스프링 제조용 설비  년
- 2-8-7. 금속제 식탁용 제조설비  년
- 2-8-8. 도금설비  년
- 2-8-9. 기타의 금속제품 제조설비  년

### 2-9. 기계 제조업

- 2-9-1. 보일러 제조설비  년
- 2-9-2. 엔진·터빈 또는 수차 제조설비  년
- 2-9-3. 건설기계·광산기계·원동기 제조설비  년
- 2-9-4. 금속공작기계 제조설비  년
- 2-9-5. 강구 또는 베어링 및 동부분품 제조설비  년
- 2-9-6. 사무용기계 제조설비  년
- 2-9-7. 폐수처리기계 제조설비  년
- 2-9-8. 농업용기계 제조설비  년
- 2-9-9. 섬유기계 및 동부분품 제조설비  년
- 2-9-10. 기타의 기기 또는 부분품 부속품 제조설비  년

### 2-10. 전기기계 기구 제조업

- 2-10-1. 컴퓨터와 주변기기 및 동부분품 제조설비  년
- 2-10-2. 전자계측기·통신용기기·음성주파장치·영상주파장치  
기타의 전자용용기기와 동관련기기 및 동부분품  
제조설비  년
- 2-10-3. 전구·전자관 또는 방전등 제조설비  년
- 2-10-4. 건전지 제조설비(전기 제조설비 포함)  년
- 2-10-5. 카본블랙 제조설비  년

- 2-10-6. 반도체소자 및 동관련부품 · 반도체박판 · 반도체재료  
 제조설비  년
- 2-10-7. 인쇄회로기판 제조설비  년
- 2-10-8. 전기용접기 제조설비  년
- 2-10-9. 전용공구 제조설비 자동화설비  년
- 2-10-10. 기타의 전기기기 및 동부분품 제조설비  년
- 2-11. 수송용기계 제조업
- 2-11-1. 자동차 및 동부분품 제조설비  년
- 2-11-2. 철도용 및 궤도(軌道)용 차량 또는 동부분품 제조설비  년
- 2-11-3. 자전거 또는 동부분품 및 부속품 제조설비  년
- 2-11-4. 강선제조 및 수리설비  년
- 2-11-5. 목선제조 및 수리설비  년
- 2-11-6. 항공기 및 동부분품 제조설비  년
- 2-11-7. 기타의 운반수송용 기기 제조설비  년
- 2-12. 계량기 · 측정기 · 측정기계 · 의료기기 · 이화학기계  
· 광학기계 제조업
- 2-12-1. 시험기 · 측정기 또는 계량기 제조설비  년
- 2-12-2. 의료용 또는 이화학용기기 제조설비
- (가) 전자 · 전기식 의료기기 제조설비  년
- (나) 기타의 제조설비  년
- 2-12-3. 렌즈 · 광학기계 또는 동부분품 제조설비  년
- 2-13. 무기 제조업
- 총포 · 총탄 및 동부분품 제조설비  년
- 2-14. 기타의 기계류 제조업
- 2-14-1. 자동차 수리업용 설비  년
- 2-14-2. 기타의 기기 · 기구 · 부분품 또는 부속품 제조설비  년

2-15. 의약품·농약 제조업(화학공업)2-15-1. 의약품 제조설비  년2-15-2. 농약 제조설비  년2-16. 비료 제조업2-16-1. 암모니아 제조설비  년2-16-2. 황산 또는 초산 제조설비  년2-16-3. 기타의 화학비료 제조설비  년2-16-4. 배합비료 기타 비료 제조설비  년2-17. 무기공업 제품 제조업2-17-1. 소다회·염화암모늄·가성소다·가성가리 제조설비  년2-17-2. 황화소다·무수망초·청화소다·과산소다 제조설비  년2-17-3. 탄산마그네슘 제조설비  년2-17-4. 황산철·황화철 제조설비  년2-17-5. 취소·옥소·염소·취소 또는 옥소화합물 제조설비  년2-17-6. 불산기타의 불소화합물 제조설비  년2-17-7. 염화인 제조설비  년2-17-8. 인산 또는 황화인 제조설비  년2-17-9. 무수크롬산 제조설비  년2-17-10. 초산은 제조설비  년2-17-11. 카바이트 제조설비  년2-17-12. 활성탄 제조설비  년2-17-13. 기타의 무기화학약품 제조설비  년2-18. 유기공업제품 제조업

2-18-1. 염료 중간물 기타 코올탈 분류물 유도체 제조설비

(가) 피크린산 기타 폭약원료의 제조설비(니트로 글리세린

포함)  년(나) 기타(탈계 의약품 제조설비 포함)  년

- 2-18-2. 카프로락탐·시크로헥시논, 테레후탈산 및  
 톨루엔디소아네이트 제조설비  년
- 2-18-3. 석탄가스·오일가스 또는 석유를 원료로 하는 방향족  
 기타 화합물 분리·정제설비  년
- 2-18-4. 석유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에틸렌·프로필렌  
 ·부틸렌·부타디엔 또는 아세틸렌 제조설비  년
- 2-18-5. 탄화수소의 염화물·취화물 또는 불화물 제조설비  년
- 2-18-6. 메탄올·에탄올 또는 그 유도체 제조설비  
 (다른 항에 있는 것은 제외)  년
- 2-18-7. 기타의 알콜 또는 케톤 제조설비  년
- 2-18-8.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초산 제조설비  년
- 2-18-9. 시크로헥실아민 또는 시크로헥실설파민산염 제조설비  년
- 2-18-10. 올소토루엔설포아미드 또는 사카린 제조설비  년
- 2-18-11. 아민 또는 메라민 제조설비  년
- 2-18-12. 염산·석탄산 제조설비  년
- 2-18-13. 의산·수산·유산·주석산(주석산 염류포함)  
 ·호박산·구연산·탄닌산 또는 몰식자산 제조설비  년
- 2-18-14. 기타의 규기약품 제조설비  년
- 2-18-15. 염화비리덴계 수지·초산비닐계 수지  
 ·폴리에틸렌테레후타레이트계 수지·불소수지 또는  
 규소수지 제조설비  년
- 2-18-16. 기타의 합성수지 또는 합성고무 제조설비  년
- 2-19. 화학섬유 제조업
- 2-19-1. 재생인조섬유 제조설비  년
- 2-19-2. 반합성섬유 제조설비  년
- 2-19-3. 합성섬유 제조설비  년

2-20. 유지가공 제품 제조업

- 2-20-1. 비누 제조설비  년
- 2-20-2. 경화유 · 지방산 또는 글리세린 제조설비  년
- 2-20-3. 합성세제 또는 계면활성제 제조설비  년

2-21. 화약류 제조업

- 화약 및 폭약 제조설비  년

2-22. 도료 · 염료 등 제조업

- 2-22-1. 도료 및 잉크 제조설비  년
- 2-22-2. 염료 또는 안료 제조설비((1),(3),(4) 이외의 것)  년
- 2-22-3. 날염제 또는 표백제 제조설비((1),(2),(4) 이외의 것)  년
- 2-22-4. 시약 제조설비  년

2-23. 기타의 화학공업

- 2-23-1. 합성수지용 안정제 제조설비  년
- 2-23-2. 유기고무약품 · 사진약품 또는 인조향료 제조설비  년
- 2-23-3. 화장품 제조설비  년
- 2-23-4. 화공전분 제조설비  년
- 2-23-5. 카본블랙 제조설비  년
- 2-23-6. 접착제 제조설비  년
- 2-23-7. 젤라틴 · 아교 제조설비  년
- 2-23-8. 자기테이프 제조설비  년
- 2-23-9. 사진필름 기타 사진감광 제조설비  년
- 2-23-10. 기타의 화학공업 제품 제조설비  년

2-24. 석유제품 · 석탄제품 제조업

- 2-24-1. 석유정제 설비(폐유재생 또는 구리스유 제조설비)  년
- 2-24-2. 핏치 · 코크스 제조설비  년
- 2-24-3. 연탄 · 조개탄류 또는 탄소분말 제조설비  년

- 2-24-4.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 제조설비  년
- 2-25. 고무제품 제조업
- 2-25-1. 사고무 제조설비  년
- 2-25-2. 자동차용 고무타이어 제조설비  년
- 2-25-3. 기타 제품 제조설비  년
- 2-26. 제혁·혁제품 제조업
- 2-26-1. 제혁 설비  년
- 2-26-2. 혁제품 제조설비  년
- 2-27. 요업·토석제품 제조업
- 2-27-1. 판초자 제조설비
- (가) 용해로  년
- (나) 원료투입·제품절단  년
- (다) 기타의 설비  년
- 2-27-2. 기타의 초자제품 제조설비(광학초자 설비를 포함한다)
- (가) 도가니 또는 일일로  년
- (나) 기타의 설비  년
- 2-27-3. 도자기·점토제품 또는 내화물 제조설비
- (가) 도염요  년
- (나) 턴넬요  년
- (다) 기타의 요  년
- (라) 광물분쇄·탈철·탈수설비  년
- (마) 기타의 설비  년
- 2-27-4. 시멘트 제조설비
- (가) 생산설비 컨트롤시스템  년
- (나) 운전자동화설비  년
- (다) 기타의 설비  년

## 2-27-5. 기타의 시멘트제품 제조설비

(가) 이동식 제조 또는 가설설비 및 진동가압식 성형설비  년(나) 기타의 설비  년2-27-6. 석회 또는 고석회 제조설비  년

## 2-27-7. 석고보오드 제조설비

(가) 소성로  년(나) 기타의 설비  년

## 2-27-8. 정밀요업제품(파인세라믹스) 제조설비

(가) 소성로  년(나) 기타의 설비  년

## 2-27-9. 브라운관용 유리 제조설비

(가) 용해로  년(나) 기타의 설비  년

## 2-27-10. 기타의 요업제품 또는 토석제품 제조설비

(가) 소성로  년(나) 기타의 설비  년2-28. 섬유공업

## 2-28-1. 생사 제조설비

(가) 자동조사기  년(나) 기타의 설비  년2-28-2. 방적설비  년2-28-3. 합성섬유 신축가공사 제조설비  년2-28-4. 기타의 사제조업용 또는 연사업용설비  년2-28-5. 직물설비  년2-28-6. 메리야스 및 메리야스생지편·장갑 또는 양말  
제조설비  년

## 2-28-7. 모 또는 합성섬유제품사 또는 면상섬유 염색가공 설비

- (가) 압축용 전극판  년
- (나) 기타의 설비  년
- 2-28-8. 기타의 염색가공 또는 완성설비  년
- 2-28-9. 날염설비  년
- 2-28-10. 세모·탄화·양모톱·견랴페니·반모·제면·재생면  
제조설비  년
- 2-28-11. 망·강 또는 조뉴 제조설비  년
- 2-28-12. 레이스 제조설비
- (가) 랫셀레이스기  년
- (나) 기타의 설비  년
- 2-28-13. 헬트 또는 헬트 제품 제조설비  년
- 2-28-14. 봉제품 제조설비  년
- 2-28-15. 기타의 섬유제품 제조설비
- (가) 부직포 제조설비  년
- (나) 컴퓨터 전자자수기  년
- (다) 기타의 설비  년
- 2-29. 목재·목제품 제조업
- 2-29-1. 제재설비
- (가) 제재용 자동 송재장치  년
- (나) 목제품 제조설비  년
- (다) 기타의 설비  년
- 2-30. 펄프지·紙가공제품 제조업
- 2-30-1. 펄프 제조설비  년
- 2-30-2. 수제한지 제조설비  년
- 2-30-3. 기타의 제지설비  년
- 2-30-4. 가공지 제조설비  년

## 2-30-5. 지제품 제조설비

- (가) 사진설비  년  
 (나) 기타의 설비  년

## 2-31. 인쇄·제본 출판업

## 2-31-1. 일간 신문지 인쇄설비

- (가) 모노타이프·사진 또는 통신설비  년  
 (나) 기타의 설비  년

2-31-2. 인쇄설비  년2-31-3. 제본설비  년2-31-4. 사진 제판업용 설비  년2-31-5. 복사업용 설비  년

## 2-32. 식료 제조업

2-32-1. 식육·식조 또는 계란처리 가공설비  년2-32-2. 유처리 또는 유제품 제조설비(집유설비 포함)  년2-32-3. 발효유 또는 유산균음료 제조설비  년2-32-4. 수산연제품 또는 한천 제조설비  년2-32-5. 기타의 수산물 가공설비  년2-32-6. 과일 또는 소채처리 가공설비  년2-32-7. 통조림 제조설비  년2-32-8. 화학조미료 제조설비  년2-32-9. 식초 제조설비  년

## 2-32-10. 된장·간장류 또는 마요네즈 제조설비

- (가) 콘크리트제 사입조  년

- (나) 기타의 설비  년

2-32-11. 기타의 조미료 제조설비  년2-32-12. 정곡설비  년2-32-13. 제분설비  년

- 2-32-14. 면류 제조설비  년
- 2-32-15. 기타 농산물 가공설비  년
- 2-32-16. 사탕 제조설비  년
- 2-32-17. 수이포도당 또는 캐러멜 제조설비  년
- 2-32-18. 빵·과자류 제조설비  년
- 2-32-19. 제다(製茶)설비  년
- 2-32-20. 청량음료 제조설비  년
- 2-32-21. 맥주 제조설비  년
- 2-32-22. 청주 제조설비  년
- 2-32-23. 기타의 주류 제조설비  년
- 2-32-24. 기타의 음료 제조설비  년
- 2-32-25. 효모·효소·종균·맥아 제조설비  년
- 2-32-26. 동식물유지 제조 또는 정제설비  년
- 2-32-27. 냉동·제빙 또는 냉장업용 설비
  - (가) 결빙관 또는 동결팬  년
  - (나) 기타의 설비  년
- 2-32-28. 사료 제조설비  년
- 2-32-29. 두부류 기타 두류 처리가공설비  년
- 2-32-30. 기타의 식료품 제조설비  년
  
- 2-33. 기타의 제조업
  - 2-33-1. 악기 제조설비  년
  - 2-33-2. 레코드 제조설비  년
  - 2-33-3. 완구 제조설비
    - (가) 자동재단기  년
    - (나) 기타의 설비  년
  - 2-33-4. 만년필·샤프펜슬·연필·펜촉·볼펜 제조설비  년
  - 2-33-5. 회화용구 제조설비  년

- 2-33-6. 단추 제조설비  년
- 2-33-7. 코르크 또는 코르크제품 제조설비  년
- 2-33-8. 양초 제조설비  년
- 2-33-9. 고품품 제조설비  년
- 2-33-10. 진주양식 설비  년
- 2-33-11. 진주가공 설비  년
- 2-33-12. 가발 제조설비  년
- 2-33-13. 라이터 제조설비  년
- 2-33-14. 슬라이드화스너  년
- 2-33-15. 합성수지 성형가공 또는 합성수지제품 가공설비  년
- 2-33-16. 발포 폴리우레탄 제조설비  년
- 2-33-17. 섬유벽지 제조설비  년
- 2-33-18. 기타의 제조설비  년
- 2-34. 건설업
- 2-34-1. 불도저 · 파워쇼벨 · 기타의 자주식 작업용 기계설비  년
- 2-34-2. 기타의 건설 공업설비
- (가) 배사관 및 가반식 컨베이어  년
- (나) 디젤파일햄머  년
- (다) 아스팔트플랜트 및 배처플랜트  년
- (라) 기타의 설비  년
- 2-34-3. 측량업용 설비
- (가) 카메라  년
- (나) 기타의 설비  년
- 2-35. 운수통신업
- 2-35-1. 강삭철도 또는 가공삭도설비
- (가) 강삭  년
- (나) 기타  년

- 2-35-2. 석유 또는 액화가스 수입 판매설비  년
- 2-35-3. 휘발유 판매설비  년
- 2-35-4. 하역 또는 창고업용 설비
  - (가) 이동식 하역설비  년
  - (나) 기타의 설비  년
- 2-35-5. 국제전신전화 설비 또는 언론기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통신사의  
통신설비  년
- 2-35-6.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설비  년
- 2-35-7. 항공기의 조종훈련용 설비  년
- 2-35-8. 기타의 통신설비  년
  
- 2-36. 전기업
  - 2-36-1. 수력 발전설비  년
  - 2-36-2. 화력 및 원자력 발전설비  년
  - 2-36-3. 내연력 또는 가스터빈 발전설비  년
  - 2-36-4. 송전·전기사업용 변전 또는 배전설비
    - (가) 수요자용 계기  년
    - (나) 주상변압기  년
    - (다) 기타의 설비  년
  - 2-36-5.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변전설비  년
  - 2-36-6. 축전지 전원설비  년
  
- 2-37. 가스업
  - 2-37-1. 석탄가스·석유가스 또는 코크스 제조설비  년
  - 2-37-2. 가스 정제설비  년
  - 2-37-3. 가스사업용 공급설비
    - (가) 가스도관  년
    - (나) 주철제  년

- (다) 기타  년
- (라) 수요자용 계량기  년
- (마) 기타의 설비  년
- 2-38. 서비스업
- 2-38-1. 호텔·여관·요리점업용 설비
- (가) 인탕관  년
- (나) 기타의 설비  년
- 2-38-2. 크리닝 설비  년
- 2-38-3. 공중욕장 설비
- (가) 솔·온수기  년
- (나) 기타의 설비  년
- 2-38-4. 영화제작 설비(현상설비 제외)
- (가) 조명설비  년
- (나) 촬영 또는 녹음설비  년
- (다) 기타의 설비  년
- 2-38-5. 사진현상·소부설비
- (가) 천연색 사진설비  년
- (나) 기타 사진설비  년
- 2-38-6. 영화 또는 연극홍행설비
- (가) 조명설비  년
- (나) 기타의 설비  년
- 2-38-7. 유원지용 유희설비  년
- 2-38-8. 종묘 원예설비  년
- 2-38-9. 산업폐기물 처리설비
- (가) 소각시설  년
- (나) 용해시설  년
- (다) 중화시설  년

(라) 기타 부속시설  년

2-39. 수산업

2-39-1. 어선(선박법 제7조 내지 제25조의 적용을 받는 강선 및 합성수지선)

(가) 총톤수 100톤 이상의 것 원양선(포경선·탐경선·예경선·참치선 등)  년

(나) 100톤 이상의 선박 중에 기타의 것  년

(다) 총톤수100 톤미만의 것 원양선(포경선·탐경선·예경선·참치선 등)  년

(라) 100톤 미만의 선박 중에 기타의 것  년

(마) 목선  년

2-39-2. 어선(선박법 제7조 내지 제25조의 적용을 받는 목선)  년

2-39-3. 기타의 어선

(가) 강선 및 합성수지  년

(나) 목선  년

2-39-4. 어구  년

2-40. 기타 산업 (문1에서 문39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

2-40-1.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입니까? \_\_\_\_\_

2-40-2. 기타의 사업설비

(가) 주로 금속제인 것  년

(나) 비금속제인 것  년

## 설문지 D

1. 다음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구분입니다. 귀사는 아래 업종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비중이 큰 업종 순으로 1개 또는 2개만 선택하여 괄호 안에 해당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 ( )

- |                            |                           |
|----------------------------|---------------------------|
| (1) 농업, 수렵업 및 임업           | (16) -제1차 금속산업            |
| (2) 어업                     | (17)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 (3) 광업                     | (1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제조업 중에서                    | (19)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 제조업  |
| (4) -음식료품 제조업              | (20) -기타 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제조업   |
| (5) -담배 제조업                | (21)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6) -섬유제품 제조업              | (22) -의료, 정밀, 광학기기·시계 제조업 |
| (7)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2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8)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제조업  | (2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25) -가구 및 기타 제조업         |
| (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6)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
| (11)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27)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 (12)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28) 건설업                  |
| (1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9)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 (1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30) 숙박 및 음식점업            |
| (1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31)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                            | (32) 금융 및 보험업             |
|                            | (33)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                            | (34) 교육서비스업               |
|                            | (35) 보건업                  |
|                            | (36)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2.

- 1번 설문에서 선택한 업종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기계장치의 종류를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한 기계장치에 대한 경제적 내용연수와 용도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본 항목은 감가상각제도의 개선을 위해 특히 중요한 만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 선택업종 ( )

---> ( ) 안에 1번문항에서 첫번째로 선택한 업종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기계장치의 종류	기계장치의 용도	경제적 내용연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선택업종이 1개였다면 다음 페이지의 2-2번 질문은 생략하십시오.

2-2. 선택업종 ( )

---> ( ) 안에 1번 문항에서 두번째로 선택한 업종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기계장치의 종류	기계장치의 용도	경제적 내용연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3. 현행 세법상 감가상각제도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끝까지 응답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附錄 Ⅲ. 美國 耐用年數와의 比較를 위한 資産區分의 根據

자산별 耐用年數를 미국과 비교하기 위해 각 資産區分에 해당하는 자산종류를 분류하였다. 이때 각 자산의 耐用年數는 해당하는 자산들의 단순평균을 사용하였다. 물론 이상적인 자료로는 자산종류별로 보유한 액수에 따른 비율을 사용한 가중평균을 사용하여야 하나 현재로는 이러한 자료가 없다. 각 資産區分別 취합한 자산종류에 대한 구체적 사항과 계산근거는 다음과 같다.

#### 1. 가구 및 내부시설 : 7.06

(1) 사무용탁자, 의자 및 캐비닛 주로 금속제인 것	
(가) 주로 금속제인 것	10
(나) 기타의 것	5
(2) 응접세트	8
(3) 침대	8
(4) 진열장 또는 진열케이스	5
(5) 기타의 가구	
(가) 주로 금속제인 것	10
(나) 기타의 것	5
(6) 커튼, 방석, 침구 기타 이에 유사한 섬유 제품	3
(7) 용단 기타의 상용품	
(가) 접객업용, 방송용레코드 취급 또는 극장용	3
(나) 기타의 것	6
(8) 실내장식용	
(가) 주로 금속제인 것	15
(나) 기타의 것	5
(9) 식사 또는 주방용품	
(가) 도자기 또는 유리제의 것	2
(나) 기타의 것	5
(10) 기타의 것	

(가) 주로 금속제인 것	15
(나) 기타의 것	8
<b>2. 조립금속제품 : 6.22</b>	
<b>1. 공구</b>	
(1) 활자	2
(2) 금형	2
(3) 기타	
(가) 주로 금속제인 것	6
(나) 기타의 것	3
<b>2. 용기 및 금고</b>	
(1) 불베	
(가) 용접제의 것	6
(나) 단조제의 것	8
(2) 드럼관, 컨테이너, 기타의 용기	3
(3) 금고	
(가) 수제금고	6
(나) 기타의 것	20
<b>3. 엔진 및 터빈</b>	
<b>4. 트랙터</b>	
<b>5. 농업용 기계 : 5</b>	
<b>6. 건설용 기계 : 4.71</b>	
<b>1. 건설업</b>	
(1) 불도저·파워쇼벨·기타의 자주식 작업용 기계설비	5
(2) 기타의 건설공업설비	
(가) 배사관 및 가반식 컨베이어	3
(나) 디젤과일햄머	4
(다) 아스팔트플랜트 및 배처플랜트	4
(라) 기타의 설비	6
(3) 측량업용설비	

(가) 카메라	5
(나) 기타의 설비	6

## 7. 광산 및 유전용 기계 : 6.6

<b>1. 차량 및 운반구</b>	
(1) 광산용인차, 탄차, 광차 및 대차	
(가) 금속제인 것	6
(나) 기타의 것	4
<b>2. 금속광업</b>	
(1) 금속광업설비	7
(가공색도설비 포함)	
<b>3. 비금속광업</b>	
(1) 유황광업설비	6
(제련 또는 가공색도 설비 포함)	
(2) 기타의 비금속광업설비	7
<b>4. 석면광업</b>	
(1) 석면광업설비	7
<b>5. 석탄광업(아탄을 포함한다)</b>	
(1) 석탄광업설비	5
(가공색도설비 포함)	
<b>6. 석유광업</b>	
(1) 석유광업설비	
(가) 굴착용 기계·기구 또는 굴착용 및 총작용 철관	4
(나) 탱크	12
(다) 기타	8

## 8. 금속 가공용 기계 : 8.05

<b>1. 철강업</b>	
(1) 제선설비	7
(2) 제강설비	7
(3) 철강단조설비	9
(4) 철강구조 및 철구조물제조설비	8
(5) 합금철제조설비	9
(6) 연속주조 및 강편제조설비	7

(7) 열간압연설비	7
(8) 냉간압연 또는 냉간성형설비	8
(9) 강관제조설비	9
(10) 철강신선 및 연선제조설비	9
(11) 철강열처리설비	9
(12) 철강표면처리설비	8
(13) 기타의 철강업용설비	9
<b>2. 비철금속 제조업</b>	
(1) 비철금속제련설비	8
(2) 비철금속압연·압출 또는 신선설비	9
(3) 비철금속주물제조설비	7
(4) 광통신케이בל제조설비	7
(5) 기타의 설비	8
(6) 금속분말 또는 박(압연에 의한 것 제외)제조설비	7
(7) 분말야금제품제조설비	9

**9. 특수 산업용 기계 : 8.11**

**1. 운수통신업**

(1) 강색철도 또는 가공색도설비	
(가) 강삭	3
(나) 기타	11
(2) 석유 또는 액화가스수입 판매설비	11
(3) 가솔린 판매설비	9
(4) 하역 또는 창고업용 설비	
(가) 이동식 하역설비	6
(나) 기타의 설비	10

**2. 기타산업**

(1) 기타의 사업설비	
(가) 주로 금속제인 것	14
(나) 기타의 것	7
(2) 어구	2

## 10. 일반산업용 기계 : 7.70

## 1. 금속제품제조업

(1)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류제조설비	8
(2) 재봉기 제조설비	9
(3) 재봉기 부분품과 동부속품 제조설비	10
(4) 펌프 제조설비	9
(5) 농업용 기구 제조설비	9
(6) 못·리베트 또는 스프링 제조용 설비	9
(7) 금속제 식탁용 제조설비	9
(8) 도금설비	6
(9) 기타의 금속제품 제조설비	11

## 2. 기계 제조업

(1) 보일러 제조설비	9
(2) 엔진·터빈 또는 수차 제조설비	9
(3) 건설기계·광산기계·원동기 제조설비	9
(4) 금속공작기계 제조설비	8
(5) 강구 또는 베어링 및 동부분품 제조설비	8
(6) 사무용기계 제조설비	8
(7) 폐수처리기계 제조설비	8
(8) 농업용기계 제조설비	9
(9) 섬유기계 및 동부분품 제조설비	9
(10) 기타의 기기 또는 부분품 부속품 제조설비	10

## 3. 전기기계 기구 제조업

(1) 컴퓨터와 동관련기기 및 동부품 제조설비	4
(2) 전자계측기·통신용기기·음성주파장치·영상주파장치 기타의 전자응용기기와 동관련기기 및 동부분품 제조설비	6
(3) 전구·전자관 또는 방전등 제조설비	
(4) 건전지 제조설비(전기제조설비 포함)	
(5) 카본블랙 제조설비	
(6) 반도체소자 및 동관련부분품·반도체박판·반도체재료 제조설비	4
(7) 인쇄회로기판 제조설비	6
(8) 전기용접기 제조설비	7
(9) 전용공구 제조설비 자동화설비	8
(10) 기타의 전기기기 및 동부분품 제조설비	8

<b>4. 수송용기계 제조업</b>	
(1) 자동차 및 동부분품 제조설비	7
(2) 철도용 및 궤도용차량 또는 동부분품 제조설비	10
(3) 자전거 또는 동부분품 및 부속품 제조설비	6
(4) 강선제조 및 수리설비	8
(5) 목선제조 및 수리설비	11
(6) 항공기 및 동부분품 제조설비	8
(7) 기타의 운반수송용기기 제조설비	11
<b>5. 계량기·측정기·측량기계·의료기기·이화학기계 ·광학기계 제조업</b>	
(1) 시험기·측정기 또는 계량기 제조설비	9
(2) 의료용 또는 이화학용기기 제조설비	
(가) 전자·전기식 의료기기 제조설비	8
(나) 기타의 제조설비	9
(3) 렌즈·광학기기 또는 동부분품 제조설비	8
<b>6. 무기 제조업</b>	
(1) 총포·총탄 및 동부분품 제조설비	9
<b>7. 기타의 기계류 제조업</b>	
(1) 자동차수리업용설비	11
(2) 기타의 기기·기구·부분품 또는 부속품 제조설비	12
<b>8. 의약품·농약 제조업(화학공업)</b>	
(1) 의약품 제조설비	5
(2) 농약 제조설비	6
<b>9. 비료 제조업</b>	
(1) 암모니아 제조설비	8
(2) 황산 또는 초산 제조설비	7
(3) 기타의 화학비료 제조설비	7
(4) 배합비료 기타 비료 제조설비	11
<b>10. 무기공업제품 제조업</b>	
(1) 소다회·염화암모늄·가성소다·가성가리 제조설비	5
(2) 황화소다·무수망초·청화소다·과산소다 제조설비	6
(3) 탄산마그네슘 제조설비	7
(4) 황산철·황화철 제조설비	6
(5) 취소·옥소·염소·취소 또는 옥소화합물 제조설비	6
(6) 불산 기타의 불소화합물 제조설비	6
(7) 염화인 제조설비	5

(8) 인산 또는 황화인 제조설비	6
(9) 무수크롬산 제조설비	6
(10) 초산은 제조설비	6
(11) 카바이트 제조설비	7
(12) 활성탄 제조설비	6
(13) 기타의 무기화학약품 제조설비	9
<b>11. 유기공업제품 제조업</b>	
(1) 염료중간물 기타 코올탈 분류물 유도체 제조설비	
(가) 피크린산 기타 폭약원료의 제조설비	3
(나) 기타	6
(2) 카프로락탐·시크로헥시논 또는 테레후탈산 및 톨루엔디소아네이트 제조설비	6
(3) 석탄가스·오일가스 또는 석유를 원료로 하는 방향족 기타 화합물 분리·정제설비	7
(4) 석유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에틸렌·프로필렌 ·부치렌·부타디엔 또는 아세틸렌 제조설비	8
(5) 탄화수소의 염화물·취화물 또는 불화물 제조설비	6
(6) 메탄올·에탄올 또는 그 유도체 제조설비	6
(7) 기타의 알콜 또는 케톤 제조설비	7
(8)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초산 제조설비	6
(9) 시크로헥실아민 또는 시크로헥실설파민산염 제조설비	6
(10) 올소토루엔설포아미드 또는 사카린 제조설비	7
(11) 아민 또는 메라민 제조설비	6
(12) 염산·석탄산 제조설비	6
(13) 의산·수산·유산·주석산(주석산염류 포함)·호박산 ·구연산·타닌산 또는 몰식자산 제조설비	7
(14) 아크릴·나트릴 또는 아크릴산에스텔 제조설비	6
(15) 기타의 규기약품 제조설비	9
(16) 염화비니리덴계수지·초산비닐계수지· 폴리에틸렌테레후타레이트계수지·불소수지 또는 규소수지 제조설비	6
(17) 기타의 합성수지 또는 합성고무 제조설비	7
<b>12. 화학섬유 제조업</b>	
(1) 재생인조섬유 제조설비	6
(2) 반합성섬유 제조설비	6
(3) 합성섬유 제조설비	6

<b>13. 유지가공제품 제조업</b>	
(1) 비누 제조설비	8
(2) 경화유·지방산 또는 글리세린 제조설비	8
(3) 합성세제 또는 계면활성제 제조설비	6
<b>14. 화학류 제조업</b>	
(1) 화약 및 폭약 제조설비	6
<b>15. 도료·염료 등 제조업</b>	
(1) 도료 및 잉크 제조설비	8
(2) 염료 또는 안료 제조설비	6
(3) 날염제 또는 표백제 제조설비	6
(4) 시약 제조설비	6
<b>16. 기타의 화학공업</b>	
(1) 합성수지용 안정제 제조설비	6
(2) 유기고무약품·사진약품 또는 인조향료 제조설비	7
(3) 화장품 제조설비	8
(4) 화공전분 제조설비	9
(5) 카본블랙 제조설비	8
(6) 접착제 제조설비	8
(7) 젤라틴·아교 제조설비	6
(8) 자기테이프 제조설비	5
(9) 사진필름 기타 사진감광 제조설비	7
(10) 기타의 화학공업제품 제조설비	11
<b>17. 석유제품·석탄제품 제조업</b>	
(1) 석유정제설비	7
(2) 피치·코크스 제조설비	6
(3) 연탄·조개탄류 또는 탄소분말 제조설비	7
(4)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 제조설비	11
<b>18. 고무제품 제조업</b>	
(1) 사고무 제조설비	7
(2) 자동차용 고무타이어 제조설비	8
(3) 기타 제품 제조설비	7
<b>19. 제혁·혁제품 제조업</b>	
(1) 제혁 및 혁제품 제조설비	
(가) 제혁설비	7
(나) 혁제품 제조설비	9

## 20. 요업 · 토석제품 제조업

(1) 판초자 제조설비	
(가) 용해로	4
(나) 원료투입 · 제품절단	10
(다) 기타의 설비	12
(2) 기타의 초자제품 제조설비	
(가) 도가니 또는 일일로	3
(나) 기타의 설비	8
(3) 도자기 · 점토제품 또는 내화물 제조설비	
(가) 도염요	5
(나) 터널요	6
(다) 기타의 요	7
(라) 광물분쇄 · 탈철 · 탈수설비	8
(마) 기타의 설비	11
(4) 시멘트 제조설비	
(가) 생산설비 컨트롤시스템	10
(나) 운전자동화설비	9
(다) 기타의 설비	11
(5) 기타의 시멘트제품 제조설비	
(가) 이동식제조 또는 가설설비 및 진동가압식 성형설비	7
(나) 기타의 설비	11
(6) 석회 또는 고석회 제조설비	7
(7) 석고보오드 제조설비	
(가) 소성로	5
(나) 기타의 설비	11
(8) 정밀요업제품(파인세라믹스) 제조설비	
(가) 소성로	6
(나) 기타의 설비	10
(9) 브라운관용 유리 제조설비	
(가) 용해로	4
(나) 기타의 설비	8
(10) 기타의 요업제품 또는 토석제품 제조설비	
(가) 소성로	7
(나) 기타의 설비	12

21. 섬유공업

(1) 생사 제조설비	
(가) 자동조사기	6
(나) 기타의 설비	8
(2) 방적설비	8
(3) 합성섬유 신축가공사 제조설비	7
(4) 기타의 사제조업용 또는 연사업용설비	9
(5) 직물설비	9
(6) 메리야스 및 메리야스생지편·장갑 또는 양말 제조설비	9
(7) 모 또는 합성섬유제품사 또는 면상섬유 염색가공설비	
(가) 압축용 전극판	3
(나) 기타의 설비	6
(8) 기타의 염색가공 또는 완성설비	6
(9) 날염설비	7
(10) 세모·탄화·양모톱·견란페니·반모·제면 및 재생면 제조설비	9
(11) 망·강 또는 조뉴 제조설비	9
(12) 레이스 제조설비	
(가) 랏셀레이스기	9
(나) 기타의 설비	10
(13) 헬트 또는 헬트 제품 제조설비	9
(14) 봉제품 제조설비	6
(15) 기타의 섬유제품 제조설비	
(가) 부직포 제조설비	8
(나) 컴퓨터 전자자수기	9
(다) 기타의 설비	11
<b>22. 목재·목제품 제조업</b>	
(1) 제재설비	
(가) 제재용 자동송재장치	7
(나) 기타의 설비	9
(다) 목제품 제조설비	8
<b>23. 펄프지·지가공제품 제조업</b>	
(1) 펄프 제조설비	11
(2) 수제한지 제조설비	6
(3) 기타의 제지설비	8
(4) 가공지 제조설비	10

(5) 지제품 제조설비	
(가) 사진설비	9
(나) 기타의 설비	9
<b>24. 인쇄·제본 출판업</b>	
(1) 일간신문지 인쇄설비	
(가) 모노타이프·사진 또는 통신설비	5
(나) 기타의 설비	10
(2) 인쇄설비	10
(3) 제본설비	10
(4) 사진제판업용설비	7
(5) 복사업용 설비	6
<b>25. 식료제조업</b>	
(1) 식육·식조 또는 계란처리 가공설비	8
(2) 유처리 또는 유제품 제조설비(집유설비 포함)	8
(3) 발효유 또는 유산균음료 제조설비	8
(4) 수산연제품 또는 한천 제조설비	7
(5) 기타의 수산물 가공설비	7
(6) 과일 또는 소채처리 가공설비	8
(7) 통조림 제조설비	7
(8) 화학조미료 제조설비	6
(9) 식초 제조설비	8
(10) 된장·간장류 또는 마요네즈 제조설비	
(가) 콘크리트제 사입조	13
(나) 기타의 설비	8
(11) 기타의 조미료 제조설비	8
(12) 정곡설비	9
(13) 제분설비	11
(14) 면류 제조설비	9
(15) 기타의 농산물 가공설비	11
(16) 사탕제조설비	10
(17) 수이포도당 또는 캐러멜 제조설비	9
(18) 빵·과자류 제조설비	8
(19) 제다설비	9
(20) 청량음료 제조설비	9
(21) 맥주 제조설비	12
(22) 청주 제조설비	11

(23) 기타의 주류 제조설비	9
(24) 기타의 음료 제조설비	11
(25) 효모·효소·종균·맥아 제조설비	8
(26) 동식물유지제조 또는 정제설비	11
(27) 냉동·제빙 또는 냉장업용 설비	
(가) 결빙관 또는 동결팬	3
(나) 기타의 설비	11
(28) 사료 제조설비	9
(29) 두부류 기타 두류 처리가공설비	8
(30) 기타의 식료품 제조설비	13
<b>26. 기타의 제조</b>	
(1) 악기 제조설비	9
(2) 레코드 제조설비	9
(3) 완구 제조설비	
(가) 자동재단기	7
(나) 기타의 설비	9
(4) 만년필·샤프펜슬·연필·펜촉·볼펜 제조설비	10
(5) 회화용구 제조설비	10
(6) 단추 제조설비	8
(7) 코르크 또는 코르크제품 제조설비	9
(8) 양초 제조설비	7
(9) 고공품 제조설비	7
(10) 진주양식설비	4
(11) 진주가공설비	6
(12) 가발 제조설비	9
(13) 라이터 제조설비	7
(14) 슬라이드화스너	7
(15) 합성수지성형가공 또는 합성수지제품 가공설비	8
(16) 발포폴리우레탄 제조설비	8
(17) 섬유벽지 제조설비	9
(18) 기타의 제조설비	13

**11. 사무, 계산, 회계용 기계 : 5.36**

**1.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 (1) 사무용기기 및 컴퓨터

(가) 신용카드임프린터	3
(나) 개인용컴퓨터	4
(다) 기타의 것	5
(2)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	
(가) 팩시밀리 및 데이터단말장치	5
(나) 전화기기 및 전화교환설비	6
(다) 기타의 것	10
<b>2. 시계·시험기기 및 측정기기</b>	
(1) 시계	10
(2) 도량형기	5
(3) 시험 또는 측정기기	
(가) 도자기제·유리제의 것	3
(나) 주로 금속제인 것	5
(다) 기타의 것	3

## 12. 서비스 산업용 기계 : 5.93

<b>1. 서비스업</b>	
(1) 호텔·여관·요리점업용 설비	
(가) 인탕관	5
(나) 기타의 설비	8
(2) 크리닝 설비	6
(3) 공중욕장 설비	
(가) 솔·온수기	3
(나) 기타의 설비	7
(4) 영화제작설비(현상설비 제외)	
(가) 조명설비	3
(나) 촬영 또는 녹음설비	6
(다) 기타의 설비	7
(5) 사진현상·소부설비	
(가) 천연색 사진설비	6
(나) 기타 사진설비	7
(6) 영화 또는 연극홍행설비	
(가) 조명설비	5
(나) 기타의 설비	6
(7) 유원지용 유희설비	8

(8) 종묘원에설비	9
(9) 산업폐기물 처리설비	3
(소각시설, 용해시설, 중화시설, 기타 부속시설)	
<b>13. 전기기계 : 5.2</b>	
(1) 라디오, 텔레비전, 테이프레코더 기타의 음향기기	5
(2) 냉방용 또는 온방용기기	6
(3)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또는 가스기기	6
(4) 빙냉장고 및 냉장스독카(전기식인 것을 제외한다)	4
(5) 자동판매기(수동의 것을 포함한다)	5
<b>14. 트럭, 버스, 트레일러 : 4</b>	
1. 특수자동차 (이 항에는 기계장치설비에 계기되는 지주식작업용 기체는 포함되지 않음)	
소방차, 구급차, 렌트겐차, 살수차, 방송선전차, 이동무선차, 도크리프트, 모타, 스위타, 농경작용 견인차 및 제설차, 탱크차, 진애차, 침대차, 영구차, 트럭믹서, 기타 특수차체로 조립된 것	5
(1) 승합자동차	3
(2) 화물자동차	4
<b>15. 승용차 : 4</b>	
1. 운송사업용·자동차대여사업용 또는 자동차교습소용의 차량 및 운반구(전계의 것을 제외한다)	
(1) 자동차(이륜 또는 삼륜자동차 포함)	4
(2) 운송사업용 택시	3
2. 전계의 것 이외의 차량 및 운반구	
(1) 자동차(이륜 또는 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	5

## 16. 비행기 : 4.4

## 1. 항공기

## (1) 비행기

- (가) 최대이륙중량 100,000kg 이상의 것 10
- (나) 최대이륙중량 1,500kg 이상의 것 6
- (다) 훈련용 및 허용이륙 최대중량이 1,500kg 이하의 것 2
- (라) 기타 2

## (2) 기타

- 헬리콥터와 글라이더 및 기타 2

## 17. 선박 및 보트 : 9.82

## 1. 선박

## (1) 선박법 제7조 내지 제25조의 적용을 받는 강선

- (가) 유조선 15
- (나) 약품조선 12
- (다) 수중익선 및 공기부양선 8
- (라) 카페리선 11
- (마) 기타 18

## (2) 선박법 제7조 내지 제25조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선 18

## (3) 선박법 제7조 내지 제25조의 적용을 받는 경합금선

- (가) 여객선 8
- (나) 기타 12

## (4) 선박법 제7조 내지 제25조의 적용을 받는 목선

- (가) 약품조선 8
- (나) 기타 12

## (5) 전제 이외의 선박

## (가) 강선

- ① 준설선, 자갈채취선 및 발전선 8
- ② 기타 12

## (나) 목선

- ① 준설선, 자갈채취선 5
- ② 기타 8

## (다) 기타

- 모터보트를 포함함 5

2. 수산업

(1) 어선(선박법 제7조 내지 제25조의 적용을 받는 강선 및 합성수지선)	
(가) 총톤수 100톤 이상의 것 원양선(포경선·탐경선 ·예경선·참치선 등)	9
(나) 기타의 것	11
(다) 총톤수 100톤 미만의 것 원양선(포경선·탐경선 ·예경선·참치선 등)	7
(라) 기타의 것	8
(마) 목선	
(2) 어선(선박법 제7조 내지 제25조의 적용을 받는 목선)	
(가) 목선	6
(3) 기타의 어선	
(가) 강선 및 합성수지	9
(나) 목선	6

18. 철도장비 : 22.3

1. 철도업용 또는 궤도업용의 것

(1) 귀선본드	5
(2) 토공설비	40
(3) 교량	
(가) 철근콘크리트조의 것	40
(나) 연와조의 것	35
(다) 기타의 것	10
(4) 터널	
(가) 철근콘크리트조의 것	40
(나) 연와조의 것	35
(다) 기타의 것	30

2. 철도용 또는 궤도용차량

(1) 전기 또는 증기기관차	15
(2) 전차	15
(3) 내연자동차(제어차 및 부수차 포함)	15
(4) 화차	15
(5) 강색철도용차량	15
(6) 가공색도운반기	10

(7) 기타의 차량	15
------------	----

## 19. 기구 : 5.38

1. 광학기기 및 사진 제작기기	8
2. 간판 및 광고기구	
(1) 간판, 네온사인 및 기구	3
(2) 마네킹 인형 및 모형	2
(3) 기타	
(가) 주로 금속제인 것	10
(나) 기타의 것	5
3. 이용 또는 미용기기	
(1) 이용 또는 미용의자 및 세면설비	8
(2) 드라이어, 기타의 것	6
4. 의료기기	
(1) 렌트겐, 기타의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가) 이동식의 것	3
(나) 기타의 것	5
(2)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기기	4
(3) 조제기기	5
(4) 치과진료용 유닛	6
(5) 광학검사기기	7
(6) 기타	
(가) 도자기 또는 유리제의 것	3
(나) 주로 금속제인 것	9
(다) 기타의 것	4
5. 오락, 스포츠기구 또는 흥행연극용구	
(1) 당구용구	8
(2) 바둑, 장기, 기타 이에 유사한 유희구	5
(3) 스포츠용구	3
(4) 극장용 관객 의자	3
(5) 막	5
(6) 의상, 소도구, 대도구	2
(7) 기타	
(가) 주로 금속제인 것	10
(나) 기타의 것	5

20. 기타 장비 : 8.4

1. 정원	35
1.1 가스저장조	
(1) 금속조의 것	
① 액화가스용의 것	10
② 기타의 것	13
(2) 지하공동조(부대수조를 포함한다)	15
2. 전계 이외의 것 및 전계의 구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	
(1) 장의용구	3
(2) 기타	
(가) 주로 금속제인 것	10
(나) 기타의 것	5
(3) 자전거 및 리어카	3
(4) 견인차, 기타의 것	5
(5) 기타의 것	5
(6) 자전거	3
(7) 도록크	
(가) 금속제인 것	5
(나) 기타의 것	4
(8) 기타	
(가) 자주능력이 있는 것	6
(나) 기타의 것	4

21. 공업용 건물 : 22.45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 및 차고용건물	
(가) 극약등을 사용하는 공장으로서 부식하기 쉬운 건물 및 냉장창고용건물	25
(나) 염·질레초석 기타 조해성이 있는 고체를 상시 장치하기 위한 건물	32
(다) 창고사업의 냉장창고 외의 창고용건물	32
(라) 기타	40

## 2. 연와석조 및 부록조

- (1)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 및 차고용건물
  - (가) 극약등을 사용하는 공장으로서 부식하기 쉬운 건물 및 냉장창고용건물 22
  - (나) 염·칠레초석 기타 조해성이 있는 고체를 상시 장치하기 위한 건물 30
  - (다) 창고사업의 냉장창고 외의 창고용건물 30
  - (라) 기타 35

## 3. 철골조

- (1)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 및 차고용건물
  - (가) 극약등을 사용하는 공장으로서 부식하기 쉬운 건물 및 냉장창고용건물 20
  - (나) 염·칠레초석 기타 조해성이 있는 고체를 상시 장치하기 위한 건물 25
  - (다) 창고사업의 창고용건물 25
  - (라) 기타 30

## 4. 토벽조

- (1) 공장 및 창고용건물
  - (가) 염·지리초석 기타 조해성이 있는 고체를 상시 장치하기 위한 건물 10
  - (나) 기타 15

## 5. 목조

- (1)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 및 차고용건물
  - (가) 극약 등을 사용하는 공장으로서 부식하기 쉬운 건물 10
  - (나) 창고사업의 창고용건물 15
  - (다) 기타 15

## 6. 목골몰탈조

- (1)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 및 차고용건물
  - (가) 극약 등을 사용하는 공장으로서 부식하기 쉬운 건물 8
  - (나) 창고사업의 창고용건물 15
  - (다) 기타 15

## 22. 상업용 건물 : 38

###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1) 사무소, 점포, 주택과 하기 이외용의 건물 60

(2) 관광호텔	40
(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3) 여관, 일반호텔, 요리점, 대석, 극장, 영화관, 무도장, 병원, 학교, 체육관 기숙사 및 아파트용 건물	50
(4) 영화제작용스튜디오, 실내스케이트장, 어시장 및 공중욕탕용건물	50
<b>2. 연와석조 및 부록조</b>	
(1) 사무소, 점포, 주택과 하기 이외용의 건물	50
(2) 여관, 일반호텔, 요리점, 대석, 극장, 영화관, 무도장, 병원, 학교, 체육관 기숙사 및 아파트용 건물	45
(3) 영화제작용스튜디오, 실내스케이트장, 어시장 및 공중욕탕용건물	45
<b>3. 철골조</b>	
(1) 사무소, 점포, 주택과 하기이외용의 건물	50
(2) 여관, 일반호텔, 요리점, 대석, 극장, 영화관, 무도장, 병원, 학교, 체육관 기숙사 및 아파트용 건물	45
(3) 영화제작용스튜디오, 실내스케이트장, 어시장 및 공중욕탕용건물	45
<b>4. 토벽조</b>	
(1) 사무소, 점포, 주택과 하기 이외용의 건물	25
<b>5. 목조</b>	
(1) 사무소, 점포, 주택과 하기 이외용의 건물	25
(2) 여관, 일반호텔, 요리점, 대석, 극장, 영화관, 무도장, 병원, 학교, 체육관 기숙사 및 아파트용 건물	23
(3) 영화제작용스튜디오, 실내스케이트장, 어시장 및 공중욕탕용건물	23
<b>6. 목골물탈조</b>	
(1) 사무소, 점포, 주택과 하기 이외용의 건물	25
(2) 여관, 일반호텔, 요리점, 대석, 극장, 영화관, 무도장, 병원, 학교, 체육관 기숙사 및 아파트용 건물	25
(3) 영화제작용스튜디오, 실내스케이트장, 어시장 및 공중욕탕용건물	20

**23. 교회용 건물 : 39.17**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 사무소, 점포, 주택과 하기 이외용의 건물	60
<b>2. 연와석조 및 부록조</b>	
(1) 사무소, 점포, 주택과 하기 이외용의 건물	50
<b>3. 철골조</b>	
(1) 사무소, 점포, 주택과 하기 이외용의 건물	50
<b>4. 토벽조</b>	
(1) 사무소, 점포, 주택과 하기 이외용의 건물	25
<b>5. 목조</b>	
(1) 사무소, 점포, 주택과 하기 이외용의 건물	25
<b>6. 목골몰탈조</b>	
(1) 사무소, 점포, 주택과 하기 이외용의 건물	25

#### 24. 교육용 건물 : 37.6

<b>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b>	
(1) 여관, 일반호텔, 요리점, 대석, 극장, 영화관, 무도장, 병원, 학교, 체육관 기숙사 및 아파트용 건물	50
<b>2. 임연와석조 및 부록조</b>	
(1) 여관, 일반호텔, 요리점, 대석, 극장, 영화관, 무도장, 병원, 학교, 체육관 기숙사 및 아파트용 건물	45
<b>3. 철골조</b>	
(1) 여관, 일반호텔, 요리점, 대석, 극장, 영화관, 무도장, 병원, 학교, 체육관 기숙사 및 아파트용 건물	45
<b>4. 목조</b>	
(1) 여관, 일반호텔, 요리점, 대석, 극장, 영화관, 무도장, 병원, 학교, 체육관 기숙사 및 아파트용 건물	23
<b>5. 목골몰탈조</b>	
(1) 여관, 일반호텔, 요리점, 대석, 극장, 영화관, 무도장, 병원, 학교, 체육관 기숙사 및 아파트용 건물	25

#### 25. 의료용 건물 : 37.6

<b>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b>	
(1) 여관, 일반호텔, 요리점, 대석, 극장, 영화관, 무도장, 병원, 학교, 체육관 기숙사 및 아파트용 건물	50

2. 연와석조 및 부록조	
(1) 여관, 일반호텔, 요리점, 대석, 극장, 영화관, 무도장, 병원, 학교, 체육관 기숙사 및 아파트용 건물	45
3. 철골조	
(1) 여관, 일반호텔, 요리점, 대석, 극장, 영화관, 무도장, 병원, 학교, 체육관 기숙사 및 아파트용 건물	45
4. 목조	
(1) 여관, 일반호텔, 요리점, 대석, 극장, 영화관, 무도장, 병원, 학교, 체육관 기숙사 및 아파트용 건물	23
5. 목골물탈조	
(1) 여관, 일반호텔, 요리점, 대석, 극장, 영화관, 무도장, 병원, 학교, 체육관 기숙사 및 아파트용 건물	25
26. 기타 비농업용 건물 : 12	
1. 간이목조 또는 간이 목골물탈조	12
27. 철도 : 24.12	
(1) 궤도 및 동부속품	25
(2) 침목	
(가) 목재의 것	10
(나) 콘크리트제의 것	25
(3) 분기기	20
(4) 전신선, 신호선, 전동전력선 또는 신호기	30
(5) 송배전선 및 기전선	40
(6) 전차선	20
(7) 전선 지지물(전주 및 완목 제외)	30
(8) 목주 및 목탑 전계 이외의 것	
(가) 선로설비	15
(나) 궤도설비	
① 도상	40
② 기타의 것	20
(9) 기타의 궤도설비	
(가) 정거장 설비	30
(나) 선로설비	

① 철주철탑콘크리트주 및 콘크리트탑	40
② 기타의 설비	20
(다) 기타의 설비	20

## 28. 전신전화용 설비 : 11.33

### 1. 방송용 또는 무선통신용의 것

(1) 철탑	30
(2) 목탑, 안테나, 접지선	10
(3) 국제전신전화설비 또는 연기법 제20조 제1항의 운수통신업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통신사의 통신설비	6
(4)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설비	6
(5) 항공기의 조종훈련용설비	8
(6) 기타의 통신설비	8

## 29. 전등 및 전주 : 22.92

### 1. 발전용 또는 송배전용의 것

(1) 수력발전용의 것	40
(2) 화력발전용의 것	40
(3) 송전용의 것	
(가) 지중전선로	30
(나) 탑, 주 애자, 송전선, 지선 및 첨가전화선	35
(4) 배전용의 것	30

### 2. 전기업

(1) 수력발전설비	20
(2) 화력 및 원자력 발전설비	15
(3) 내연력 또는 가스터빈 발전설비	15
(4) 송전·전기사업용 변전 또는 배전설비	
(가) 수요자용 계기	15
(나) 주상변압기	17
(다) 기타의 설비	15
(5)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변전설비	20
(6) 축전지 전원설비	6

30. 가스 : 12.17

1. 가스업

(1) 석탄가스·석유가스 또는 코크스 제조설비	9
(2) 가스정제설비	9
(3) 가스사업용 공급설비	
(가) 가스도관	
(나) 주철제	20
(다) 기타	11
(라) 수요자용 계량기	11
(마) 기타의 설비	13

31. 기타 공공재 : 27.85

1. 기타

2.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전계의 것을 제외한다)

(1) 교	40
(2) 암벽, 잔교, 방벽, 제방, 방파제탑, 상수도, 수조 및 용수용댐	40
(3) 터널	40
(4) 수도용댐	40
(5) 건독크	40
(6) 하수도 및 연돌	35
(7) 조선대, 제염용침전지 및 오수처리조	25
(8) 기타	40
(9) 저수지	40

3. 콘크리트조의 것(전계의 것을 제외한다)

(1) 잔교, 안벽, 방벽, 제방, 방파제, 터널 상수도 및 수조	30
(2) 하수도 및 수정화장치	15
(3) 광업용폐석사장	5
(4) 기타	40

4. 연와조의 것(전계의 것을 제외한다)

(1) 방벽, 제방, 방파제 및 터널 연돌 및 연도	40
(가) 염소, 크로루스루혼산 등 심한 부식성가스의 영향을 받은 것	8
(나) 기타의 것	25

(2) 기타	35
<b>5. 석조의 것(전계의 것을 제외한다)</b>	
(1) 건독크	40
(2) 잔교, 안벽, 방벽, 제방 및 상수도	40
(3) 하수도	35
(4) 기타	40
<b>6. 토조의 것(전계의 것을 제외한다)</b>	
(1) 방벽, 제방 및 방파제	30
(2) 상수도 및 저수지	25
(3) 하수도	15
(4) 기타	30
<b>7. 철 및 기타금속조의 것(전계의 것을 제외한다)</b>	
(1) 교	40
(2) 도상교 및 강시관안벽용수관	
(가) 주철관	30
(나) 강철관	20
(3) 수조 및 기타저조	
(가) 주철제의 것	25
(나) 강철제의 것	15
(4) 부독크	20
(5) 조교, 연돌, 펌프, 우물 및 담벽	10
(6) 기타	40
<b>8. 목조의 것(전계의 것을 제외한다)</b>	
(1) 교, 탑 및 독크	15
(2) 잔교, 안벽, 방벽, 제방, 방파제	10
(3) 터널 및 수조	10
<b>9. 포장도로, 포장도면</b>	
(1) 콘크리트바닥, 보도블록바닥, 연와바닥 및 돌바닥	15
(2) 아스팔트 바닥	10
<b>32. 농장 : 8</b>	
(1) 가축 또는 가금사육장	8

**33. 채광, 탐사, 갱도, 유정**

34. 기타 비건축 시설물 : 19.1

1. 건물부속설비	
2. 전기설비	
(1) 축전지 전원설비	6
(2) 기타의 것	15
3. 급배수, 위생설비 또는 가스설비	18
4. 냉방, 난방, 통풍 또는 보일러 설비	10
5. 승강기설비	18
6. 전계의 설비 이외의 것	
(1) 주로 금속제인 것	18
(2) 기타의 것	10

35. 주거용 건물 : 39.17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 사무소, 점포, 주택과 하기 이외용의 건물	60
2. 연와석조 및 부록조	
(1) 사무소, 점포, 주택과 하기 이외용의 건물	50
3. 철골조	
(1) 사무소, 점포, 주택과 하기 이외용의 건물	50
4. 토벽조	
(1) 사무소, 점포, 주택과 하기 이외용의 건물	25
5. 목조	
(1) 사무소, 점포, 주택과 하기 이외용의 건물	25
6. 목골몰탈조	
(1) 사무소, 점포, 주택과 하기 이외용의 건물	25

## 附錄 IV. 特別償却의 種類

### 1. 法人稅法 施行令

- (1) 광업·제조업·부가통신업·정보처리 [일반상각범위액의  
및 기타컴퓨터 운용관련업·전기 가스업 20/100(30/100 또는  
중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15시간 50/100)]  
또는 18시간) 가동에 대한 특별상각
- (2) 건설업 중 국토건설공사용 중기 중 [일반상각범위액의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사용에 대한 20/100]  
특별상각
- (3) 에너지 절약형 설비투자·공해방지 [취득가액의 90/100]  
시설에 대한 특별상각

### 2. 租稅減免規制法

-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상각 [일반상각범위액의  
50/100. 그러나 중소  
기업진흥법에 의한 중  
소기업우선 육성업종  
100/100]
- (2) 중소기업협동화 사업계획에 의하여 [일반상각범위액의  
설치한 공동 이용설비에 대한 특별상각 50/100]
- (3) 외국선행사업에 대한 특별상각 [일반상각범위액의  
50/100]
- (4) 광업에 대한 특별상각 [일반상각범위액의

- |   |   |
|---|---|
|   | 100/100. 그리고 석탄<br>광업의 광산용 사택의<br>경우에는 50/100]                |
| (5) 농공단지 또는 특수단지에서 농·어촌<br>소득원개발사업에 대한 특별상각 | [일반상각범위액의<br>100/100]   |
| (6)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설비에 대한<br>특별상각              | [일반상각범위액의<br>100/100]   |
| (7) 주차장설비에 대한 특별상각                          | [건물 및 구축물의 경<br>우는 일반상각범위액<br>의 100/100, 기계식 주<br>차설비 50/100] |
| (8) 신기술기업화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br>특별상각              | [취득가액의 50/100,<br>국산기자재는 90/100]                              |
| (9) 신기술기업화의 연구시험용 시설에<br>대한 특별상각            | [취득가액의 90/100]  |
| (10)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특별상각                        | [취득가액의 30/100,<br>국산기자재는 50/100]                              |
| (11) 대전 세계박람회용 고정자산에 대한<br>특별상각             | [취득가액의 90/100]  |
| (12)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특별상각                       | [취득가액의 30/100,<br>국산기자재는 50/100]                              |
| (13) 경기조정을 위한 투자자산에 대한<br>특별상각              | [취득가액의 30/100,<br>국산기자재는 50/100]                              |
| (14)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특별상각                        | [취득가액의 30/100,<br>국산기자재는 30/100]                              |
| (15)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br>본사 이전에 대한 특별상각  | [일반상각범위액의<br>50/100]  |

- |                                     |                       |
|-------------------------------------|-----------------------|
| (16) 제조업, 광업, 수산업의 수출 등에<br>대한 특별상각 | [일반상각범위액의<br>30/100]  |
| (17) 임대사업자의 임대국민주택에 대한<br>특별상각      | [일반상각범위액의<br>100/100] |
| (18)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의 신축·구입에<br>대한 특별상각 | [일반상각범위액의<br>100/100] |

## 附錄 V. 美國 減價償却制度의 歷史的 考察

### I. 序論

美國의 減價償却制度는 現代的 의미의 稅制가 도입된 1909년 이후로 다음의 일곱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구분은 減價償却制度의 稅法改正이 일어난 시기를 바탕으로 구분한 것이다.

- (1) 1단계: 1909년~1933년
- (2) 2단계: 1934년~1953년
- (3) 3단계: 1954년~1962년
- (4) 4단계: 1963년~1970년
- (5) 5단계: 1971년~1980년
- (6) 6단계: 1981년~1986년
- (7) 7단계: 1987년~현재

미국의 減價償却制度를 역사적으로 조명해 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減價償却制度의 방향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減價償却制度는 減價償却 해당 자산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자산의 減價償却을 인정해 주는 방법에서 納稅者의 협력이 비교적 용이하도록 일률적이고 간편한 減價償却制度로 변하고 있다. 자산마다 특수한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그 자산의 減價償却額을 인정해 줄 경우, 納稅者는 그러한 減價償却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자료준비로 인해 납세 협력비용이 높아지게 되고, 稅政當局은 이를 조사하기 위한 行政費用이 많이 들게 된다. 시간이 감에 따라 減價償却制度는 모든 자산에 대해 똑같이 적용됨으로써 納稅者 및 稅政當局이 편리하고 행정 및 협력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 그

리하여 현 제도는 稅法上 資産의 耐用年數가 짧고 간편하게 분류되고 있으며, 耐用年數가 경과한 자산의 殘存價額은 0으로 처리하여 減價償却額을 대폭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둘째, 미국의 減價償却制度는 자산의 사용과 시간이 경과됨에 따른 자산의 가치하락을 정확하게 반영하려는 시도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자산 혹은 특정 자산에 대한 投資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변수로서 사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減價償却制度의 중요성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5년 기준으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有形資産의 규모는 약 3조 1,740억달러이며, 또한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無形資産의 규모는 약 1,450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총자산의 규모에서 稅法上으로 감가상각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減價償却 控除額은 약 3,110억달러가 된다. 이 비용의 크기를 다른 공제액과 비교해 보면, 利子控除額의 경우 5,690억달러, 弘報控除額의 경우 920억달러를 차지하고, 또한 기업의 순이익이 2,400억달러임을 고려할 때, 減價償却控除額이 비교적 큰 규모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減價償却制度의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효과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자. 1988년을 기준으로 기업이 유형자산에 투자한 총액은 5,100억달러이며, 현재 稅法上 자산에 대한 減價償却方法이 200% 체감법으로만 가능하다고 가정하자. 이때 감가상각 방법을 200% 遞減法에서 定額法으로 변화시킬 때 세수증가의 효과는 135억달러에 달한다<sup>1)</sup>. 1988년 總法人稅收인 959억달러와 비교할 때 이 세수증가 효과는 전체 법인세수의 14.1%에 해당하는 높은 변화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減價償却制度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減價償却制度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는가<sup>2)</sup>를 조명함으로써 감가상

1) 耐用年數는 15년으로 假定하여 計算한 結果이다.

2) 本 研究에서 보여주는 美國制度에 대한 많은 部分의 說明은 Brazell, Dworin,

각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향후 우리나라 減價償却制度를 개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미국의 減價償却制度를 시대적으로 일곱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마다 減價償却制度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여기서의 설명은 매우 간단하게 정책 위주로 살펴보았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단계의 자세한 자료를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減價償却制度가 경제정책의 도구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이론인 신고전 투자이론(neoclassical investment theory)을 설명하고, 이 관점에서 減價償却制度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미국 減價償却制度의 흐름과 방향을 간단히 요약하고 결론짓는다.

## Ⅱ. 減價償却制度의 歴史的 考察

### 1. 1909年 以前の 減價償却制度

19세기에는 減價償却에 대한 개념이 주로 會計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法人이 소유한 資産의 價値는 자산을 구입한 시점과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 후 그 자산을 평가하는 시점 사이에서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며, 같은 자산에 대하여 평가시점의 차이에서 오는 가치의 변화를 減價償却으로 인식하였다.

오늘날 주로 사용되는 會計上의 감가상각 개념은 1830년대와 1840년대에 시작되었다. 그 당시는 高價의 耐久財 資産을 사용하는 산업이 번창하던 시대였으므로, 자연히 減價償却에 대한 회계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철도산업에서 사용되는 자산의 마모·유지비용, 수선비용 등을 회계상으로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감가상각에 대한 관심

---

and Walsh (1989), Commerce Clearing House (1987), Gravelle (1979)를 參照하였다.

이 많았다.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産業에서는 減價償却에 대한 회계상의 처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감가상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주된 이유는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그 기업이 신고하는 소득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減價償却의 會計處理에 부정적인 계층은 減價償却額이 실제로 현실화되지 않았으므로, 자산을 처리하여 현실화하기 전까지는 고려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會計上의 減價償却에 긍정적인 계층은 減價償却額이 실제 현실화된 가치가 아니더라도, 기업이 사용한 자산의 총비용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한 것이므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世紀 末에 減價償却額의 회계처리를 법률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大法院은 감가상각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1876년과 1878년에 資本費用의 분할인 減價償却은 법률적으로 비용처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대법원은 실제로 자산의 유지를 위해 지출된 부분만을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하였다. 감가상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대법원에서 뿐 아니라, 철도회사의 감사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남북전쟁 때의 稅法에서는 減價償却制度에 대해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또한 1894년의 限時的인 稅法에는 자산의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에 대한 개념은 이 시기에 정리되었으며, 공공사업 법인들에게는 지지를 받았다. 감가상각이 법률적으로 지지를 받게된 때는 1899년이며, 그때에서야 대법원은 減價償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여 감가상각을 비용공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산업은 정부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었으므로 정부는 기업들에게 減價償却 控除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였다. 또한 1907년에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은 減價償却을 고려한 회계방식을 철도회사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회계제도는 계속적으로 교통 및 통신산업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減價償

却制度는 현대적 의미의 租稅制度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활발히 사용되지 못하였다.

## 2. 1909年~1933年間の 減價償却制度

감가상각에 대한 개념이 법률적으로 처음으로 인정된 시기는 1909년이었다. 이 해에 국회에서는 감가상각에 대한 기업의 비용처리에 동의를 하고 법률화하였다(Sixteenth Amendment). 비로소 이 법을 통하여 고정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비용, 즉 減價償却額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減價償却額이 현실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國稅廳은 減價償却額을 자산가치의 손실액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稅務當局은 減價償却額을 산정하기 위하여 資産의 物理的 磨耗로 인한 가치의 감소를 가능하면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이때의 稅法은 減價償却을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기업은 반드시 장부를 사용하여야 하며, 貸借對照表上에 감가상각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減價償却額의 비용공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감가상각을 처음으로 인정한 때에는 有形資産에만 적용되었고, 無形資産은 減價償却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 후 감가상각이 허용되는 대상으로 特許權, 商標權, 製造權 등과 같은 무형자산도 포함하게 되었다.

1918년에 改正된 稅法에서는 減價償却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사용하였다. 즉 감가상각이란 자본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비용으로 정의하였으며, 이 개념은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상의 관점을 잘 반영한 것이었다.

### 가. 耐用年數의 決定

1918년 稅法에서는 有形資産의 耐用年數를 명시하였으며, 이를 1920년에 Bulletin F: Depreciation and Obsolescence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자산의 구체적인 耐用年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

고, 자산에 대한 정확한 감가상각의 계산은 각 자산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각 資産의 구체적인 耐用年數를 명시하지 않고 기업으로 하여금 자산의 감가상각 계산에 충분한 융통성을 인정할 이유는 자산별로 모두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같은 용도의 자산이라 할지라도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실제 減價償却의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耐用年數를 적용할 수 없다.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定額法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으나, 증명할 수 있으면 加速償却法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930년에 國稅廳은 減價償却에 관한 두 가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첫째는 기존의 Bulletin F를 개정한 것으로 Income Tax Depreciation and Obsolescence이며, 여기서 減價償却에 대한 일반적 규칙을 설명하였다. 반면 두번째 보고서는 Depreciation Studies로 44개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2,700종류의 有形資産에 대한 耐用年數와 減價償却率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보여주었다. 이 자료는 1920년대에 국세청이 축적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연구한 결과였다. 이러한 자료는 納稅者가 有形資産의 減價償却을 稅政當局에 보고할 때 참고용 자료로 사용되도록 권장하였다.

#### 나. 1934年 前의 租稅行政

이 기간 동안 조세당국은 각 企業이 보고한 감가상각 형태가 같은 산업에 속한 다른 기업들이 보고한 감가상각 형태와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때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다. 조세당국의 주된 관심사는 각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에 구한 總 減價償却額이 자산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다.

### 3. 1934年~1953年間の 減價償却制度

1933년에 國會는 稅收增大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減價償却 控除額에 관한 法律을 改正하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의 하원에서는 1934년부터 1936년까지 현재의 減價償却額을 25% 감소시킴으로써 法人稅收를 약 11%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34년 재무부에서는 이 정도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減價償却額의 삭감보다는 감가상각에 대한 행정 절차를 통하여 좀더 공평하게 하면 세수증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934년 財務部案의 주된 내용은 納稅者가 감가상각 형태에 대한 객관적 규명을 하게 함으로써 稅政當局은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수증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정안 이후로 納稅者들은 그들이 보고하는 자산의 감가상각 형태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Bulletin F에서 제시한 耐用年數를 사용하였다. 이 Bulletin F는 수차례 개정되었고 1942년에 마지막 안이 제시되었다.

#### 가. 1942년의 Bulletin F

1942년에 國稅廳은 納稅者가 제출한 減價償却方法에 대한 監査資料로서 자산의 耐用年數에 관한 새로운 Bulletin F를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의 推定値는 수년 동안 國稅廳의 실측치를 바탕으로 구한 연구결과이며, 이 수치는 국세청에서 納稅者의 減價償却額의 성실도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Bulletin F에서 보여주는 결과는 57개 産業에서 사용되고 있는 5천 개 이상 종류의 자산에 대한 평균 耐用年數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Bulletin F에서 보여주는 耐用年數는 1931년에 만들어진 Depreciation Studies의 耐用年數보다 길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31년 Bulletin F의 2,700종류의 資産들 중에서 1,038종류의 자산에 대한 耐用年數가 1942년의 새로운 Bulletin

F에서 더욱 길게 나타났으며, 54종류 자산들에 대한 耐用年數가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자산의 耐用年數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1942년 Bulletin F에서 보여주는 자산의 加重平均 耐用年數는 19년으로 나타났다.

#### 4. 1954年~1962年間の 減價償却制度

1954년에 減價償却方法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즉 기존의 定額法에 의존한 減價償却方法을 二重遞減法(double declining balance method)과 연수합계법(sum-of-the-years'-digits method)으로 減價償却額을 계산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加速 減價償却은 4년 이상의 耐用年數를 가진 有形資産에만 적용할 수 있고, 無形資産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減價償却方法은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支持를 받게 되었다. 또한 실제로 經濟的 減價償却이 초기연도에 높은 비율의 減價償却額을 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減價償却額의 비율이 감소하므로 가속 감가상각은 이러한 형태를 잘 반영하였다. 이러한 加速償却 方法이 도입된 주된 동기는 경제적 감가상각을 좀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뿐 아니라, 기업으로 하여금 投資를 촉진시키기 위함이었다.

減價償却方法이 加速償却으로 변화하였으나 실제 현실에 적용되는 속도는 매우 느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54년에는 89%가 여전히 定額法下에서 減價償却額을 적용하였고, 1960년에는 58%가 定額法을 사용하였다.

#### 5. 1963年~1970年間の 減價償却制度

1963년에는 새로운 減價償却制度가 도입되면서 대폭적인 改正을 하게 되었다. 이 改正案의 주된 목적은 기존의 減價償却制度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경제 및 기술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 改正案을 통하여 經濟成長을 위한 자극책을 주기 위함이다. 이 改正

案의 주된 내용은 稅法上 耐用年數의 체계를 簡素化하고 資産의 耐用年數를 대폭 줄이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정안은 재무부에서 시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건의되었으며, 그 결과 稅法上 資産의 耐用年數를 30% 내지 40% 줄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의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956년부터 1958년까지 財務部는 Bulletin F를 개정하기 위해 실제 자산의 減價償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耐用年數에 대한 몇 가지 변화를 제안하였다. 즉 光學裝備 生産業體에서 사용하는 資産에 대해서는 耐用年數를 25% 감소하고, 교통 자산과 인쇄업에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15%의 耐用年數의 증가를 제안하였다.

1960년에 재무부에서는 실제로 기업에서 사용되는 減價償却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는 1961년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진행되었다. 이 연구과제(Treasury Depreciation Survey)는 2,700여 개의 기업에 대해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자산과 감가상각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시도하였다. 또 다른 연구는 Life of Depreciation Assets Study로서 1959년 동안에 5만여 기업으로부터 구체적인 감가상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 외 7개 정도의 다른 연구가 각각 다른 산업에 대한 자산의 감가상각 연구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여 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1962년에 Revenue Procedure 62-21: Depreciation Guidelines and Rules를 통해서 발표하였다.

Revenue Procedure 62-21은 특정산업과 특정자산에 대해 指針書로서 사용될 수 있는 耐用年數를 제시하였다. Revenue Procedure 62-21 이후로는 자산의 耐用年數의 指針書로서 Bulletin F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Revenue Procedure 62-21의 耐用年數는 Bulletin F에서 명시된 耐用年數보다 32% 가량 짧게 나타났고 1,100개 대기업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耐用年數보다 15% 가량 짧게 나타났다<sup>3)</sup>.

이렇게 기존의 Bulletin F에서 나타난 耐用年數보다 더 관대한 耐用年數를 제시한 주된 이유는 기업으로 하여금 投資에 대한 誘引을 높임으로써 國際 競爭力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이 案을 통하여 納稅者들은 減價償却에 대한 불확실한 규정에서 탈피할 수 있었고, 국세청의 조사도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많이 의존하는 기존의 방법을 탈피하여 充當率 分析(reserve ratio test)과 같은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일관성 있게 실현될 수 있었다. 충당률 분석이란 納稅者들이 실제로 사용한 資産의 耐用年數가 稅法上 제시된 耐用年數와 일치하는가를 조사하는 객관적인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제로 調査用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 6. 1971年~1980年間의 減價償却制度

1969년에 投資稅額控除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970년에 들어서면서 경제성장 속도가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租稅政策으로 租稅負擔의 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減價償却制度를 관대한 방향으로 改正하여 기업에게 稅負擔을 덜어주고, 그 결과 투자를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減價償却制度로 Asset Depreciation Range System(ADR)이 1971년에 제정되었다.

ADR 제도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納稅者가 자산의 耐用年數를 기존의 稅法上 耐用年數의 20% 내에서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결과적으로 자산의 耐用年數를 20% 단축시키는 역할을 하여 기업에게는 세부담을 덜게 하였다. 둘째, 納稅者들이 신고한 減價償却額을 감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충당률 분석을 폐지하였다. 이의 주된 이유는 충당률 분석은 너무 복잡하여 納稅者와 稅政當局 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고 높은

3) 여기서 1,100개 大企業이 全體 製造業에서 保有하고 있는 減價償却이 적용되는 總資産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비용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減價償却制度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였다.

ADR 제도는 관대한 減價償却制度를 통하여 기업에 투자를 촉진하는 자극책으로 작용할 수 있었고, 投資의 증대는 곧 雇傭을 증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經濟成長率을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관대한 減價償却制度는 1971년에 投資稅額控除 制度가 부활되고, 1975년에는 投資稅額控除率이 7%에서 10%로 증가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작용을 할 수 있었다.

ADR 제도가 기존의 제도와 다른 특징은 耐用年數에 대한 지침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ADR에서 정해진 耐用年數의 상하 20% 내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耐用年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DR 制度는 기업의 감가상각에 대해 관대하게 허용하였으며, 實際 減價償却을 稅法上 減價償却의 개념에서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관대한 減價償却制度는 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자산의 감가상각 (technology depreciation)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ADR 제도는 기존의 減價償却制度가 稅法上 減價償却制度를 실제 감가상각에 맞추려는 시도와는 정반대로 세법상 감가상각과 실제 감가상각을 분리하려고 하였다. 減價償却制度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매우 새로운 것이었으나, 실제로 稅法上 減價償却과 實際의 減價償却이 완전히 분리되지는 못하였다.

#### 가. 減價償却의 研究機關

ADR 제도가 도입되면서 財務部는 國稅廳 산하에 減價償却을 연구하는 연구소인 Office of Industrial Economics(OIE)를 설립하였다. OIE는 資産의 耐用年數와 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管理費用 등 減價償却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였고, 특정자산에 대한 耐用年數를 포함한 규정들을 검토하고 改正하는 기능을 가졌다. ADR 제도는 納稅者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보고된 자료는 OIE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었다. OIE는 1973년에 國稅廳 소속에서 財務部의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Tax Policy의 소속으로 바뀌게 되었고, 1981년 ACRS 제도가 도입되면서 해체되었다.

### 7. 1981年~1986年間の 減價償却制度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經濟恢復을 위한 계획(Program for Economic Recovery)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報告書에는 기업의 稅負擔이 높고, 투자에 대한 회수율이 낮은 이유가 지속적인 인플레이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사실상 이러한 높은 인플레이는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켜 경제를 沈滯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높은 인플레이하에서는 減價償却控除額이 감소하게 되고 기업은 그만큼 稅負擔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기존의 ADR 제도는 지나치게 복잡한 減價償却制度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 감가상각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현재의 減價償却制度를 單純化시키고, 企業의 利潤을 增加시키기 위한 有形資産의 減價償却制度로서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ACRS)을 제안하였다.

1981년 經濟恢復法案(The Economic Recovery Tax Act of 1981)은 레이건의 減價償却 改正案을 수용하였다. 기존에 있었던 몇 차례 減價償却制度의 改正案이 항상 제기했던 논리와 같이 기업이 부담하는 有效稅率을 낮추기 위한 것이 ACRS 제도의 주된 목적이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ACRS에서 제시하는 자산의 費用回收年數는 더 이상 현실의 實際 耐用年數를 반영하지 않고 대폭적으로 관대하게 簡素化시켰다. 그러므로 ACRS는 기존의 減價償却制度가 減價償却의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려는 것과는 正反對로 稅法上的 減價償却을 실제의 減價償却과 개념적으로 완전히 분리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가. 費用回收年數에 대한 資産의 區分

ACRS는 有形資産에만 적용되며, 1981년 이전에 구입한 資産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ACRS 제도에서는 유형자산의 費用回收年數의 구분을 간단하게 나누어 6개 그룹으로 구분한다. 이것은 ADR 제도에서 자산의 耐用年數를 125개로 나눈 것과 비교할 때 매우 간단하게 개정된 減價償却制度이다. 또한 ACRS는 자산비용을 전부 고려할 수 있도록 殘存價額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ADR 제도하에서 자산의 耐用年數는 기존 자산의 실제 耐用年數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므로 ACRS하에서 資産의 費用回收年數를 해당그룹으로 나누는 기초자료로 사용되어졌다. 즉 ADR 제도에서 耐用年數를 사용하여 6개 그룹으로 나눈 구체적인 안은 다음과 같다.

#### (1) 3年 費用回收年數의 資産:

ADR 제도하에서 耐用年數가 4년 이하인 有形資産이 이에 해당하며, 대표적인 자산은 자동차와 경량급 교통자산이다.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有形資産은 ADR하에서의 耐用年數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

#### (2) 5年 費用回收年數의 資産:

ACRS 제도하에서 다른 그룹에서 명시되지 않은 모든 有形資産은 이 그룹에 해당되며, ADR 제도하에서 5년 이상인 耐用年數를 가진 資産 중에서 모든 기계 및 장비가 이에 해당한다.

#### (3) 10年 費用回收年數의 資産:

ADR 제도에서 18년 이상, 25년 미만인 耐用年數를 가진 事業用 資産과 12.5년 이하의 비교적 짧은 수명을 가진 不動産이 여기에 해당한다.

- (4) 15년 費用回收年數의 不動産 資産:  
ADR 제도하에서 12.5년 이하의 不動産業 그룹에 속하지 않는 不動産 資産은 여기에 해당한다.
- (5) 15년 費用回收年數의 公共事業用 資産:  
다른 그룹에 속하지 않는 공공사업용 자산은 여기에 해당되며, 이는 ADR 제도하에서 25년 이상의 耐用年數를 가진 자산을 의미한다.
- (6) 低所得層의 住宅은 15年の 費用回收年數를 적용한다.

#### 나. ACRS 제도의 減價償却方法

ACRS하에서 減價償却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뉘어 적용된다.

- (1) 不動産: 175% 遞減法  
 (2) 低所得層의 住宅: 200% 遞減法  
 (3) 그 외의 資産: 150% 遞減法(1981년~1984년), 175% 遞減法(1985년), 200% 遞減法(1986년 이후)

ACRS 이전에는 200% 체감법이 有形資産에 대해 적용되었으므로 ACRS의 적용으로 減價償却控除額이 감소하는 자산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산은 ACRS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減價償却控除額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업의 稅負擔이 완화될 수 있었다.

ACRS를 통하여 조세협력과 행정에 놀랄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의 주된 이유는 자산의 實際 耐用年數와 殘存價額을 측정하여 그 추정치를 稅法上 제도와 비교할 필요없이 ACRS에서 제시하는 간소화된 방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ACRS는 기존의 제도를 대폭적으로 改正한 것이지만, 이 제도가

가지는 단점은 자산의 사용정도에 따른 마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특정자산들에 대해 같은 費用回收年數를 적용함으로써 인해서 야기되는 효율성의 감소를 들 수 있다.

#### 8. 1987年~現在까지의 減價償却制度(MACRS)

ACRS에서는 資産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자산간에 투자의 왜곡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MACRS(Modified ACRS)를 제정하였다. ACRS가 實際 減價償却方法과 稅法上의 감가상각 간의 연관성을 차단한 획기적인 減價償却 改正案임에 비해, MACRS는 ACRS가 가지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안이기 때문에 稅法上의 감가상각과 실제 감가상각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가미하고 있다. 즉 ADR 제도의 耐用年數를 MACRS에서는 일부 고려하여 ACRS보다는 더 세분화된 費用回收年數의 구분을 보여주었다. 즉 MACRS에서 제시하는 費用回收年數는 ACRS의 費用回收年數 구분에서 7년 및 20년 費用回收年數의 자산 그룹을 추가하였고,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27.5년 및 31.5년의 費用回收年數 그룹을 제정하였다. 그러므로 MACRS하에서 有形資産의 費用回收年數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3年 費用回收年數 資産
- (2) 5年 費用回收年數 資産
- (3) 7年 費用回收年數 資産
- (4) 10年 費用回收年數 資産
- (5) 15年 費用回收年數 資産
- (6) 20年 費用回收年數 資産
- (7) 27.5年 費用回收年數의 住居用 賃貸 資産
- (8) 31.5年 費用回收年數의 非住居用 不動産

자산의 費用回收年數別 구분은 ACRS처럼 MACRS에서도 유형자산에만 적용되었다. MACRS 제도의 減價償却方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1) 10년 이하 費用回收年數의 資産: 200% 遞減法(첫해에 한해 定額法 가능)
- (2) 15년 및 20년 費用回收年數의 자산: 150% 遞減法(첫해에 한해 定額法 가능)
- (3) 27.5년의 주거용 임대자산과 31.5년의 비주거용 부동산: 定額法

위의 (1)과 (2)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 체감법의 사용과 함께 定額法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 것은 첫해에 한하여 定額法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더 높은 減價償却控除額을 허용하기 위해서이다.

ACRS에서는 資産의 구입시점이 稅法上 會計年度와 일치하지 않아 1년을 채우지 못할 때는, 稅法上 회계연도 내에서 자산이 사용된 개월수에 따라 안분하여 첫해연도의 減價償却額을 계산하였다. 이후의 減價償却額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 減價償却率이 적용되어 ACRS에서 규정한 費用回收年數 내에서 減價償却額이 완전히 공제된다. 그러나 MACRS에서는 費用回收年數에 0.5년을 더하여 減價償却額을 계산하며, 이러한 규범이 적용되는 자산은 3년, 5년, 10년 費用回收年數를 가진 자산그룹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산그룹은 실제로는 3.5년, 5.5년, 10.5년의 費用回收年數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MACRS하에서 減價償却額의 계산은 減價償却方法, 費用回收年數, 자산구입 시점에 따른 0.5년의 추가관습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MACRS와 함께 사용되는 제도로 Alternative Depreciation System (ADS)이 있다. ADS 제도는 최소한 稅額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또한 MACRS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자산에 대해 사용된다. 이 제도에서 사용하는 耐用年數는 ADR 제도의 耐用年數를 사용하므로 減價償却控除額이 MACRS에서 보다 훨씬 낮게 계산된다.

#### 가. 費用回收年數와 減價償却 研究

MACRS는 ADR 제도의 耐用年數를 두 가지 목적에서 사용한다. 즉 ADS하에서 減價償却控除額을 구하기 위해 사용될 뿐 아니라, MACRS하에서 資産의 費用回收年數를 결정하는 자료로서 사용된다. ACRS하에서는 不動産을 제외한 대부분 有形資産의 費用回收年數는 5년 자산그룹에 속하므로, 費用回收年數와 관련하여 納稅者와의 논쟁은 없었다. 그러나, MACRS는 ACRS에 비해 費用回收年數의 구분이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다. 즉 ACRS하에서는 2개의 자산그룹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MACRS하에서는 4개의 자산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ACRS와 비교할 때 費用回收年數로 인한 논쟁은 증가하였으나, MACRS는 ACRS가 가지는 대부분의 간편성을 비교적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987년에 財務部의 Office of Tax Analysis 내에 減價償却을 연구하는 전담부서(Depreciation Analysis Division)가 생겼다. 이 부서에서는 감가상각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 특정자산에 대한 정책건의를 하였다.

#### 나. 資産間의 中立性

1986년에 投資稅額控除制度의 폐지와 함께 MACRS를 도입한 주된 이유는 減價償却制度가 자산들간에 다르게 적용됨으로써 야기되는 경제의 왜곡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즉 稅法으로 인해 자산선택

의 편중이 일어나지 않는 중립적인 稅制를 목적으로 하였다. 中立的인 稅制는 자산들의 有效稅率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보다 이상적인 中立的 稅制는 산업별로 자산의 耐用年數를 규정하는 것이다. 물론 같은 산업 내에서 사용하는 자산의 耐用年數가 동일하므로 자산별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자산간의 非中立性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산업 내에서 자산간의 非中立性은 산업 간의 자산 선호에 대한 非中立性에 비해 전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적다.

### Ⅲ. 景氣調節 手段으로서 減價償却制度

法人稅制度의 정책수단으로 法人稅率, 投資稅額控除, 減價償却制度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정책을 통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稅額이 결정된다. 法人稅率이나 投資稅額控除制度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변수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減價償却制度는 두 가지 다른 정책수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시각이 부족하였다. 이는 두 가지 다른 정책수단에 비해 減價償却制度는 자산의 실제 감가상각과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減價償却制度는 현실과의 연계성을 떠나 기업의 投資誘引策으로 法人稅率 및 投資稅額控除와 함께 정책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시각이 매우 달라졌다. 減價償却을 포함한 法人稅制의 投資誘引策에 대한 체계적이고 대표적 이론이 신고전 투자이론이다. 1960년대 시작된 신고전 투자이론은 이후 매우 활발하게 미국의 현실에 응용되어 減價償却制度를 포함한 法人稅制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減價償却制度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변수로서 사용되는 체계적인 설명은 신고전 투자이론에서 잘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경기조절수단으로서 미국

의 減價償却制度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新古典 投資理論을 바탕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新古典 投資理論을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減價償却制度가 기업에게 미치는 투자유인책이 어떻게 작용되는가를 보여준다. 또한 減價償却制度의 변화와 미국 경제흐름 간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간단히 살펴본다.

### 1. 新古典 投資理論(Neoclassical Investment Theory)

減價償却制度는 기업이 투자한 資產費用을 올바르게 고려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또한 경제흐름을 조절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減價償却制度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Hall and Jorgenson(1967, 1969) 등에서 보여주는 신고전 투자이론(Neoclassical Investment Theory)에서 많이 발전되었다. 즉 減價償却制度를 포함한 投資稅額控除 및 法人稅率이 기업이 부담하는 資本費用을 결정하므로 조세정책의 변화를 통하여 기업의 투자를 억제 혹은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신고전 투자이론에서 減價償却制度는 자산의 실제 減價償却形態를 정확히 반영한다는 次元에서 벗어나,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변수들 중의 하나로 취급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減價償却制度를 비롯한 法人稅 구조가 기업의 투자와 궁극적으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實證分析은 많은 經濟學者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대표적인 연구로는 Chirinko and Eisner, 1981).

新古典 投資理論은 減價償却制度를 경기조절을 위한 중요한 정책변수들 중의 하나로 취급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므로 신고전 투자이론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기업이 生産物을 산출하기 위해 자본과 노동의 두 가지 투입요소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기업이 결정하는 투입요소의 투입량은 이들 요소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즉 자본 혹은 노동의 가격이 낮으면 좀더 높은 투입량이 사용되고, 가격이 높으면 낮은 투입량이 사용된다. 그러므로 투입요

소의 가격은 투입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때 자본의 가격은 스톡(stock) 개념이 아닌 플로우(flow) 개념이므로 자본을 스톡 비용에서 플로우 비용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資本費用(cost of capital) 혹은 자본의 임대비용(rental price of capital)이라고 한다.

法人稅가 없는 환경에서 資本費用,  $c$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c = q(r + \delta) \quad (1)$$

여기서  $q$ 는 資本의 單位價格,  $r$ 은 利率,  $\delta$ 는 經濟的 減價償却率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資本費用은 스톡의 가격에서 이자율과 자산의 경제적 減價償却額을 고려하여 플로우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다. 資本費用을 구성하는 요인 중에서 이자율은 쉽게 구할 수 있으나 경제적 의미의 減價償却率은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경제적 減價償却率을 측정하는 연구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자본에 대한 거시적 스톡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의 접근법과 中古市場에서 실제 측정한 가격자료를 이용하여 미시적으로 분석한 Hulten and Wykoff(1981)의 연구가 있다. 일반적으로 微視的 價格資料를 사용한 經濟的 減價償却率의 추정치가 더욱 정확히 현실을 반영하므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중고시장이 활발한 자산에 대해서는 비교적 현실을 잘 반영하는 추정치를 구할 수가 있으나, 중고시장이 활발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자료획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BEA 방법이 보완적으로 사용된다.

法人稅가 있는 환경에서의 資本費用,  $c$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c = q(r + \delta) [(1 - k - uz) / (1 - u)] \quad (2)$$

여기서  $u$ 는 法人稅率,  $k$ 는 投資稅額控除比率,  $z$ 는 減價償却額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며  $z$ 의 구체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z = \int_0^T e^{-rs} D(s) ds \quad (3)$$

여기서  $T$ 는 資産의 稅法上 耐用年數,  $D(s)$ 는 資産의 減價償却方法,  $s$ 는 시간을 나타낸다. 法人稅가 있는 환경에서의 資本費用은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법인세가 없을 경우 資本費用인 (1)과 비교할 때, (2)의 資本費用은 法人稅率, 投資稅額控除額, 減價償却方法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즉 法人稅率( $u$ )이 낮을수록, 投資稅額控除率( $k$ )이 높을수록,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值( $z$ )가 클수록 資本費用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sup>4)</sup>. 여기서 減價償却額의 現在價值인  $z$  값의 증가는 資産의 稅法上 耐用年數인  $T$ 가 적은 값을 가짐으로써, 자산의 減價償却方法이 관대함으로써(예를 들면 定額法에서 定率法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법인세제의 개정으로 인해 資本費用은 변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이 자본에 투자하는 양은 변화하게 된다.

이상의 新古典 投資理論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실증분석의 대표적 연구로 Hall and Jorgenson(1967)과 Chirinko and Eisner(1981)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減價償却制度의 변화를 포함한 法人稅制가 기업에게 투자를 촉진시키는 유효한 수단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4) 法人稅의 變化에 따른 資本費用의 效果는 식 (2)를 각 法人稅制에 대해 편미분함으로써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때 法人稅率의 效果는  $k + z < 1$ 의 條件을 주면 法人稅率의 減少가 資本費用의 減少를 가져다 주는 結果를 가져온다.

〈附表 V-1〉美國 法人稅制의 歷史的 變遷過程

年度	u	T	D	k	a
1954년 이전	0.52	1	1	0	-
1954 ~ 1961	0.52	1	4	0	-
1962 ~ 1963	0.52	2	4	0.07	1
1964	0.50	2	4	0.07	0
1965 ~ 1970	0.48	2	4	0.07	0
1971	0.48	3	4	0	0
1972 ~ 1978	0.48	3	4	0.1	0
1979 ~ 1980	0.46	3	4	0.1	0
1981 ~ 1986	0.46	4	2	0.1	0.5
1986년 이후	0.34	5	3	0	0

u: 法人稅率

T: 資産의 耐用年數

1: Bulletin F

2: Revenue Procedure 62-21

3: Asset Depreciation Range System

4: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5: 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D: 減價償却方法

1: 定額法

2: 150% 遞減法

3: 200% 遞減法

4: 年數合計法

k: 投資稅額控除率

a: 投資稅額控除 중에서 減價償却 계산시 控除되는 比率

減價償却制度를 포함한 미국 法人稅 制度의 역사적 변화를 기계 및 설비자산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附表 V-1〉과 같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법인세제도는 시간이 갈수록 기업에게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흐름을 알 수 있다. 이는 新古典 投資理論에서 보여주었듯이 法人稅 制度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減價償却制度和 投資

1954년 加速償却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제도가 지속적인 투자촉진책으로 작용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 加速償却制度는 3년 이상의 耐用年數를 가진 有形資産에만 적용되므로, 해당하는 자산의 범위를 조절함으로써 減價償却制度를 투자촉진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1960년대에 이미 減價償却制度가 단기적인 總體的 需要(aggregate demand)를 조절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1962년에 經濟活性化를 위해 耐用年數의 指針書가 도입되었다. 경기조절 수단으로서 減價償却制度를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6년부터였다. 이 해에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았고, 失業率도 낮아 정책입안자들에게는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1962년에 도입된 投資稅額控除制度의 시행은 1966년으로 연기되었고, 投資稅額控除制度가 적용될 수 없었던 부동산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방법의 사용도 동시에 연기되었다. 그 당시에 연기되었던 제도들은 1967년에 다시 시행되었다. 그 결과 활발했던 투자행위가 이러한 제도를 연기한 기간 동안에는 위축되었고, 1967년에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1969년의 경기는 다시 가열되는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경기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投資稅額控除와 減價償却制度가 사용되었다. 즉 국회는 投資稅額控除制度를 없애고, 부동산 자산에 대한 加速償却을 좀더 보수적인 경향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새로운 非住居用 不動産 資産에 대해서는 定額法을 사용하거나 150% 遞減法을 사용하도록 하고, 中古 不動産 資産에 대해서는 定額法이나 125% 遞減法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주거용 자산에만 二重遞減法이나 年數合計法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산에 대한 보수적인 減價償却制

도를 사용하여 경기를 조절하였다.

減價償却制度가 경기조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시기는 1971년 ADR 제도가 도입된 때였다. 이때는 자산의 耐用年數에 대해 관대한 ADR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失業率이 매우 높은 시기였다. 재무부에서는 ADR의 도입이 경기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하였으나, ADR 도입의 주된 목적은 경기의 활성화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ADR 제도 도입의 주된 목적은 행정적으로 간편한 減價償却制度를 도입하는 것과 1962년 이후 일기 시작한 기술상의 변화와 세계적 경제환경의 변화를 인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ACRS가 도입된 시기에도 ADR제도가 도입된 시기와 마찬가지로 失業率이 매우 높은 때였다. 그러나 ACRS는 단기적인 경기조절을 목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인 투자환경의 조성과 減價償却制度의 획기적인 단순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 IV. 結論 및 要約

1913년 미국에서 현대적인 租稅制度가 시행되었을 때에는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던 교통 및 통신산업에서만 減價償却의 회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 외 산업에서는 減價償却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國稅廳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減價償却에 대한 지침은 제조업과 그 외 산업에서 감가상각 회계를 도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세법에서 감가상각에 대한 인식이 발전함에 따라 納稅者들의 일반적인 태도는 有形資産의 耐用年數와 殘存價額을 보수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므로 稅政當局의 행정력이 매우 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1934년에 국세청은 기업이 보고하는 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산의 사용형태 자료를 통해 제정된 稅法

上 耐用年數는 부분적으로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1962년 전까지 대부분의 納稅者들은 Bulletin F에서 명시한 자산의 耐用年數보다 낮은 耐用年數를 사용하였다.

財務部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산의 耐用年數와 잔존가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1962년에 실시한 Revenue Procedure 62-21은 자산의 耐用年數를 표준화한 최초의 시도였다. 納稅者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제 減價償却을 정확하게 반영하려는 노력과 稅法을 쉽게 적용하려는 稅政當局의 행정적 노력은 서로 상충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耐用年數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이러한 納稅者와 稅政當局間의 충돌을 피하고 타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타협으로 인하여 산업별로 자산에 대한 耐用年數를 제정하게 되었고, 1971년에 Asset Depreciation Range(ADR)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減價償却制度가 복잡함으로써 야기되는 納稅費用의 增加와 納稅者와 稅政當局間의 불화 등을 고려할 때 減價償却制度를 가능한 한 간단하게 만들려는 인식이 높았다. 간단한 減價償却制度는 행정상의 편리뿐 아니라 減價償却을 통하여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투자의 자극을 정확히 측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1981년에 ACRS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減價償却制度는 대폭적으로 改正되었다.

ACRS는 稅法上 減價償却과 實際 減價償却과의 연관성에 얼마이지 않은 획기적인 제도이지만, 稅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산간의 불공평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불공평한 적용은 특정 자산에 대한 선호를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6년 MACRS를 도입하였다. MACRS는 ACRS보다 자산의 費用回收年數에 대해 상세하게 분류하였으며, MACRS에 해당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ADS 제도를 사용하였다. ADS 제도는 資産의 減價償却을 ADR을 근거로 하여 계산하는 만큼, MACRS보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 훨씬 보수적으

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1986년의 새로운 감가상각제도는 관대한 MACRS와 보수적인 ADS가 내용상 서로 불일치하는 요소로 혼합되어 있다.

減價償却制度를 통하여 費用回收年數, 減價償却方法, 會計方式 등에 대한 표준화된 작업은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제도가 복잡하게 됨에 따라 야기되는 조세협력 비용의 증가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너무 단순한 제도는 또 다른 효율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서로 상충하는 이들 요소들을 조화하는 시도가 減價償却制度의 역사이기도 하다.

미국의 減價償却制度를 역사적으로 조명해 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減價償却制度의 발전방향을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減價償却制度는 減價償却에 해당하는 자산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자산의 減價償却을 인정해 주는 방법에서 納稅者의 협력이 비교적 용이하도록 간편한 減價償却制度로 변화해 가고 있다. 둘째, 미국의 減價償却制度는 資産의 사용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그 자산가치의 감소를 정확하게 반영하려는 시도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자산 혹은 특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변수로서 사용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